

저출산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0. 10. 5

윤성훈

보험연구원



INSURANCE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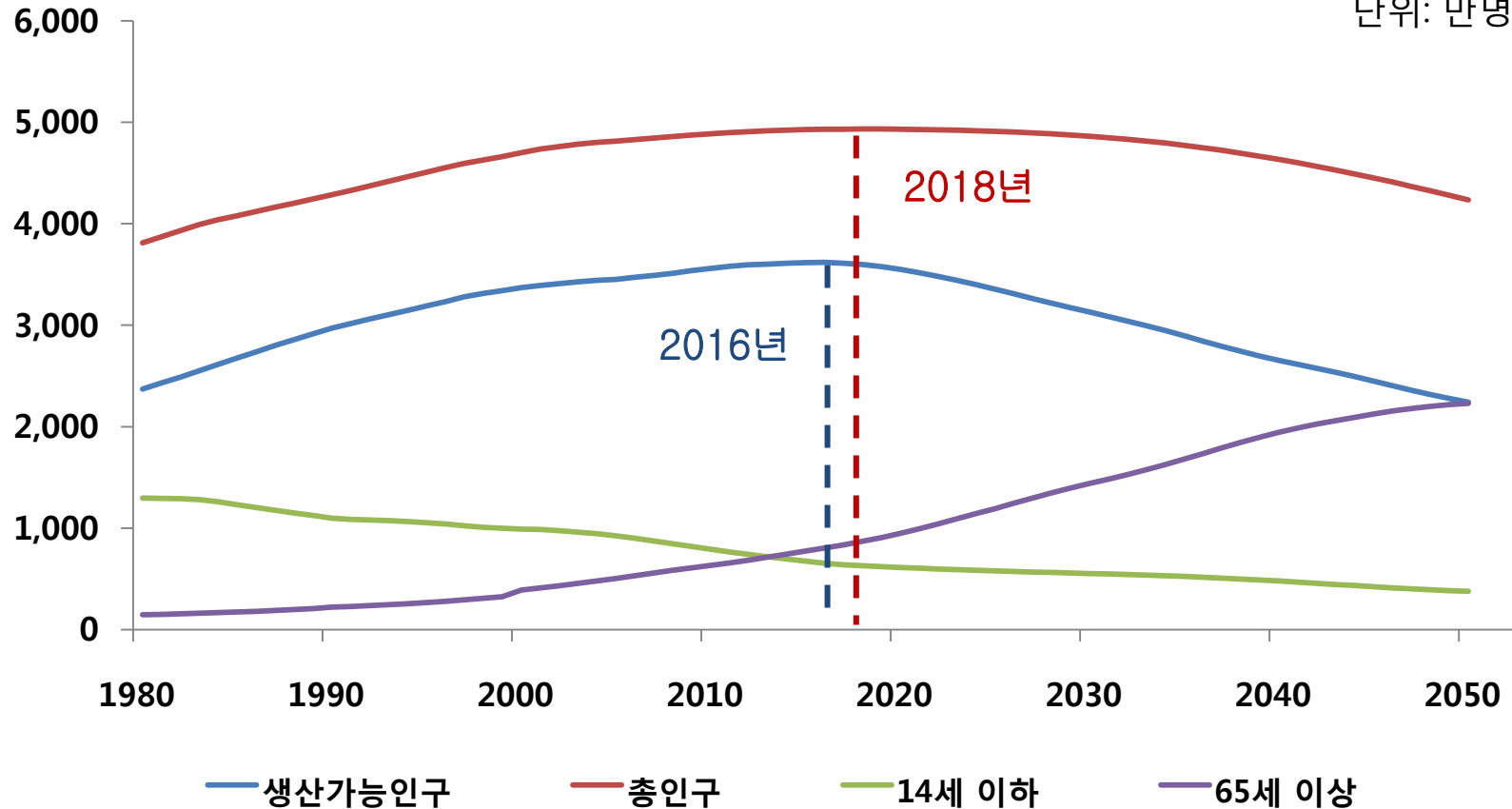
- I. 저출산 고령화 개관
- II. 저출산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III. 시사점

I. 저출산 고령화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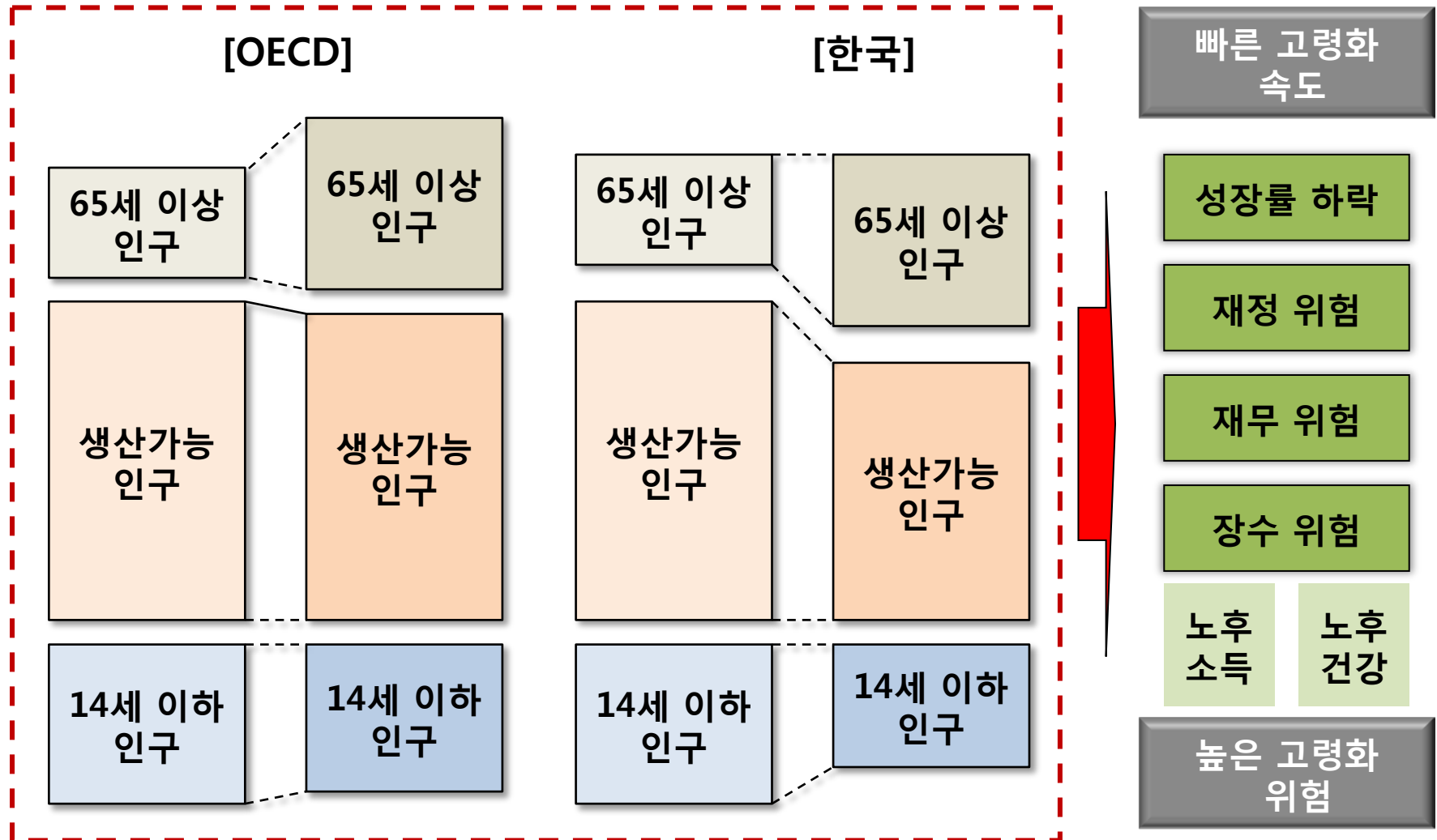
1. 인구구조 변화 :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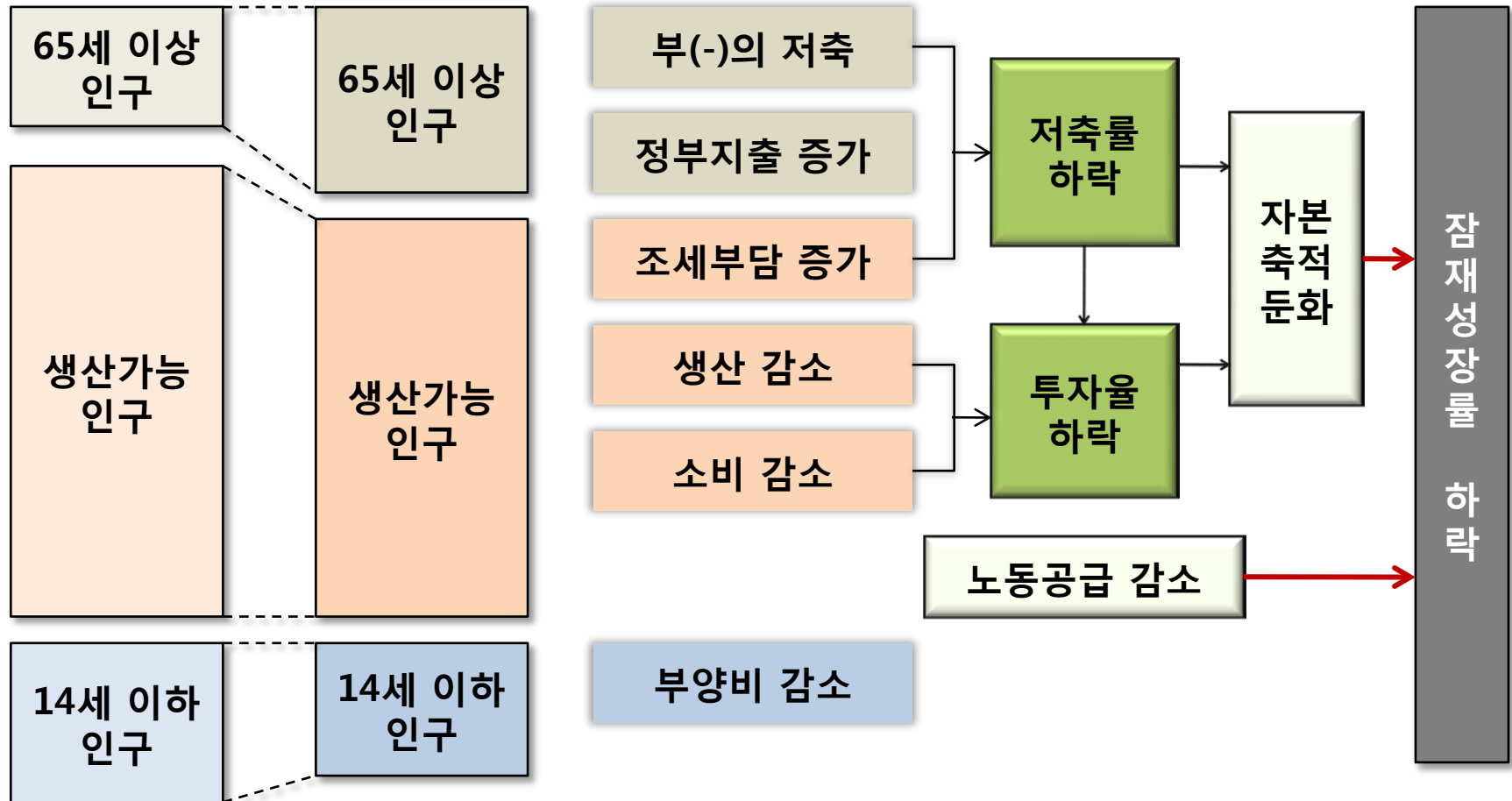
단위: 만명



2. 특징 : 빠른 고령화



3. 거시경제 : 잠재성장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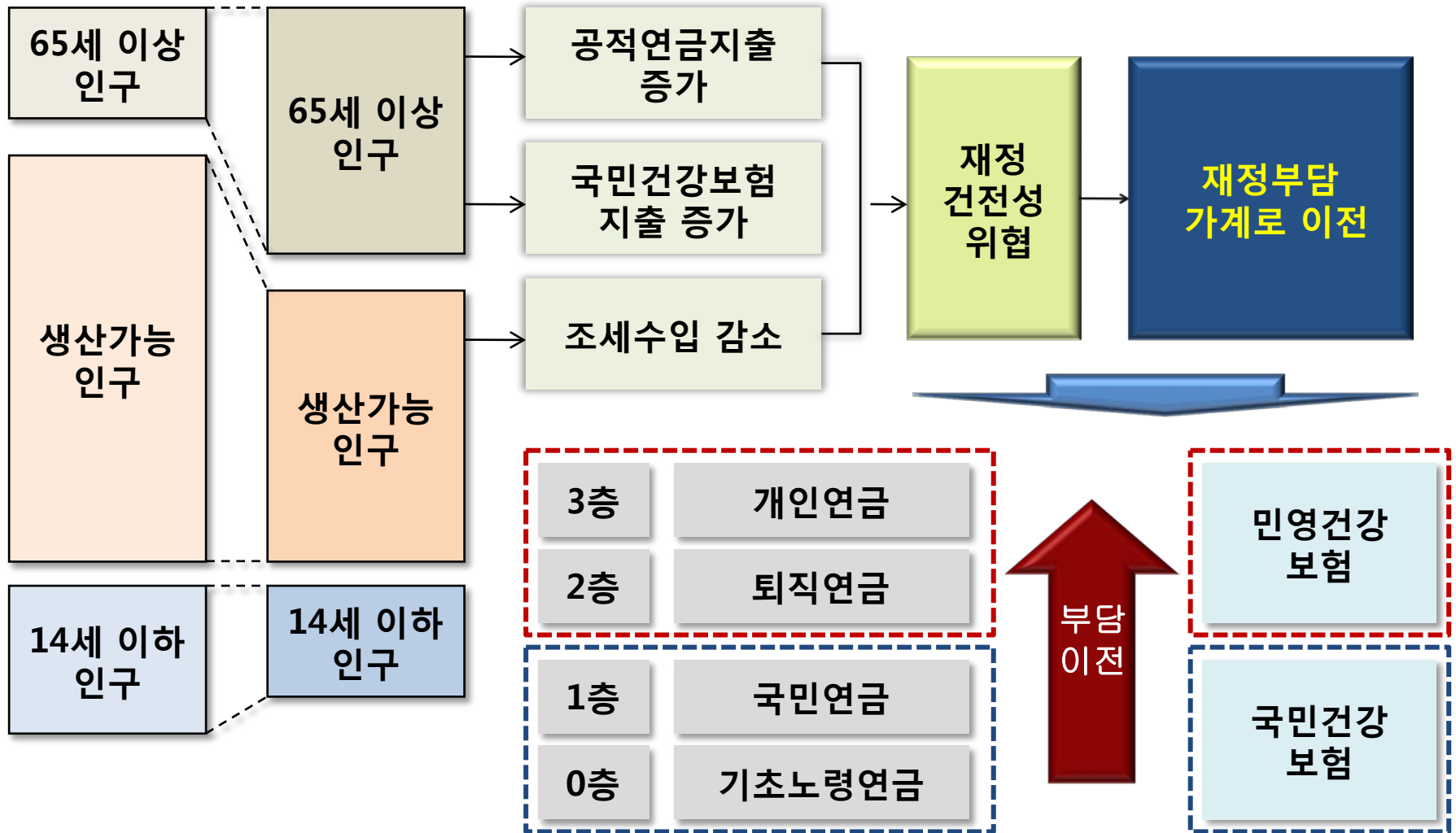
[참고 1. OECD 잠재성장률 전망]

단위: %, %p

국가	2010 ~11(A)	2012 ~25(B)	B-A	국가	2010 ~11(A)	2012 ~25(B)	B-A
한국	4.0	2.4	-1.6	영국	1.2	1.8	0.6
일본	0.8	0.9	0.1	프랑스	1.2	1.5	0.3
터키	3.6	3.4	-0.2	독일	1.2	1.3	0.1
호주	3.2	2.9	-0.3	이태리	0.3	1.5	1.2
멕시코	1.9	2.2	0.3	그리스	0.3	1.4	1.1
뉴질랜드	1.6	2.4	0.8	스페인	-0.2	2.0	2.2
캐나다	1.6	1.6	0.0	유로존	0.8	1.5	0.7
미국	1.4	2.3	0.9	OECD	1.2	1.9	0.7

자료: OECD(2010)

4. 재정 : 재정부담 가계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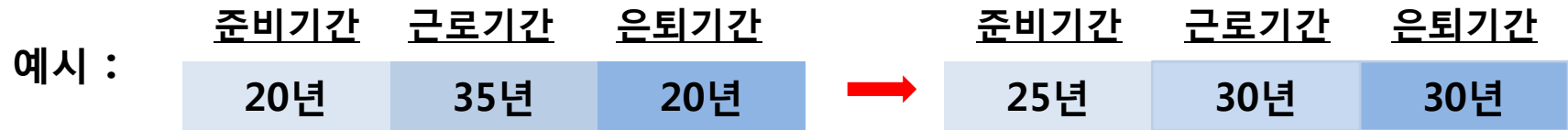
[참고 2. 주요국 국채의 신용등급 예상]

국가	2005	2020	2030	2040
스웨덴	AAA	AAA	A	Non-IG
독 일	AAA	AAA	A	Non-IG
일 본	AA	Non-IG	Non-IG	Non-IG
미 국	AAA	BBB	Non-IG	Non-IG
한 국	A	A	Non-IG	Non-IG

주: 공적연금과 공적건강보험이 개혁되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

자료: Standard and Poors(2005)

5. 가계 : 노후대비 부족, 저축여력 확대 및 노후보장 수단 필요



[가구주 연령별 부채가구의 재무현황(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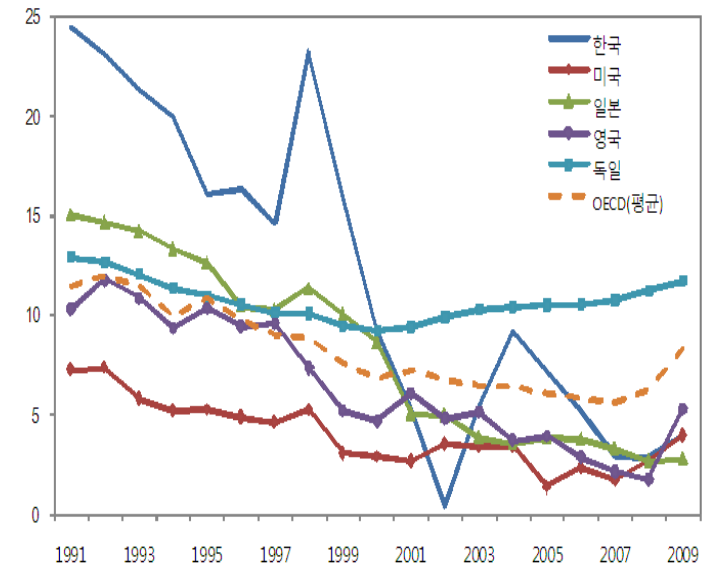
단위: 세, 만원, %

연령	35~44	45~54	55~64	65이상
부채가구비중	55.6	54.2	42.0	20.6
부채(A)	4,950	5,507	5,630	3,067
금융자산(B)	1,386	1,312	1,455	452
총자산	19,395	27,638	30,001	22,638
A/B	3.6	4.2	3.9	6.8

자료: 김현정 김우영(2009)

[가계 순저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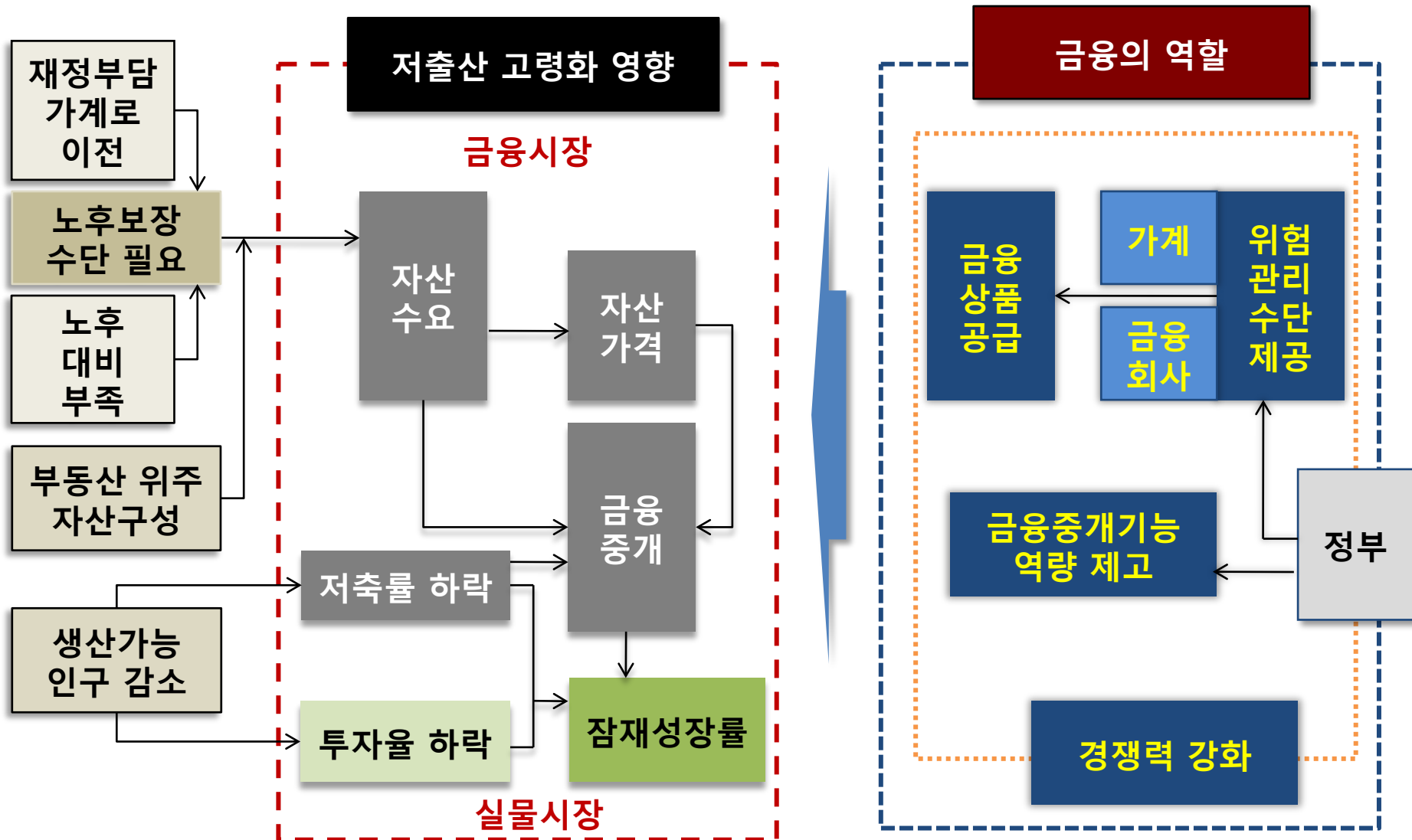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유경원(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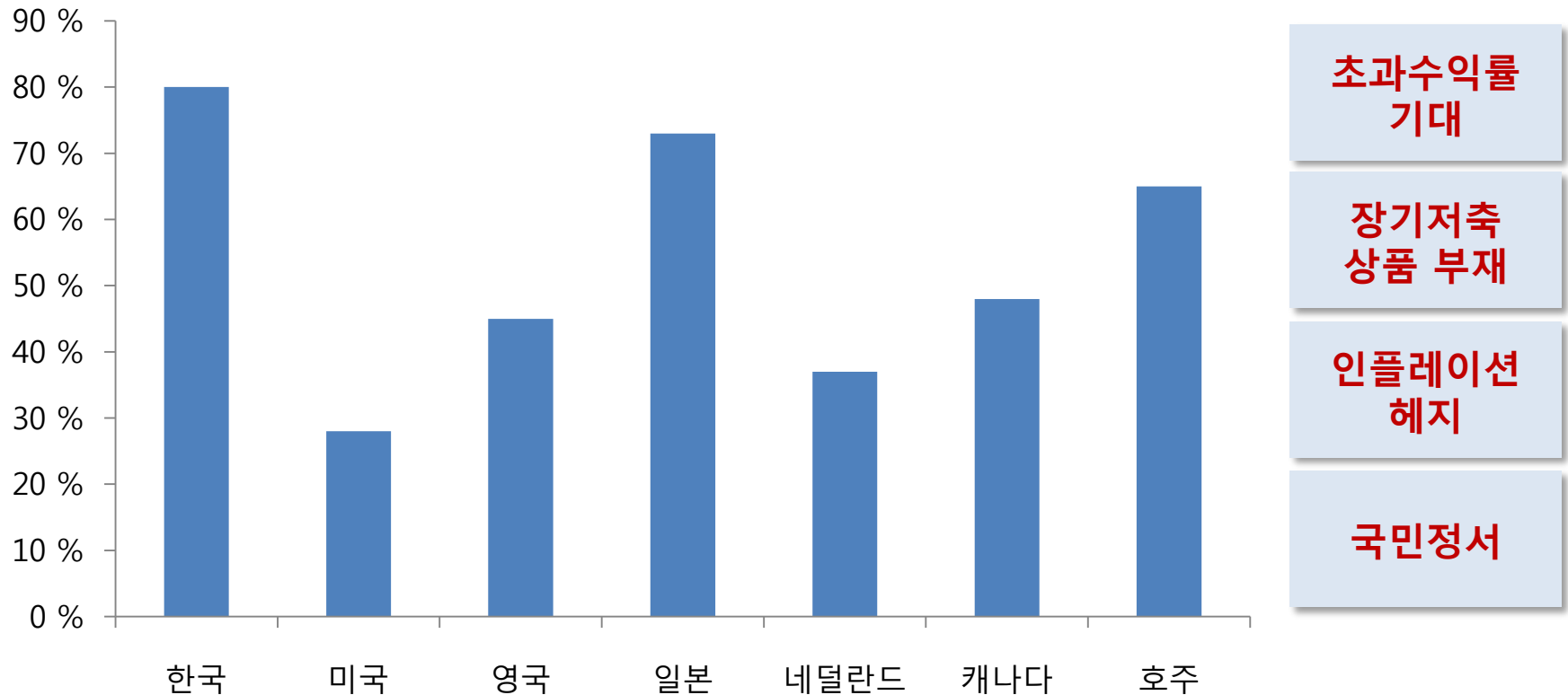
II. 저출산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금융시장 이슈 : 저축률, 자산수요, 자산가격, 금융중개



2.1 실물자산수요 비교 : 주요국에 비해 높은 실물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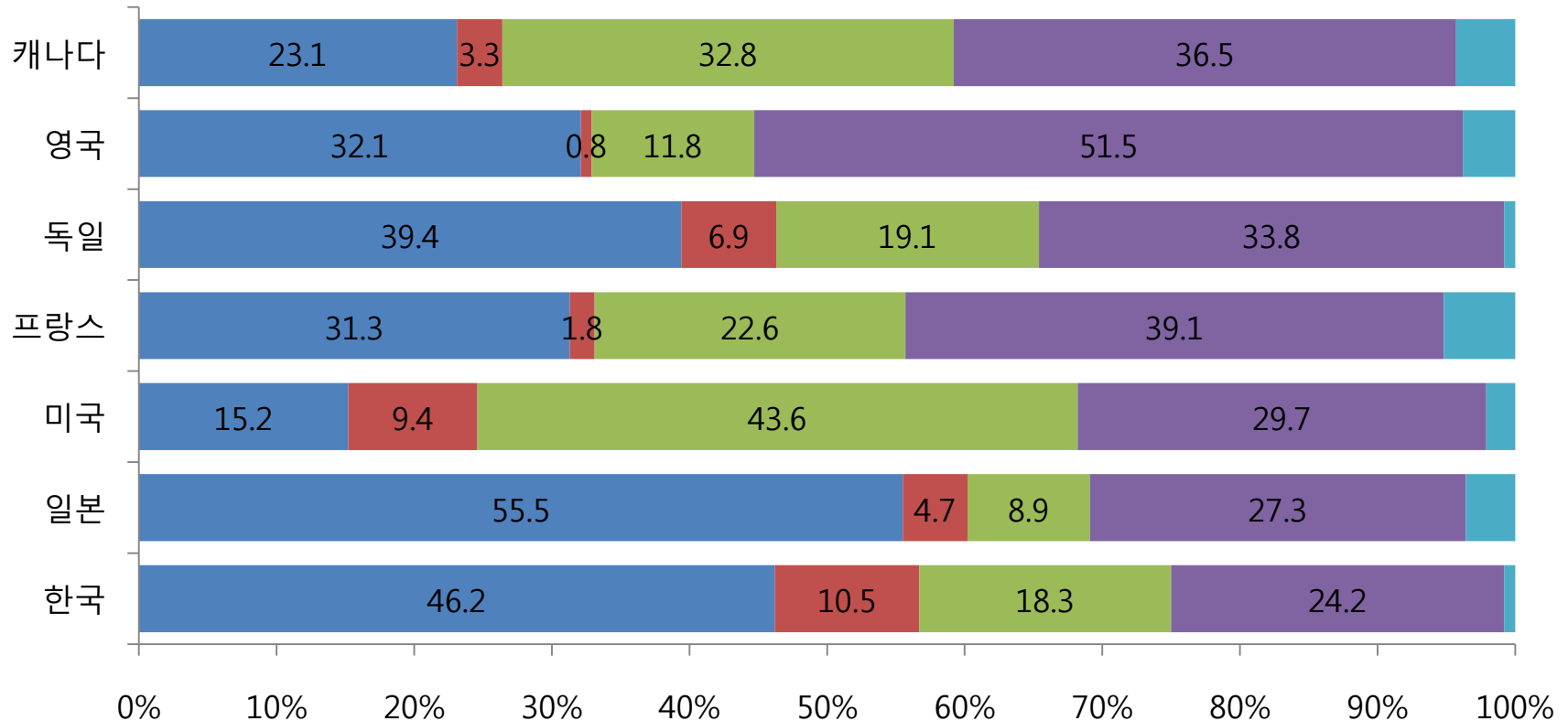
[자산 중 부동산 비중 비교]



자료: 이상호(2010), Groome et al(2006)

2.2 금융자산수요 비교 : 주요국에 비해 낮은 보험 연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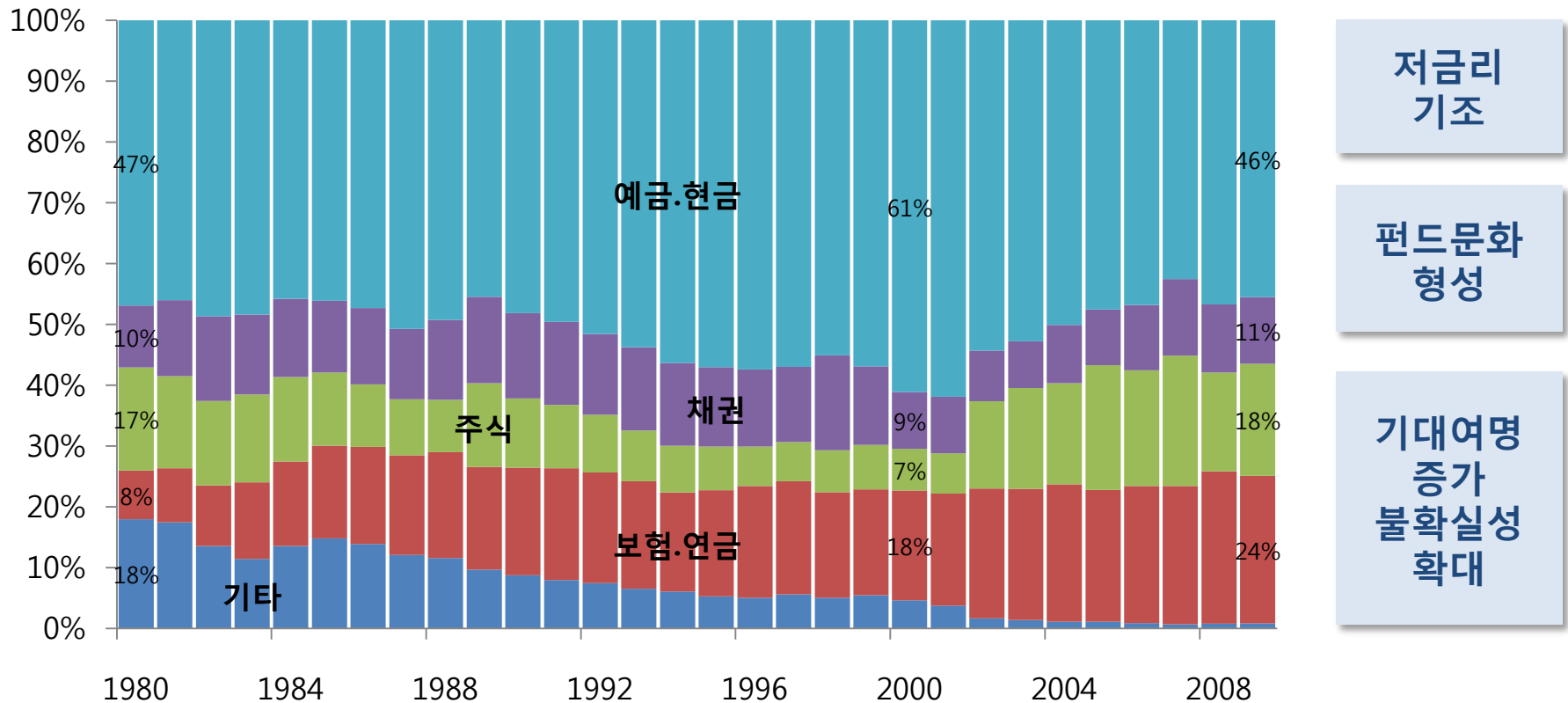
[우리나라 개인의 금융자산 구성]



자료: 이상호(2010) ■ 예금·현금 ■ 채권 ■ 주식 ■ 보험·연금 ■ 기타

2.3 금융자산수요 추이 : 주식 보험 비중 증가, 예금 비중 감소

[우리나라 개인의 금융자산 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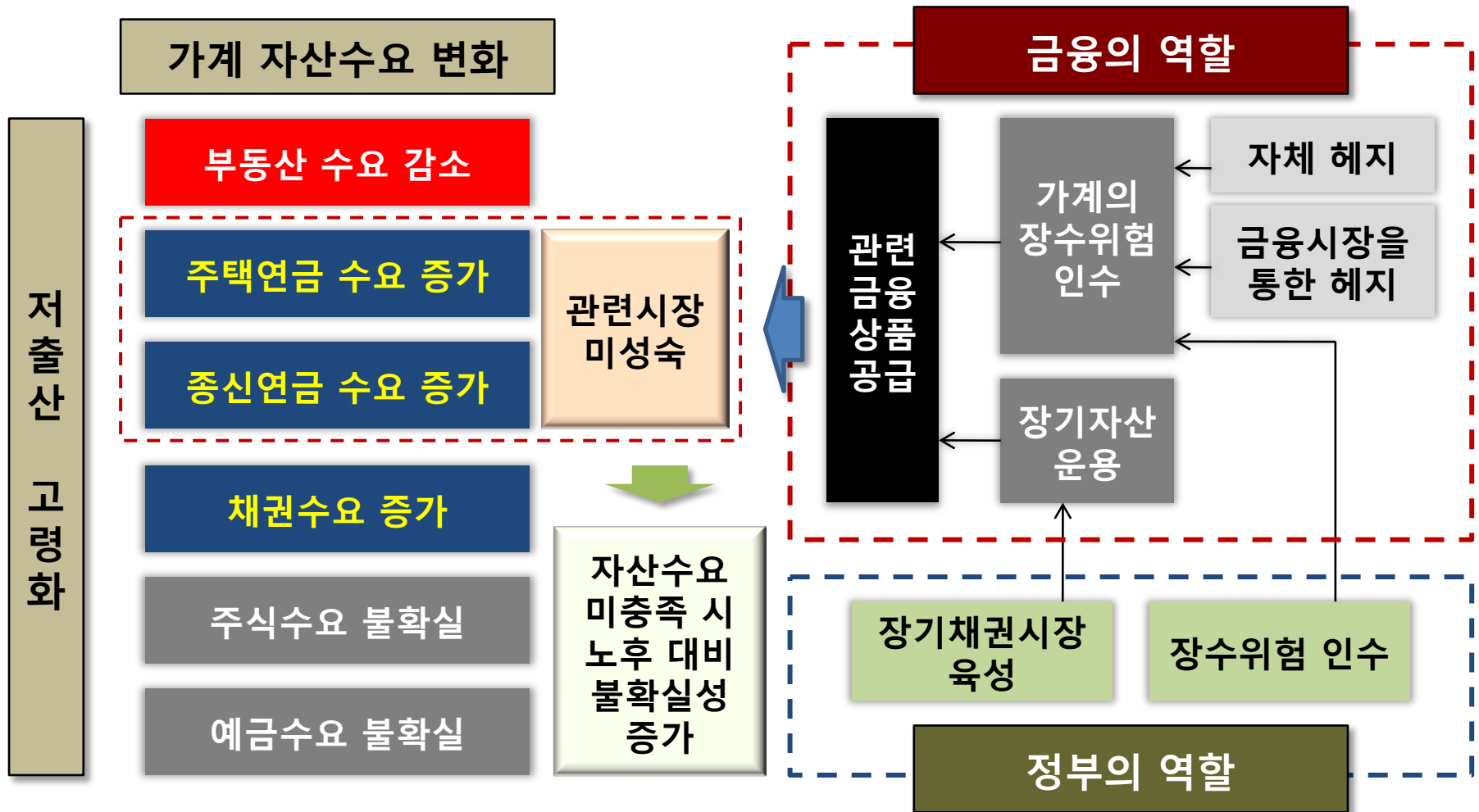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2.4 연구결과 : 연금 및 채권수요 증가, 주식 및 예금수요 불확실, 부동산수요 감소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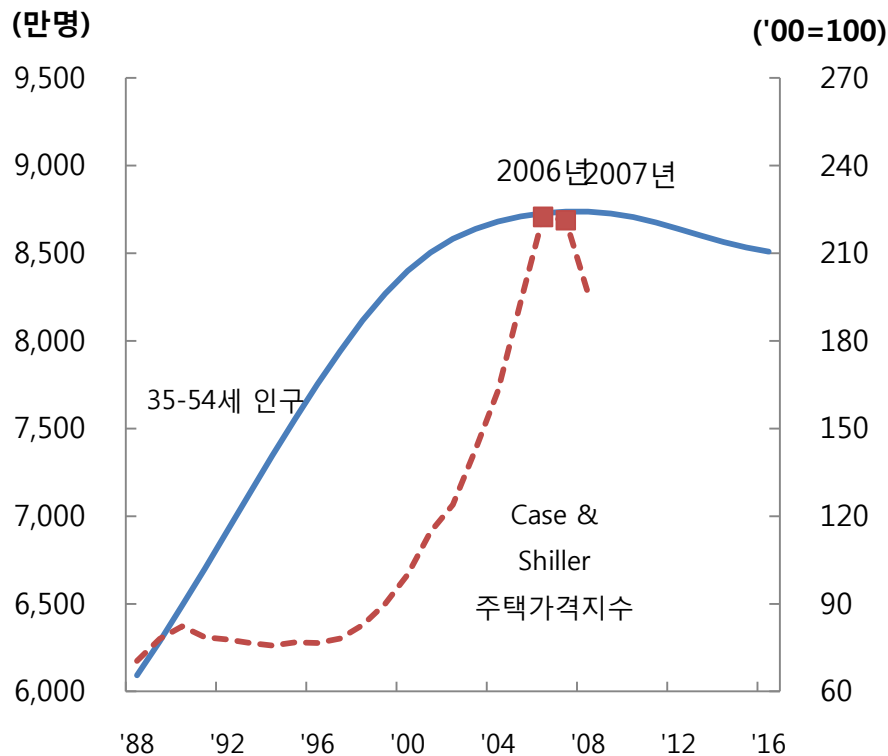
연구자	결론
Poterba (2001, 2004)	주식 수요는 감소하지 않음(예비적 동기와 유산동기 존재)
최공필 외(2005)	GDP 대비 채권 비중 증가 그러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은 불확실 GDP 대비 계약저축(연금+생명보험회사의 자산) 비중 증가 고령화로 자산수요 증가 가능성 예금수요 감소 가능성
Cotis(2010)	종신연금, 주택연금 수요가 증가하나 관련 시장 발전이 미흡
Gonzalez-Paramo (2006)	주식과는 달리 내국인 위주의 주택수요는 감소
김기호 유경원(2007) 이상호(2010)	금융자산 구성에서 주식 비중이 감소하고 채권 비중이 증가

2.5 금융의 역할 :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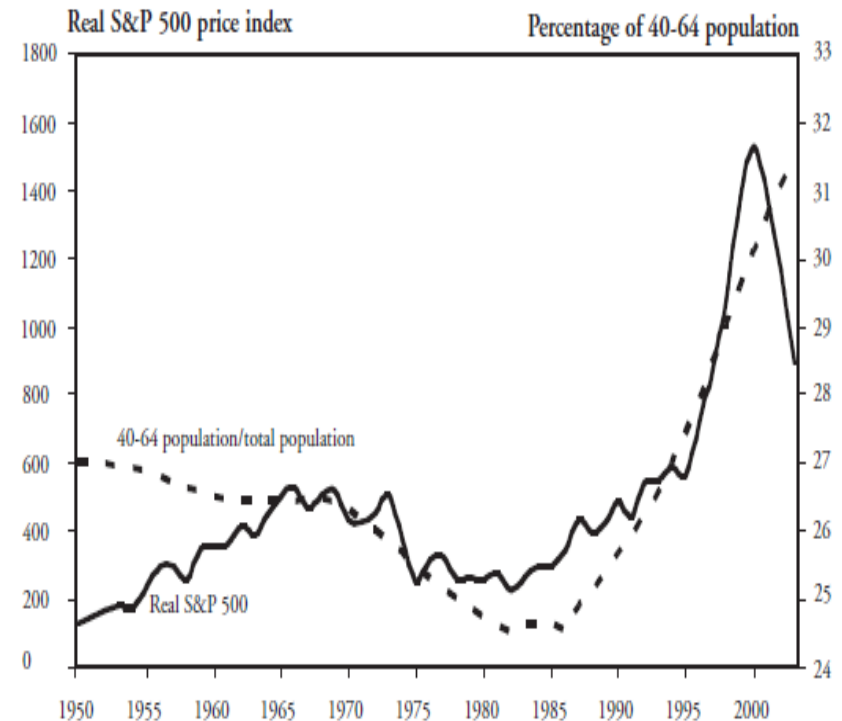
3.1 인구구조와 자산가격 : 미국의 경우 상관관계 존재

[주택가격과 35~54세 인구]



자료: 통계청(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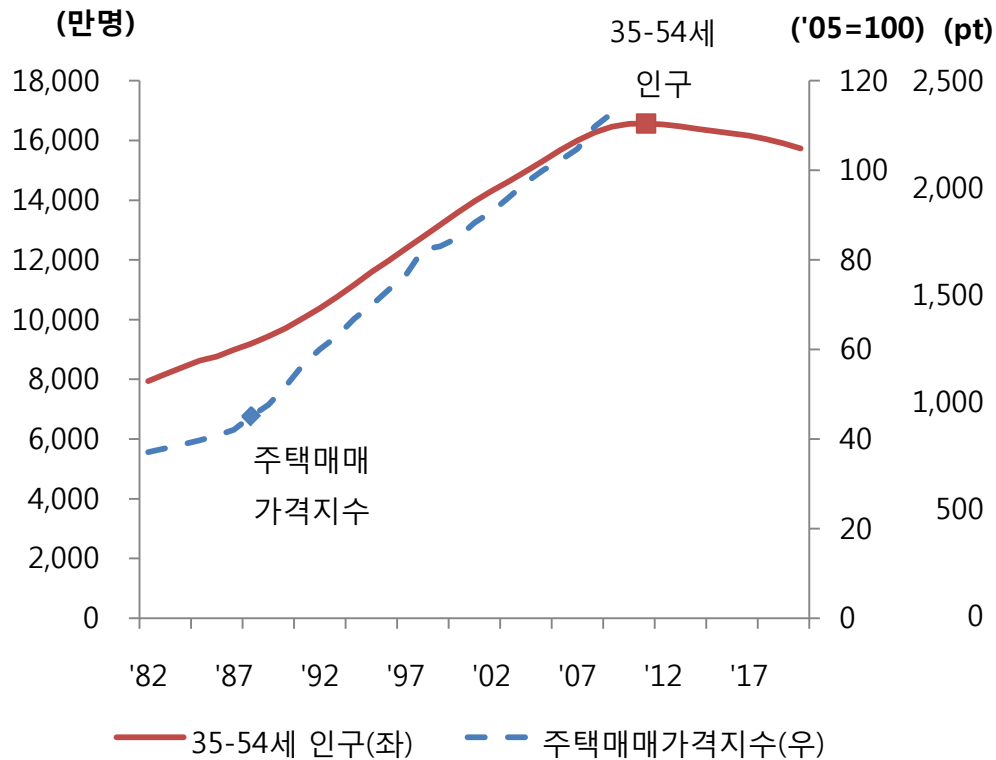
[주가와 40~64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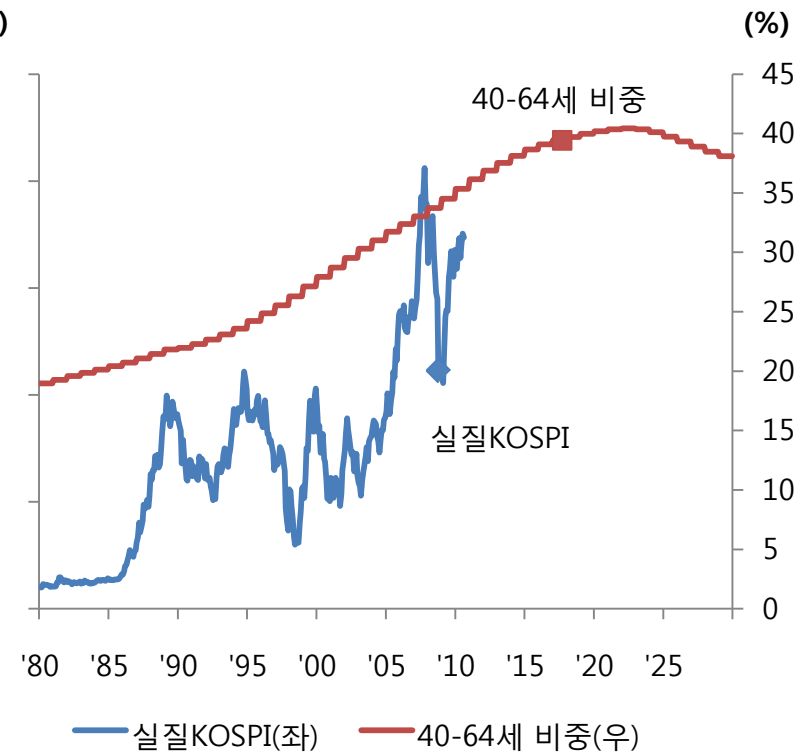
자료: Poterba(2004)

3.2 우리나라의 경우 : 인구구조 변화와 자산가격 관계 불확실

[주택가격과 35~54세 인구]



[주가와 40~64세 인구]



자료: 통계청(2009)

3.3 연구결과 : 결과 혼재, 주택 및 주식가격 하락 가능성

연구자	주요 내용
Mankiw & Weil(1989)	고령화로 1990~2010년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 예상
Abel(2000))	저축률 하락에 따른 자산수요 감소로 주식 및 주택가격 하락
Gonzalez-Paramo (2006)	주택은 내국인에 의해 수요되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라 급락 가능성
Poterba (2001, 2004)	고령화로 주택 및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Brooks (2006)	고령화가 자산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
최공필 외 (2005)	자산가격 변화에 따라 자산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고령화로 인해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시에 하락할 경우 자산가격에 영향이 없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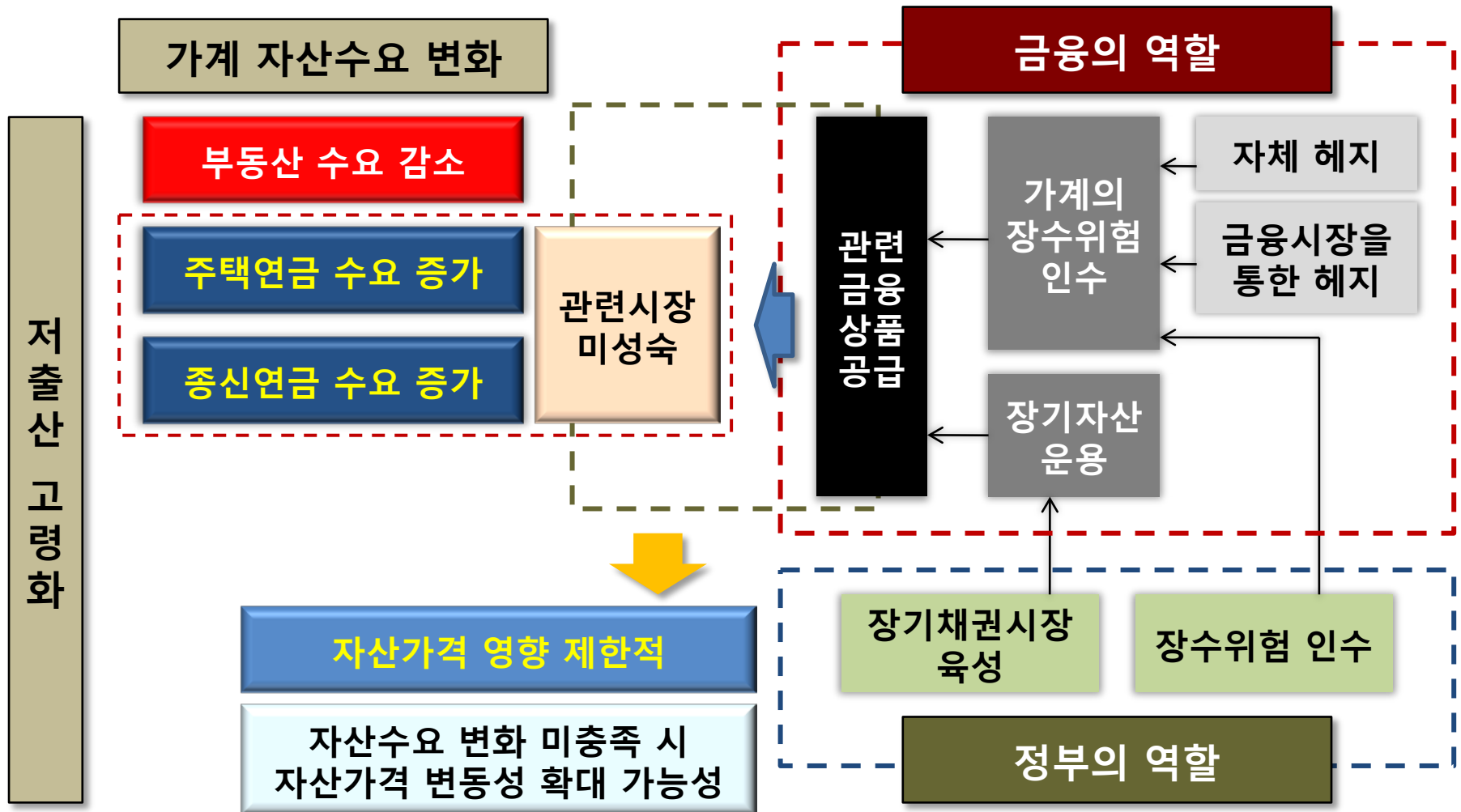
3.4 결과 혼재의 원인 : 분석기법의 한계, 공급 변화

이론 분석	실증 분석
모형에 사용된 모수값과 가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 모수값의 경우 과거 자료에 기반한 것인데 고령화 충격 이후에 이후 세대가 이전 세대와 같은 행태를 보일 것인지 의문시	시계열 분석의 경우 자유도 문제, 베이비붐 세대의 충격이 한번이라는 점, 누락변수 문제 등이 발생 횡단면 분석의 경우 시간효과, 코호트효과, 연령효과를 동시에 통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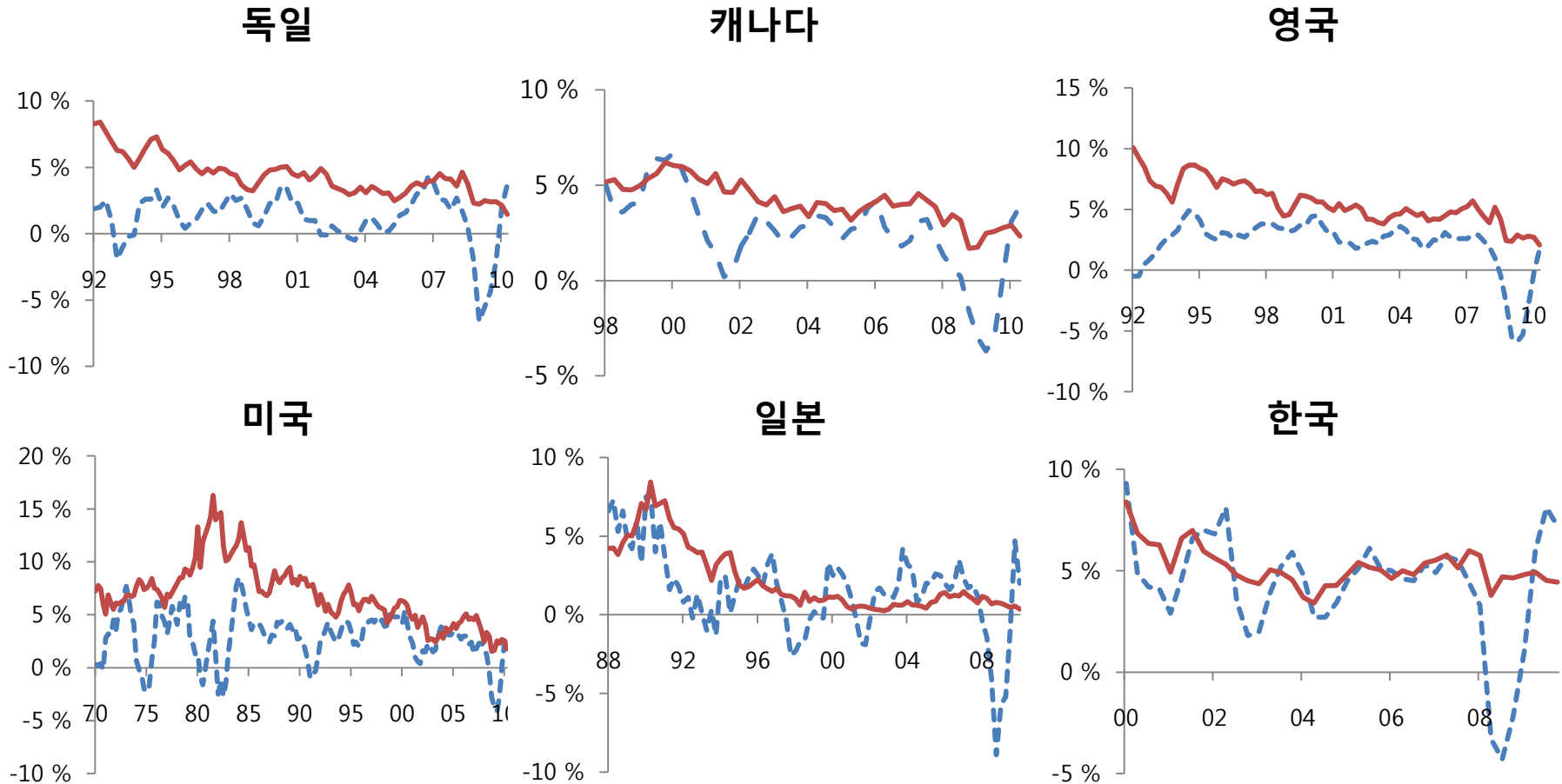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를 금융이 충족시킬 경우 주택가격을 포함한 자산가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3.5 관련 금융상품 공급 결과 : 자산가격 영향 제한적



3.6 자산수익률 : 상반된 결과가 혼재하나 하락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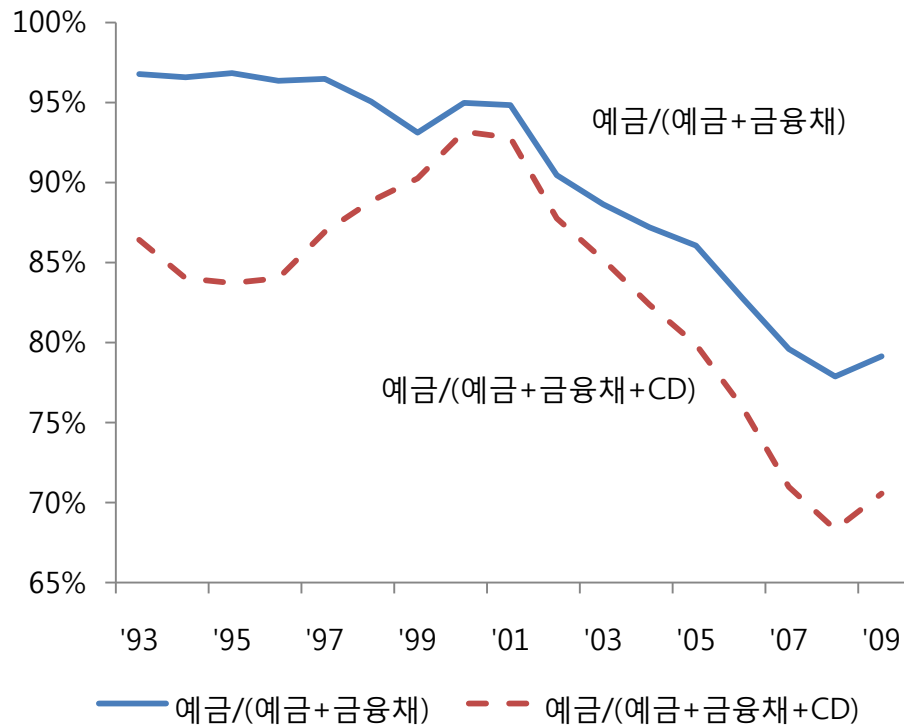
[실질이자율(실선)과 실질경제성장률(점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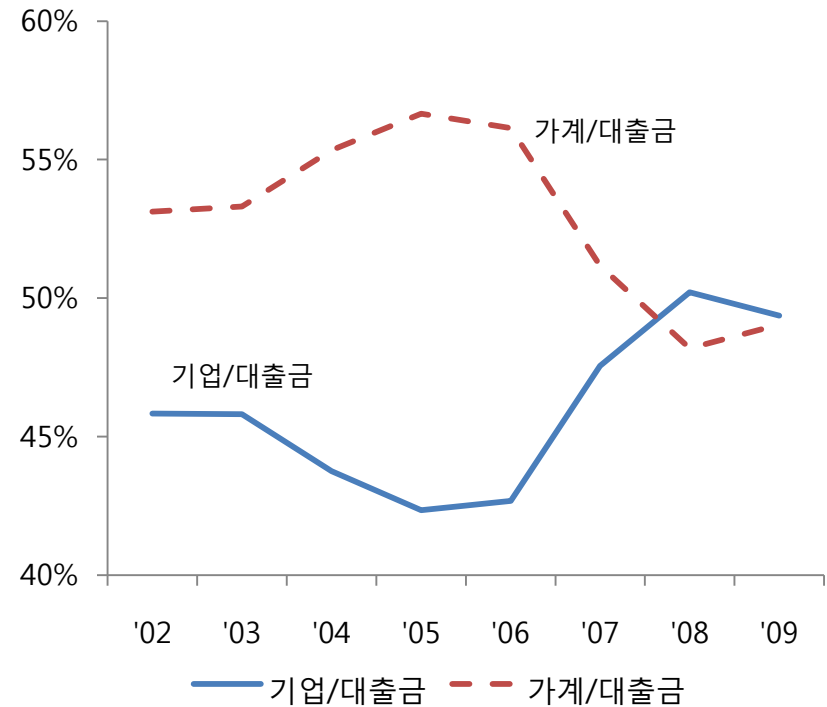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4.1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현황 : 낮은 금융중개 질

[은행의 자금조달 구성 추이]



[은행의 대출 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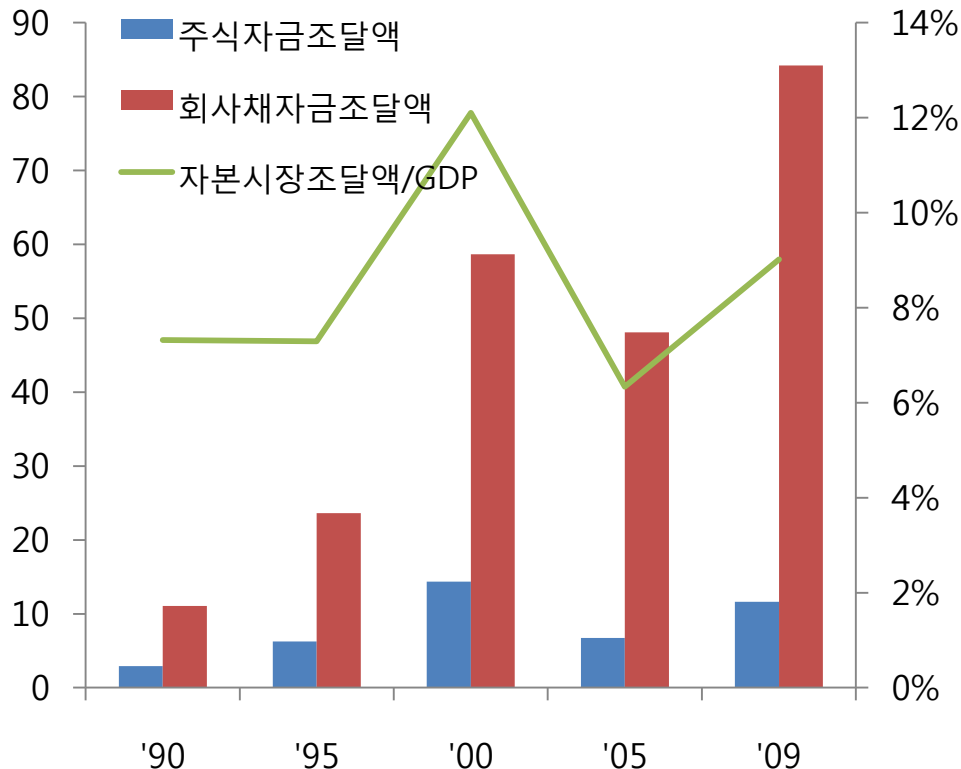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4.2 자본시장의 금융중개 현황 : 낮은 금융중개 규모 및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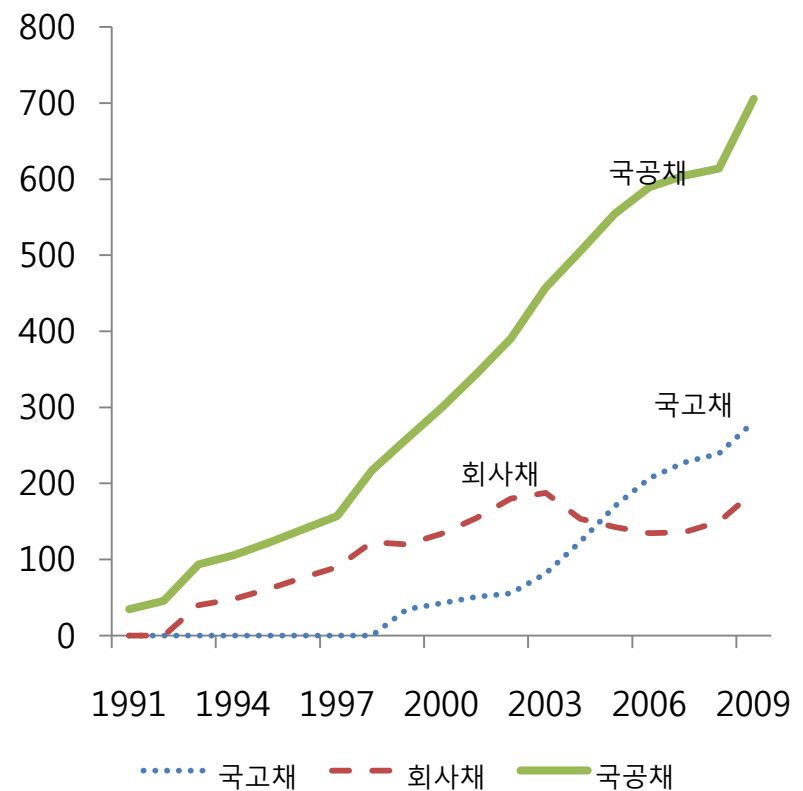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규모 추이]

단위: 조원



[국공사채 발행잔액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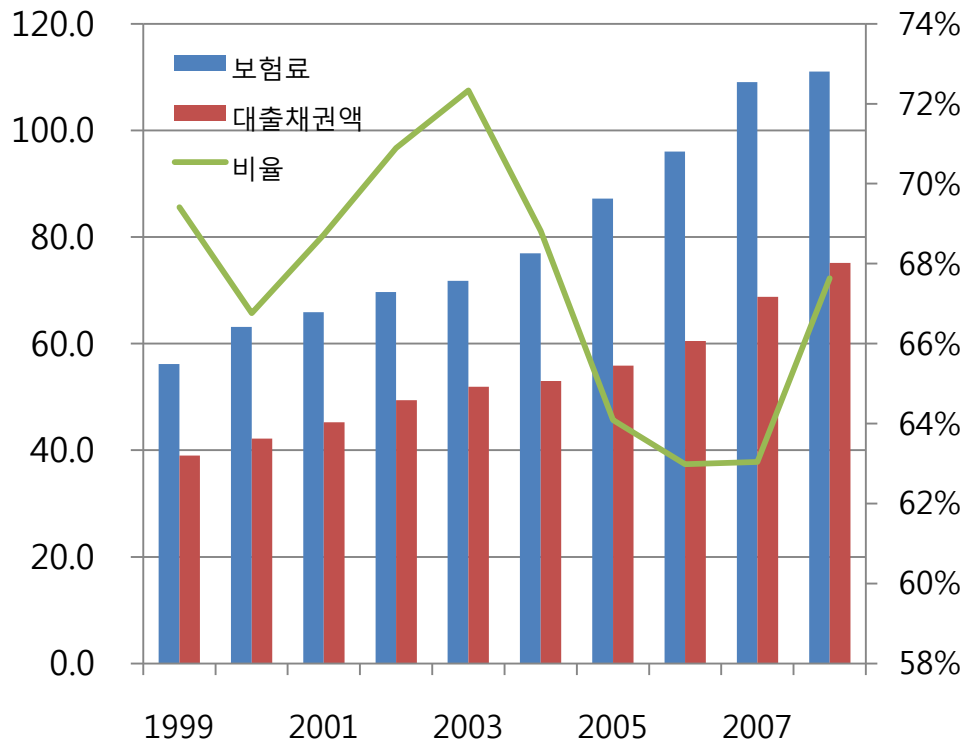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4.3 보험의 금융중개 현황 : 금융중개 질 다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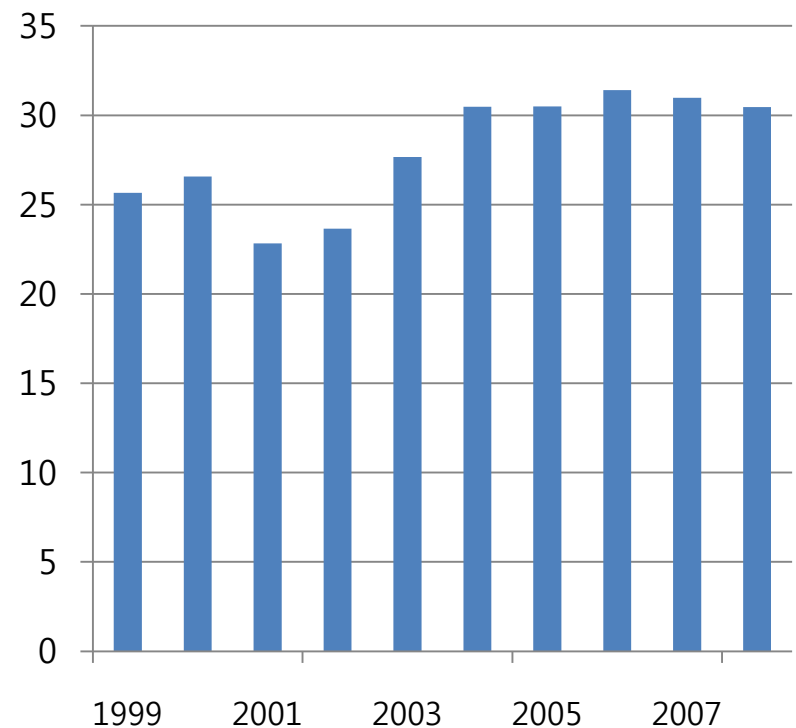
[보험료 대비 대출채권액 규모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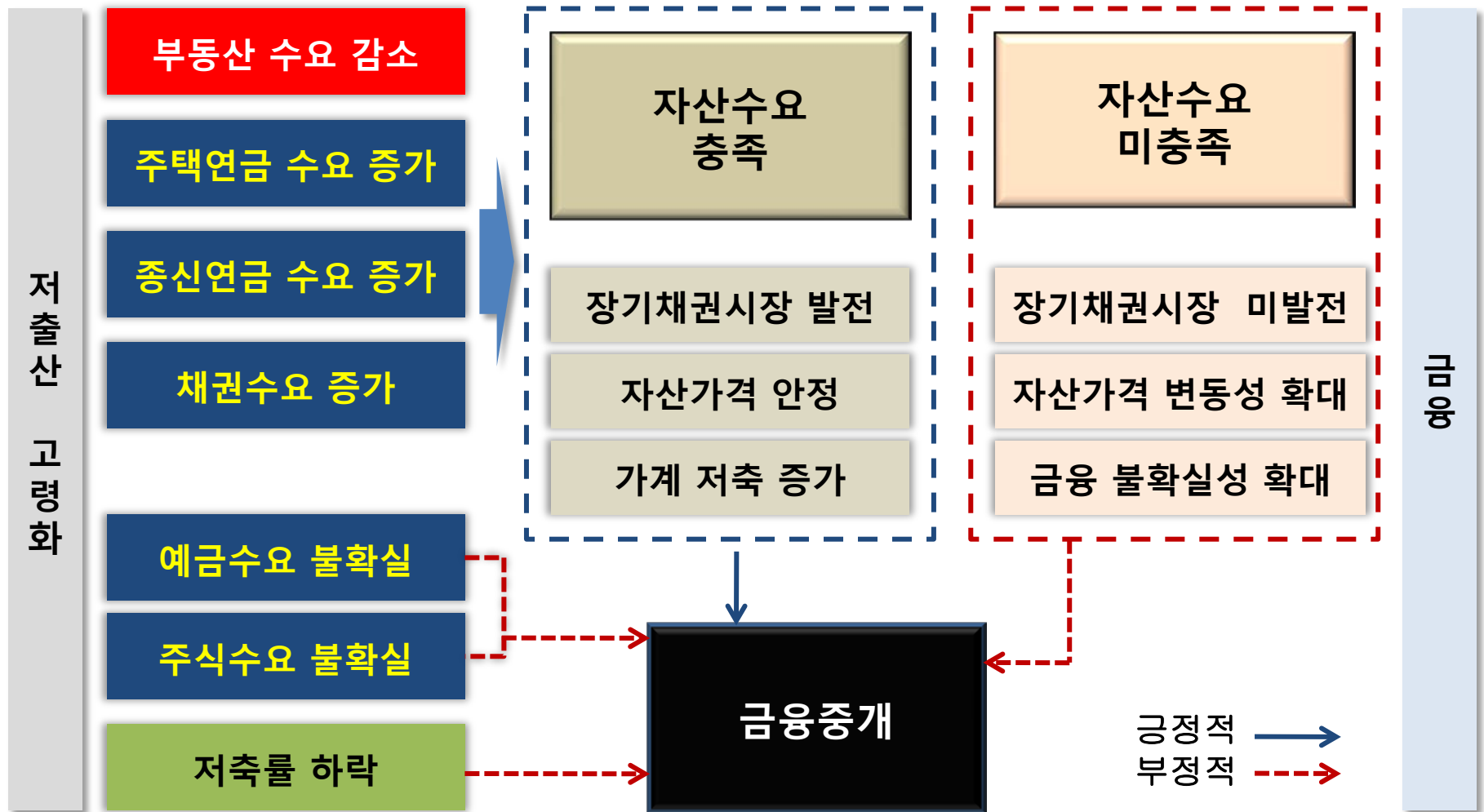
[담보대출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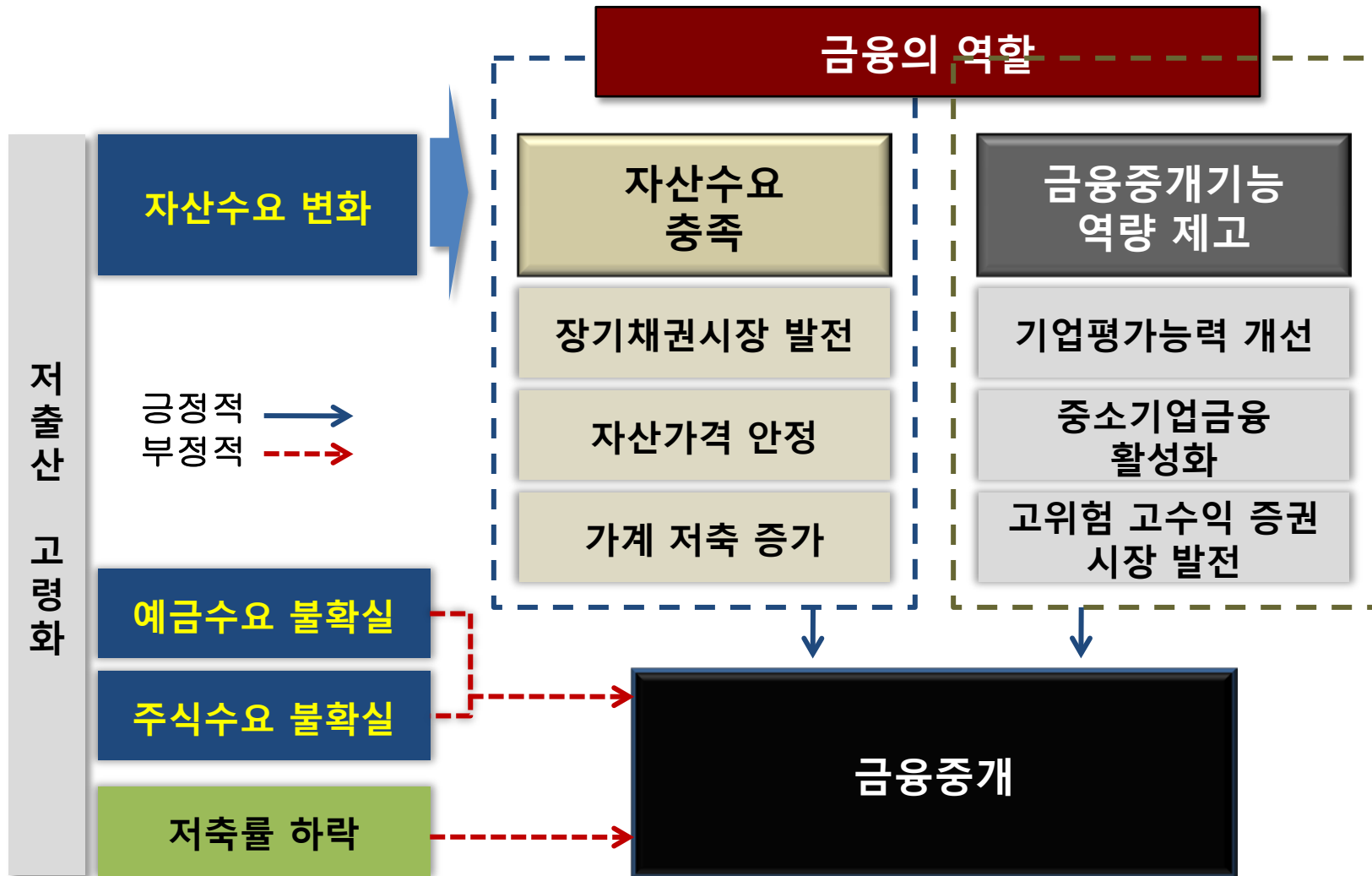


자료: 보험통계연보

4.4 금융중개 영향 : 자산수요 충족 시 금융중개기능 약화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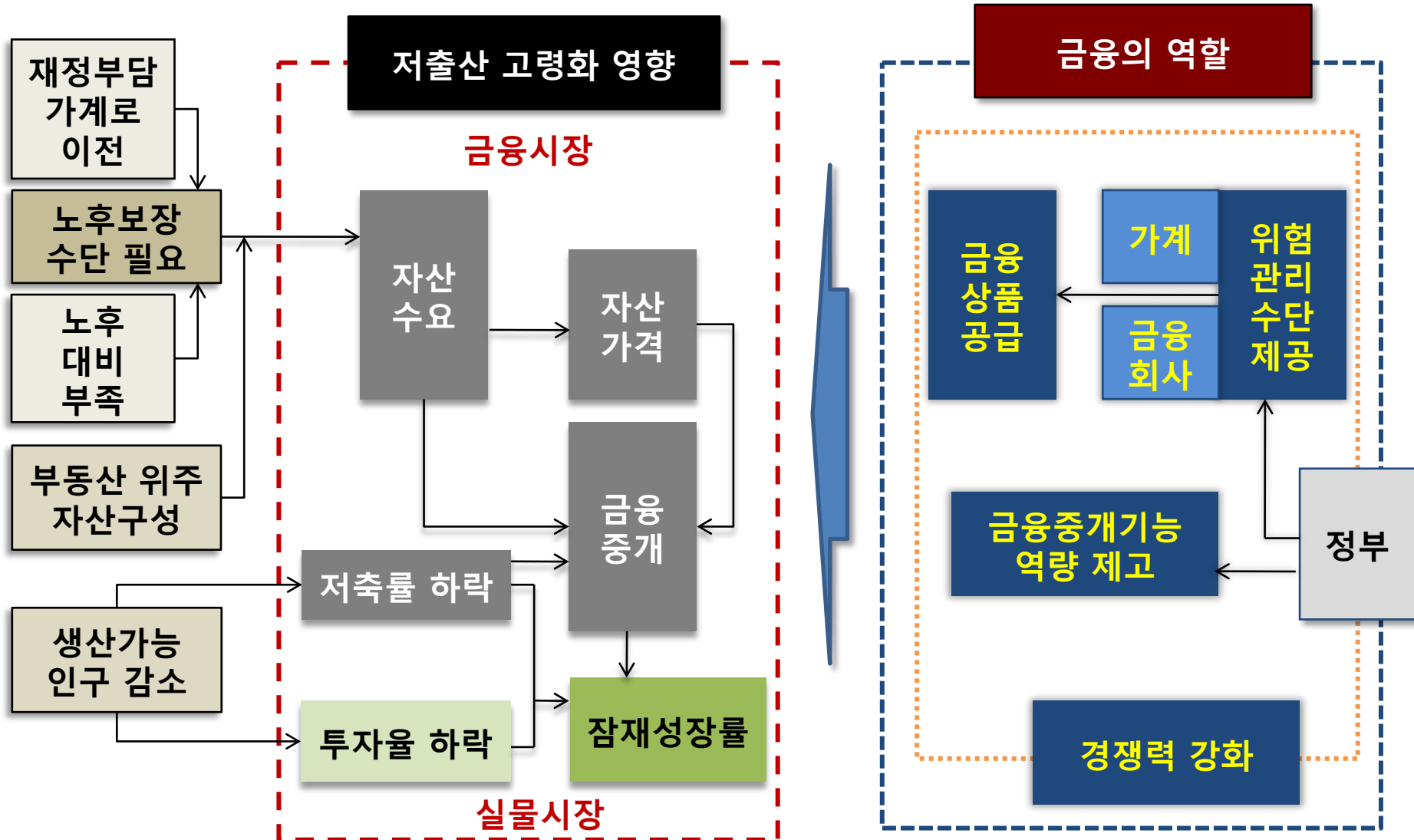


4.5 금융의 역할 : 금융중개기능 역량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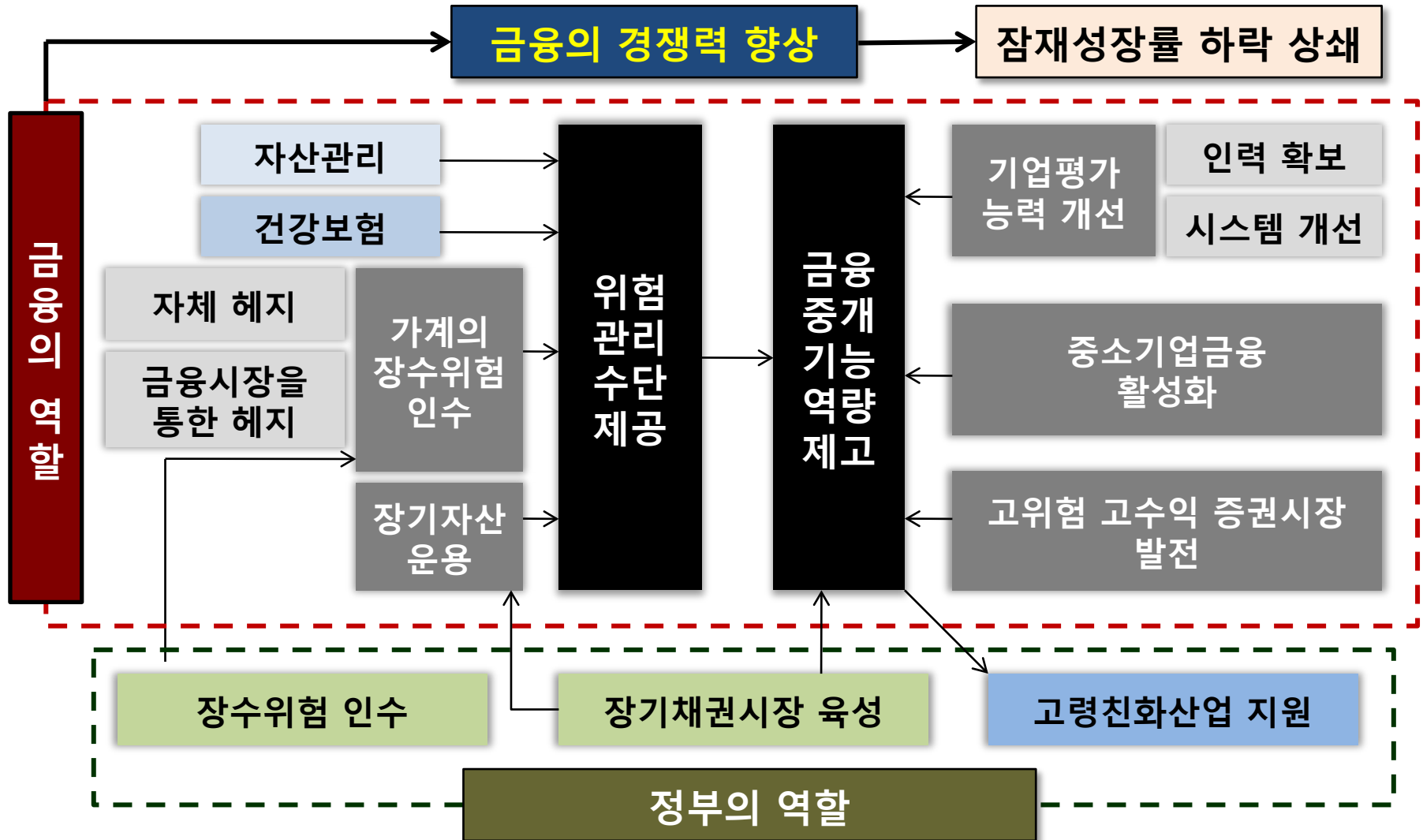


III. 시사점

1. 시사점 : 금융의 역할 중요



2. 금융의 역할 : 위험관리수단 제공, 금융중개기능 역량 제고



[참고 3. 주요국의 금융발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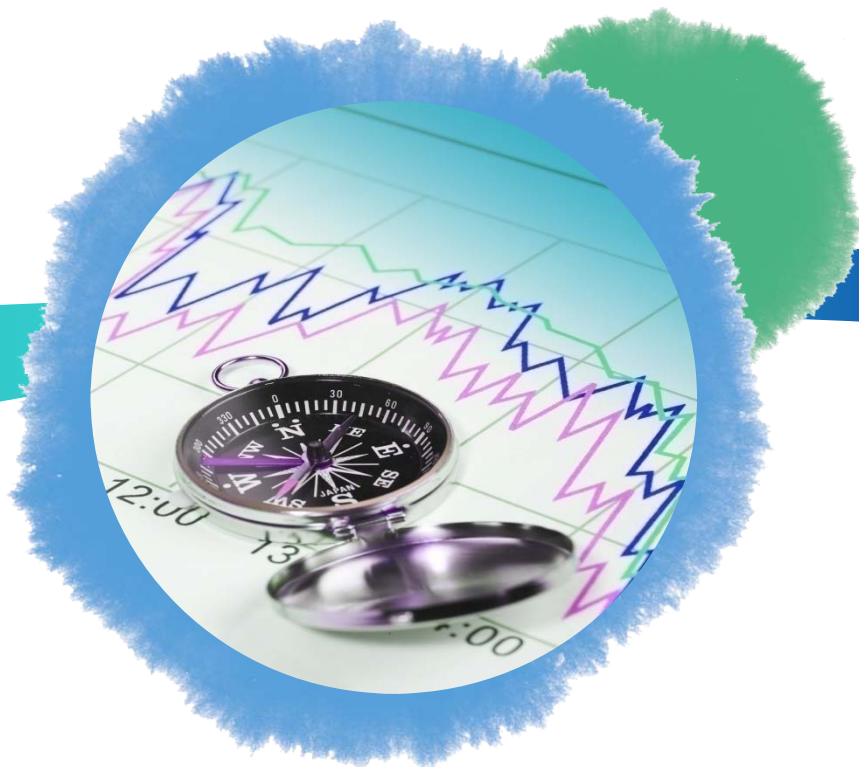
국가	2009	2008	국가	2009	2008
영국	1	2	네덜란드	8	9
호주	2	11	일본	9	4
미국	3	1	덴마크	10	n/a
싱가포르	4	10	프랑스	11	6
홍콩	5	8	독일	12	3
캐나다	6	5	벨기에	13	17
스위스	7	7	한국	23	19

자료: WEF(2009)

감사합니다

저출산 ·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박 형 수
재정분석센터장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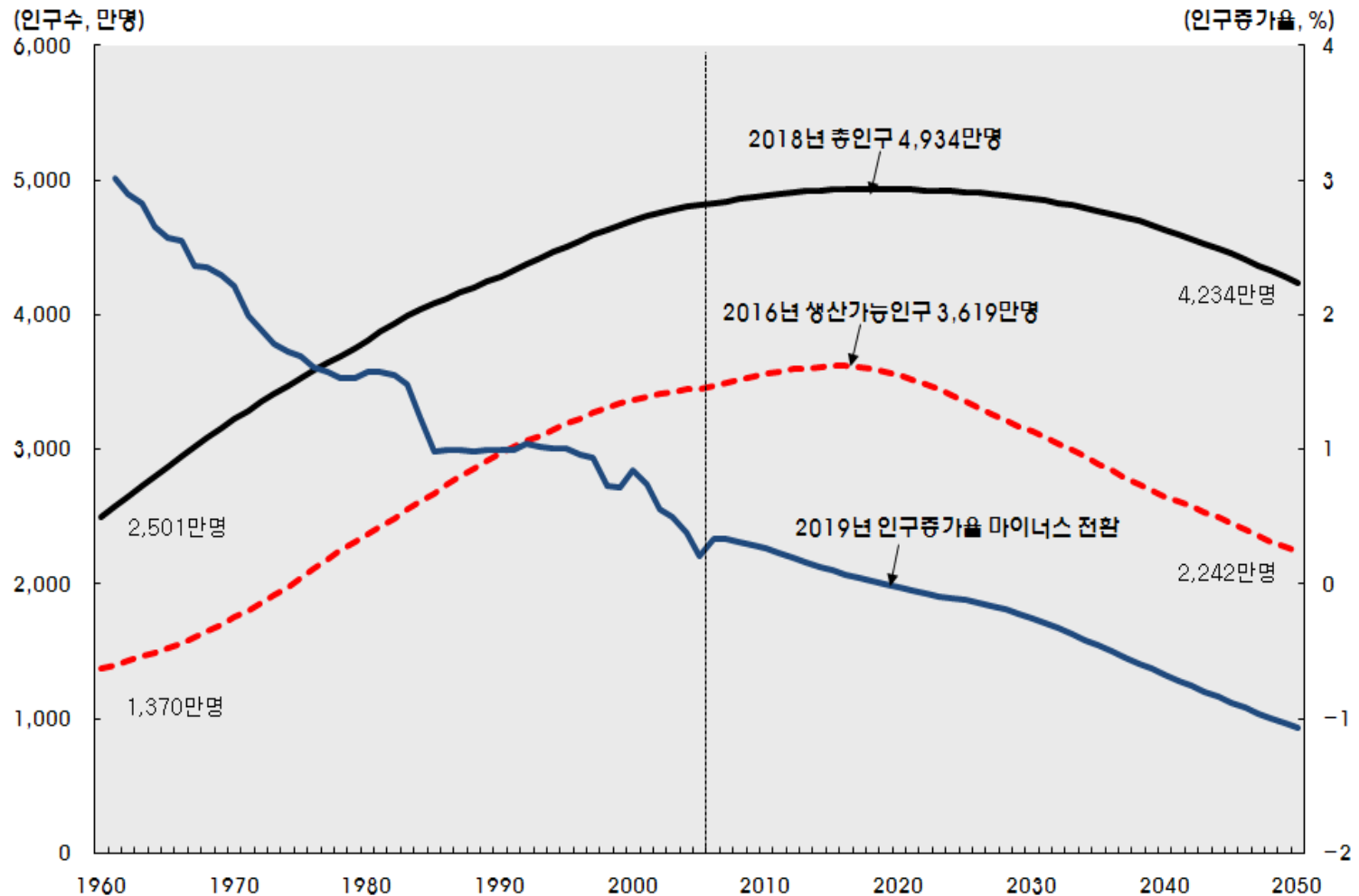
- I. 저출산 · 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
- II.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III.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 IV.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장기추계.....●
- V. 향후 정책과제.....●

I. 저출산 ·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 우리나라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전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음
- 2005~2010년 합계출산율 1.22명(UN)은 전세계 2.57명의 절반
⇒ 조사대상 196개국 중에서 193위
 - 우리나라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보스니아, 홍콩, 마카오 등 3개국뿐
 - 2040년대도 전세계 2.04명 · 선진국 1.80명(UN)에 비해, 한국은 1.28명(통계청)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사망률 감소로 기대수명이 1971년 62.3세 ⇒ 2005년 78.6세
⇒ 2050년 86.0세로 높아질 전망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노령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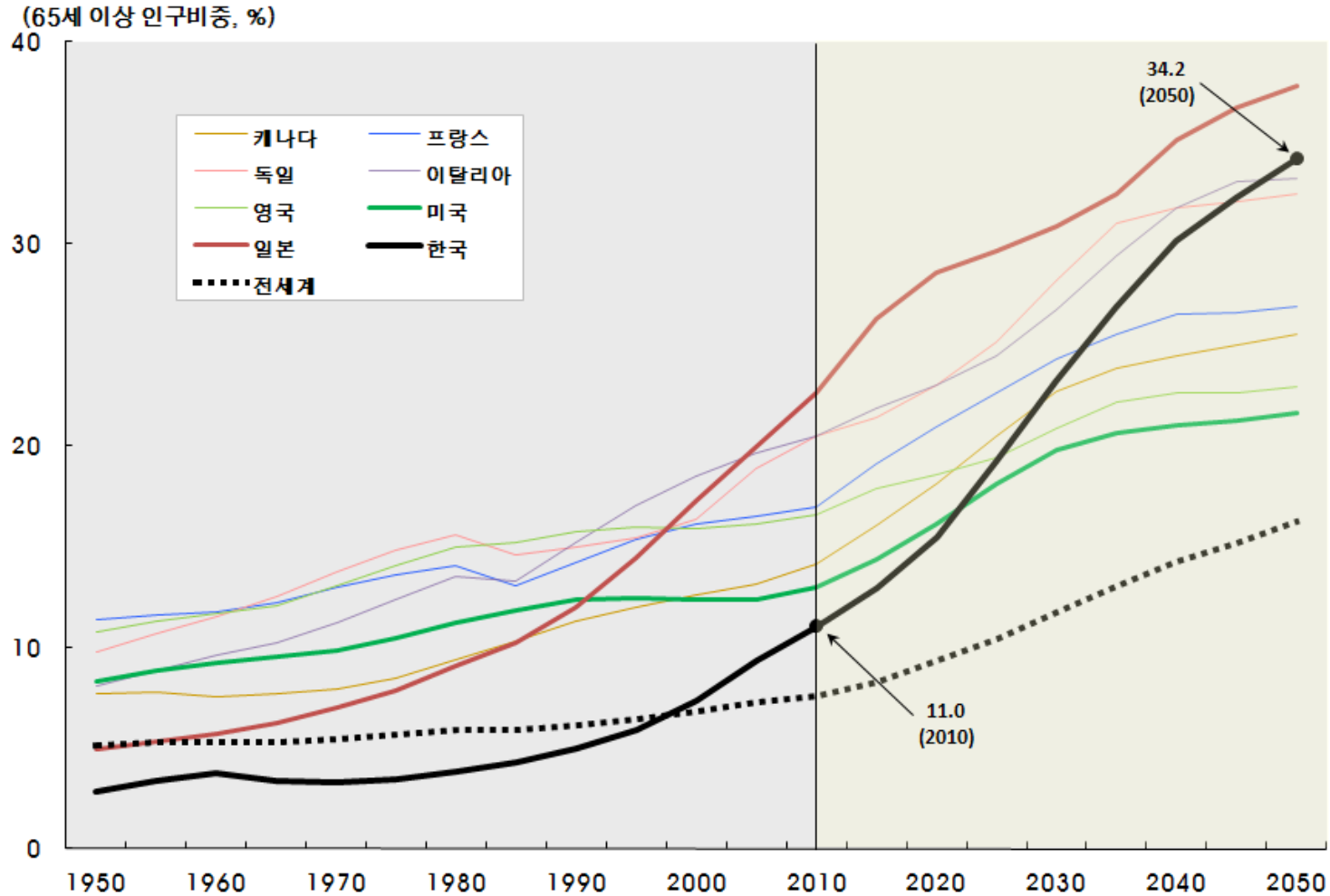
I. 저출산 ·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부터 총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할 전망



I. 저출산 ·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 65세이상 인구비중은 2010년 11.0%(UN, 통계청은 11.0%) ⇒ 2050년 34.2%(38.2%)로 3.1배(3.5배) 증가



I. 저출산 ·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 이에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 이는 G7 국가 및 전세계의 인구고령화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른 편

국가	도달연도			소요연수	
	7%	14%	20%	7% → 14%	14% → 20%
캐나다	1945년	2010년	2024년	65년	14년
프랑스	1864년	1978년	2018년	114년	40년
독일	1932년	1972년	2008년	40년	36년
이탈리아	1927년	1988년	2007년	61년	19년
일본	1970년	1995년	2006년	25년	11년
영국	n.a.	1975년	2028년	n.a.	53년
미국	1942년	2014년	2031년	72년	17년
우리나라	1999년	2018년	2026년	19년	8년
(통계청)	2000년	2018년	2026년	18년	8년
전 세계	2002년	2039년	n.a.	37년	n.a.

주 : 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14%, 20% 이상일 경우 각각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

자료: UN(2009.4)의 중위추계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6.11)의 중위추계

II.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의 영향

- **혈연기반 없는 세대간 사회적 부양체제 하에서 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격화, 사회안정을 위협할 가능성**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노동투입 저하를 야기하고, 노동력 질과 양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간접적으로 자본투입, 인적자본 투자, 생산성 등의 하락을 초래하여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킬 전망**
 - 저출산 대책, 여성·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정책, 생산성 향상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성장률 하락세를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겠으나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속화될 경우 민간부문 경제활력이 저하될 위험도 높음
- **노동시장 및 자산시장, 산업구조, 소비지출 구조 및 저축률, 소득분배 등에 변화 초래**

II.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을 추이 및 전망

	1981~90	1991 ~ 00	2001 ~ 10	2011 ~ 20	2021 ~ 30	2031 ~ 40	2041 ~ 50
KDI (2004, 2006)	8.29	5.97	4.40	4.21	2.91	1.60	0.74
한국조세연구원 (2006)	8.62	6.27	4.62	4.27	2.81	1.70	1.20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2008)	n.a.	n.a.	n.a.	4.10	2.80	1.70	1.20

II.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세수 및 세입구조 변화

- 연금 · 의료 등 사회보장부담 증가
- 성장 ·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세원변동으로 세수감소 내지 정체
- 근로소득 하락이 금융소득 증가로 상쇄되지 못해 소득세 비중이 하락하는 등 세입구조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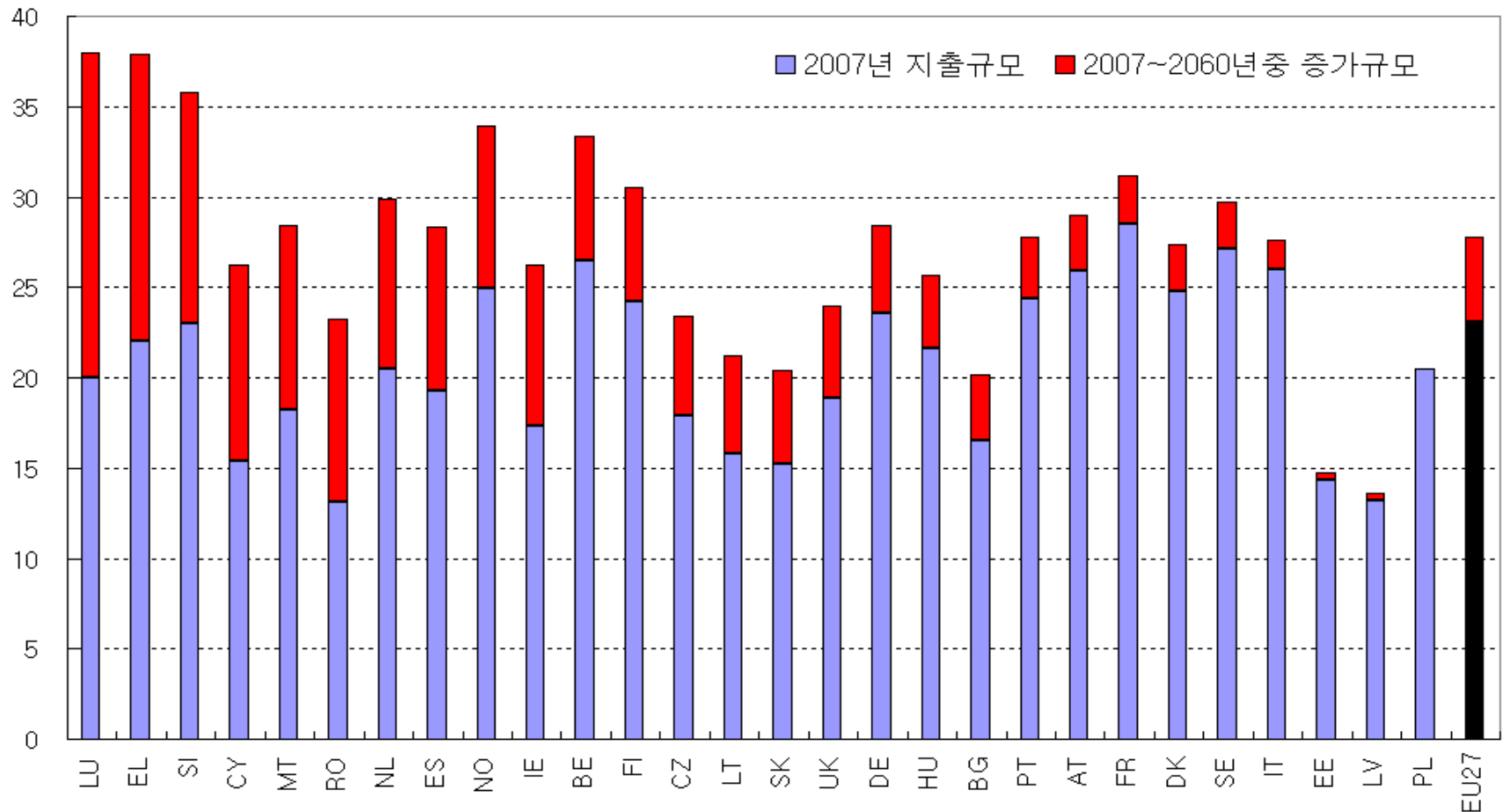
■ 재정규모 및 세출구조 변화

-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 · 의료 등 복지지출을 필두로 재정지출 급증을 초래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지출 감소
- 경제구조 · 산업구조 · 소비지출 구조 변동에 따른 SOC 감소 등 세출 구조 변동

II.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EU국가의 경우 2060년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규모가 2007년에 비해 GDP대비 4.7%p (23.1%→27.8%)나 증가

(GDP대비, %)



III.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미 추진중
-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대체이민정책, 가족지원정책,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사회보장개혁, 노동력정책, 보건의료정책 등의 대책 추진
- 우리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2005년 9월) 하여 범정부 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정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고 있음
 -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2006~2010) 기본계획 수립 (시안 32조 ⇒ 재정계획 40.3조원 ⇒ 실제 42.2조원 투입)
 -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2011~2015) 기본계획 수립중 (시안 80조원 추가 투입 계획)

Ⅲ.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 향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문제의 심각성 및 중장기 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 재정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정확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될 수 있는데, 2009년 현재 OECD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27개국이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
- 우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2006년 8월 발표된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이 유일한데, 전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복지정책에 대한 장기비전이 반영되어 저출산 · 고령화만의 재정부담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
 - 40~50년 장기재정전망은 조세연구원 등 일부 국내 연구기관과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수행
 - 향후 정부의 공식적인 장기재정전망 보고서가 발간될 필요

III.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OECD국가들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작성 현황

전망기간 \ 작성주기	매년	정기(3~5년)	부정기	소계
21~30년	-	-	한국	1
31~40년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
41~50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박, 스페인,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18
51~60년	체코, 스웨덴			2
60년 이상	덴마크, 미국		네덜란드	3
소계	18	5	4	27

자료 : OECD(2009. 9) “Fiscal Futures, Institutional Budget Reform and Their Effects: What Can Be Learned?”

Ⅲ.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이외에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한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심각성 및 세입확충 · 세출감축 등 재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필요
-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저출산 ·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운용 개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구조 등 조세제도 개편 등을 위해 노력중
- 우리도 미래 경제·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비경직성 경비뿐만 아니라 복지 · 사회보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화 노력 등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한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함

III.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 선진국의 심각한 재정악화의 이면에는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 및 소득분배 구조 악화가 지속되면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 제도가 도입되어 확대되는 중
 -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저성장·분배구조 악화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국가재정에 대한 압박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 지금부터라도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고령화·인구감소에 따른 우리경제의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검토
 - 또한 국가채무 비율을 미리 낮추고 다른 분야의 세출소요를 줄이는 한편 세입기반은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등 정책적 대응을 시작할 필요

Ⅳ.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장기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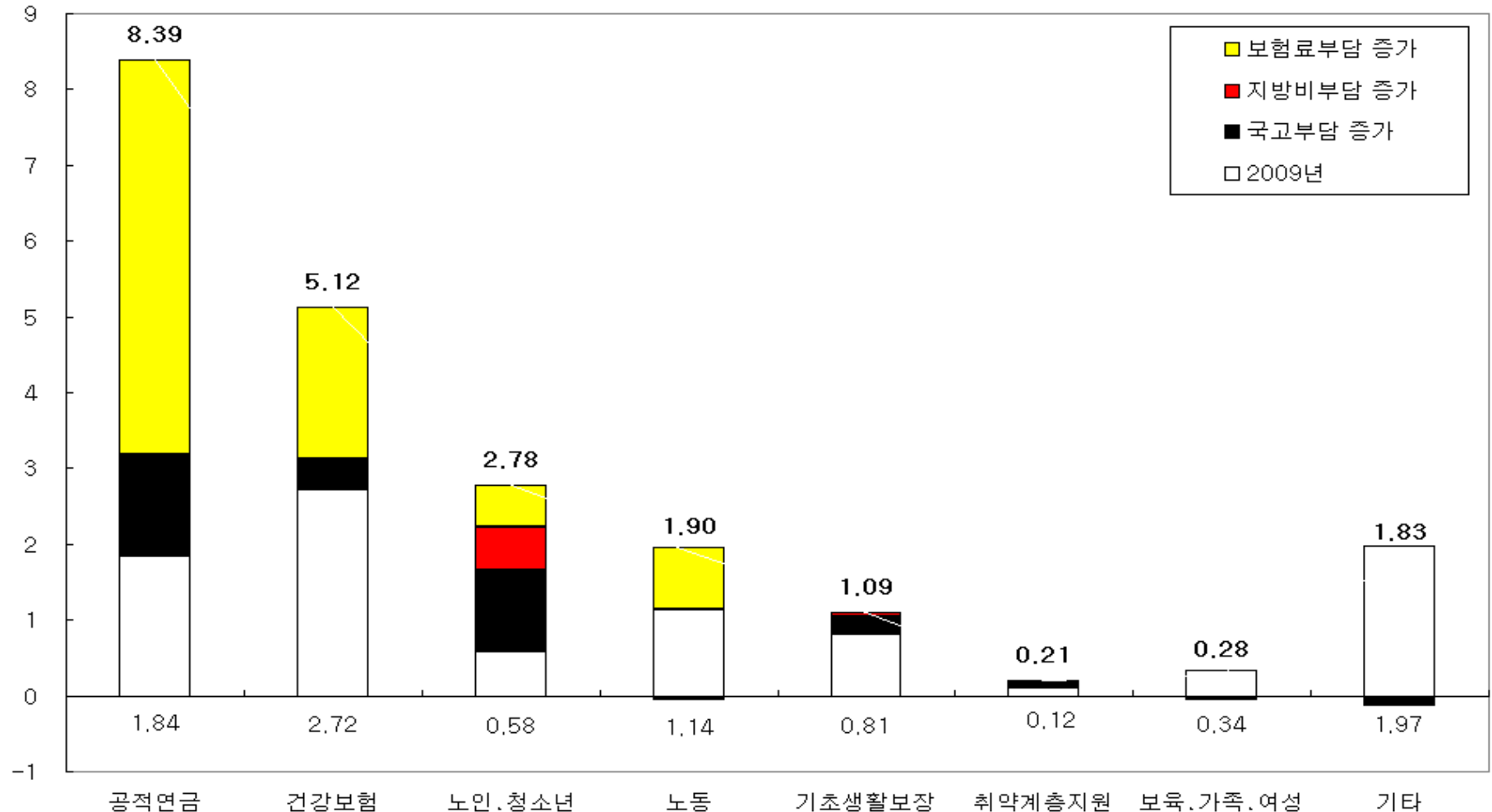
■ 조세연 · 보건복지부 (2009)는 2050년까지 현행 보건 · 복지제도 유지시 지출규모를 추계

- 장기추계대상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보육,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10개 주요 보건 · 복지지출 항목
- 추계결과 2050년 보건 · 복지지출 규모가 GDP대비 21.6%로 2009년 (9.5%)에 비해 **12.1%p**나 증가
- 12.1%p 증가의 재원조달구조 = 국고 2.9%p + 지방비 0.6%p(자체사업 제외) + 보험료 8.6%p(대부분 적립중)
- 그러나 현행 복지제도 유지를 전제로 추정된 것이므로 향후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지출 규모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

Ⅳ.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장기추계

• 분야별 보건·복지지출 증가규모 및 재원조달 추계결과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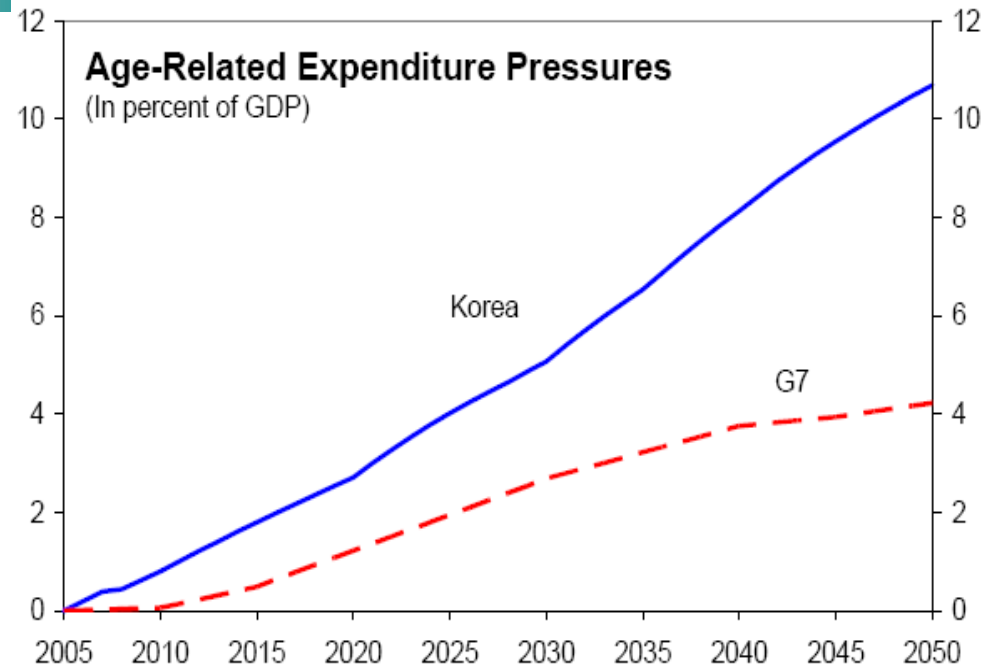


IV.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장기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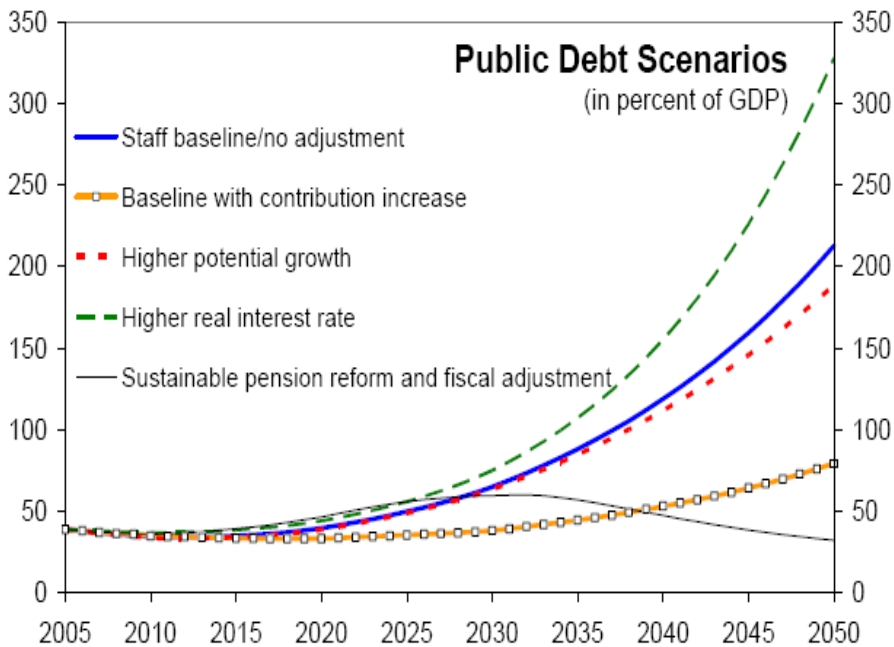
■ 2007년 IMF의 한국경제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07/344)

-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 의료 등 재정지출이 2050년까지 GDP대비 **11%p**나 증가하여, 국가채무비율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79.2~222.9%**에 달할 것으로 추계됨
- IMF가 개발한 Global Fiscal Model (GFM)을 활용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2050년말 국가채무비율은 연금개혁시 215.7%로 전망되었으며, 연금개혁과 재정개혁을 단행하면 32.1%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G7국가들의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증가규모는 평균 GDP대비 4% 정도에 그치며, 2080년말 평균 국가채무비율도 120% 수준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 발생으로 ……)

Ⅳ.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장기추계



Sources: European Commission (2005); and OECD (2001).



Sources: Data provided by the authorities; and IMF staff projections.

IMF(2010. 4)의 G20국가들의 연금 · 의료 장기재정추계 결과

	Pension Expenditures					Public Health Expenditure					합 계				
	2010	2030	2050	2010 to 2030	2010 to 2050	2010	2030	2050	2010 to 2030	2010 to 2050	2010	2030	2050	2010 to 2030	2010 to 2050
Argentina	5.9	6.3	8.6	0.4	2.7	4.8	6.3	8.5	1.5	3.7	10.7	12.6	17.1	1.9	6.4
Australia	3.1	4.3	4.8	1.2	1.7	6.5	9.6	11.6	3.1	5.1	9.6	13.9	16.4	4.3	6.8
Brazil	8.5	9.8	15.8	1.3	7.3	5.1	7.2	10.1	2.1	5.0	13.6	17.0	25.9	3.4	12.3
Canada	4.7	6.3	5.9	1.6	1.2	7.6	10.6	13.4	3.0	5.8	12.3	16.9	19.3	4.6	7.0
China	2.2	2.4	2.6	0.2	0.4	2.2	3.1	4.4	0.9	2.2	4.4	5.5	7.0	1.1	2.6
France	13.5	14.2	14.2	0.7	0.7	8.7	12.2	14.6	3.5	5.9	22.2	26.4	28.8	4.2	6.6
Germany	10.2	11.5	12.3	1.3	2.1	7.9	11.6	14.4	3.7	6.5	18.1	23.1	26.7	5.0	8.6
India	1.7	2.1	0.9	0.4	-0.8	0.9	1.3	1.8	0.4	0.9	2.6	3.4	2.7	0.8	0.1
Indonesia	0.9	1.3	2.1	0.4	1.2	1.3	1.9	2.6	0.6	1.3	2.2	3.2	4.7	1.0	2.5
Italy	14.0	14.8	14.7	0.8	0.7	6.3	8.9	11.0	2.6	4.7	20.3	23.7	25.7	3.4	5.4
Japan	10.3	10.1	11.0	-0.2	0.7	6.9	9.8	12.8	2.9	5.9	17.2	19.9	23.8	2.7	6.6
Korea	0.6	2.2	4.4	1.6	3.8	4.0	6.3	9.2	2.3	5.2	4.6	8.5	13.6	3.9	9.0
Mexico	2.4	4.5	3.5	2.1	1.1	3.2	4.5	6.4	1.3	3.2	5.6	9.0	9.9	3.4	4.3
Russia	9.4	14.0	18.8	4.6	9.4	3.6	5.0	6.7	1.4	3.1	13.0	19.0	25.5	6.0	12.5
Saudi Arabia	2.2	3.6	7.1	1.4	4.9	2.9	3.9	5.5	1.0	2.6	5.1	7.5	12.6	2.4	7.5
South Africa	1.3	1.9	2.3	0.6	1.0	3.2	4.3	5.7	1.1	2.5	4.5	6.2	8.0	1.7	3.5
Turkey	7.3	10.5	11.4	3.2	4.1	3.6	5.0	7.2	1.4	3.6	10.9	15.5	18.6	4.6	7.7
United Kingdom	6.7	7.6	8.1	0.9	1.4	8.0	11.3	14.2	3.3	6.2	14.7	18.9	22.3	4.2	7.6
United States	4.9	6.0	5.7	1.1	0.8	6.7	11.4	14.9	4.7	8.2	11.6	17.4	20.6	5.8	9.0
G-20	5.8	6.8	7.4	1.0	1.6	5.3	8.0	10.4	2.7	5.1	11.1	14.8	17.8	3.7	6.7
Advanced	7.1	8.1	8.3	1.0	1.2	7.0	10.8	13.9	3.8	6.9	14.1	18.9	22.2	4.8	8.1
Emerging Market	3.8	4.9	6.1	1.1	2.3	2.6	3.7	5.2	1.1	2.6	6.4	8.6	11.3	2.2	4.9

V. 향후 정책과제

■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부담 이외에 통일비용 (73~2,300조원 추정) 부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

- 독일통일 비용: 1991~2003년 중 매년 서독 GDP의 4~5% 소요

■ 최근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복지지출이 대폭 증가

- 분야별 재원배분의 중점 전환 : 2003년을 전환점으로 지출비중이 가장 큰 분야가 경제분야 ⇒ 복지분야로 바뀜
- 최근 6년간(2005~2010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9.8%로 총지출 증가율(6.8%)을 크게 상회
- 외환위기 이후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단기간 내 급속한 복지재정 확대 속에서 비효율성 누적
- 복지지출 규모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연금성숙도, 경제발전단계, 고령화률, 조세부담률을 포함한 재정여건 등 국가별 특성 및 향후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해야 함

V. 향후 정책과제

■ 선진국도 1960~1980년대에 걸쳐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건전화 기조에 따라 복지지출도 정체 또는 감소

- 다만 남유럽권 국가(PIGS)는 정체 또는 감소 없는 지속적 증가로 최근 재정위기를 맞은 바 있음

■ 이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 성장·분배의 조화로운 균형, 노령인구 관련 지출 억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지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 필요

- 향후 복지지출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이미 도입된(built-in) 제도만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조세부담률 상향조정과 복지 및 여타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 곤란
- 이에 신규 복지제도 도입 또는 최근 도입된 제도의 지원 확대
보다는 복지재정 부담의 적정수준 관리가 바람직

V. 향후 정책과제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지출 수준 유지를 위해 장기 복지재정 전망, 법정지출 통제의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한 재정총량 관리체계 강화 필요 ⇒ 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 등 법정지출에 대해 PAYGO(Pay-as-you-go) 원칙 도입 검토

■ 특히 최근 경제위기와 이의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추진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건전화 정책은 단순히 기존의 한시적 확장정책 철회(재정부문의 출구전략)나 국가채무비율의 위기이전 수준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부채비율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하여야 함

-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소득세 비중이 낮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이며, 조세·국민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증가에 대응하여 어느 정도의 세입증대 정책도 가능

V. 향후 정책과제

- IMF는 금번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악화의 현재가치가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현재가치의 1/20에 불과하므로,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더불어 향후 폭증할 복지지출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할 것을 권고

국가	금번위기(A) (GDP대비, %)	인구고령화(B) (GDP대비, %)	$A/(A+B)*100$ (%)
호 주	26	482	5.1
캐 나 다	14	726	1.9
프 랑 스	21	276	7.1
독 일	14	280	4.9
이탈리아	28	169	14.2
일 본	28	158	15.1
한 국	14	683	2.0
멕 시 코	6	261	2.2
스 페 인	35	652	5.1
터 키	12	204	5.6
영 국	29	335	7.9
미 국	34	495	6.4
G20 선진국 전체	28	409	4.9

감사합니다

저출산과 국민연금

2010.10

배준호(한신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국민연금 도입배경

■ 고령화,장수화 진행과 가족간 유대 약화

노인(65세 이상)인구의 빠른 증가

평균수명 증대로 장수 노인 급증

전통적인 가족간 유대의 급격한 약화

노후소득보장 : 각 가정 아닌 사회차원 대응 필요

국민연금의 특성

1.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 (세대내, 세대간 통합)

고소득자



저소득자

세대내 통합

-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
- 저소득층의 높은 소득대체율

부모세대



현세대



후세대

세대간 통합

- 현세대는 부모 부양하면서 적은 보험료 납부
- 후세대는 조금 더 많은 보험료 납부로 현세대 부양

2. 국가 주도의 최저한 소득보장

- 65세 도달 혹은 소득능력 상실시 국가 책임하에 최저한의 종신연금 지급
- 광범위한 노후빈곤의 사전적 예방책
- 노후대비 자조 노력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보장(구 생활보호) 지원대상 축소

3. 실질가치 보장 연금 : 물가상승률 반영



연금 급여

- 수급 기간중 물가상승율 만큼 연금 급여 인상
- 사적연금과 차별화되는 공적연금의 특징

국민연금 도입 이후 경과

- 1973.12 박정희 정부에서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석유파동과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시행 연기
- 1986.12. 전두환 정부에서 국민연금법 제정
- 1987.9. 국민연금공단(구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1988. 1. 국민연금 시행
 - 10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 대상
- 1995. 7. 농어촌 지역 농어민, 자영업자로 확대
- 1998.12. 소득대체율 인하(70%→60%)
- 1999. 4. 도시지역 주민으로 확대
- 2007.7. 소득대체율 인하(60%→50% →40%, 2028년)
- 2008.1. 기초노령연금 시행

그간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노력

o 1998.12 다각도의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 재정계산(5년마다) 제도 도입
- 급여수준 인하(소득대체율 하향조정 70% → 60%)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 2033년에 65세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인상)
- 반환일시금 청구조항(자격상실 1년후)삭제
- 최소 가입기간 10년으로 하향조정(재정안정화 역행 조치)

o 2007.7 급여수준 인하 결정

- 소득대체율 하향조정 : 현 60%를 50%(2008년), 40%(2028년까지 매년 0.5%p ↓)로 인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2010.7)

가입자
1,898
만명

사업장
1021
만명

농어촌지역
194
만명

도시지역
673
만명

임의가입자
10
만명

연금 수급자
270
만명

노령연금
224
만명

장애연금
7
만명

유족연금
39
만명

연금보험료 부담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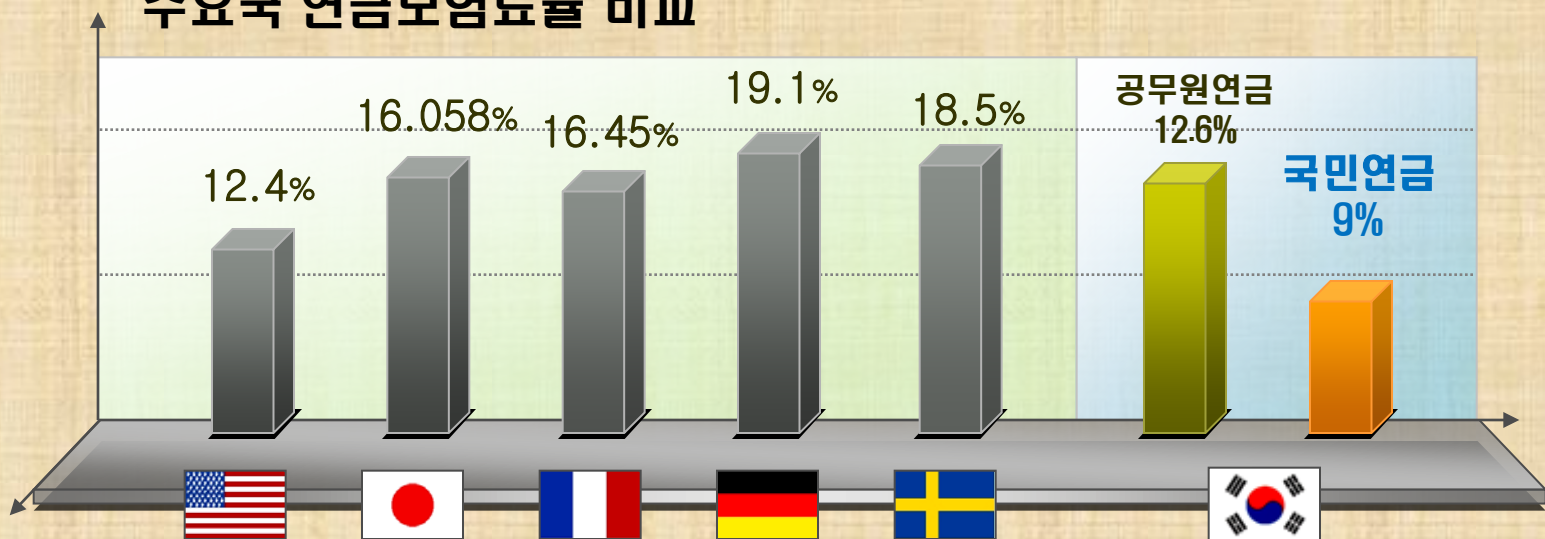
4.5%
본인

사업장가입자
9%

4.5%
사업주

※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주요국 연금보험료를 비교



연금 급여 산정 방식

연금급여

기본 연금 + 부양가족연금

기본 연금

$$1.2 (A+B) * (1+0.05 n)/12$$

- 1.2: 계수(40년 가입 평균소득자 소득대체율 40% 도출)
-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액
-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재평가액 평균
- n: 20년 초과 가입연수
- 0.05: 계수

부양가족 연금

가족수당 상당부가급여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연 220,870원
 -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 연 147,230원
 -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 : 연 147,230원
- ※ 자녀 및 부모는 1인당 지급액

연금급여 수준

(2028년 이후 기준)

소득월액의
20 %

소득월액의
30 %

소득월액의
40 %

20년 가입

30년 가입

40년 가입

30년 가입시 소득월액(평균)의 30%수준

연금급여 유형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60세부터 지급

유족 연금

연금가입자/노령연금수급자

➔ 사망시 지급

- 10년 미만 : 기본연금의 40%
- 10~20년 미만 : 기본연금의 50%
- 20년 이상 : 기본연금의 60%

장애연금

가입중 장애발생시

- 장애1급 : 100%
- 장애2급 : 80% (연금)
- 장애3급 : 60%
- 장애4급 : 225% (일시금)

일시금

원금+ 이자

- 반환 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
 - 총 납입보험료 + 이자
- 사망 일시금 : 가입자 사망시
 - 반환일시금 범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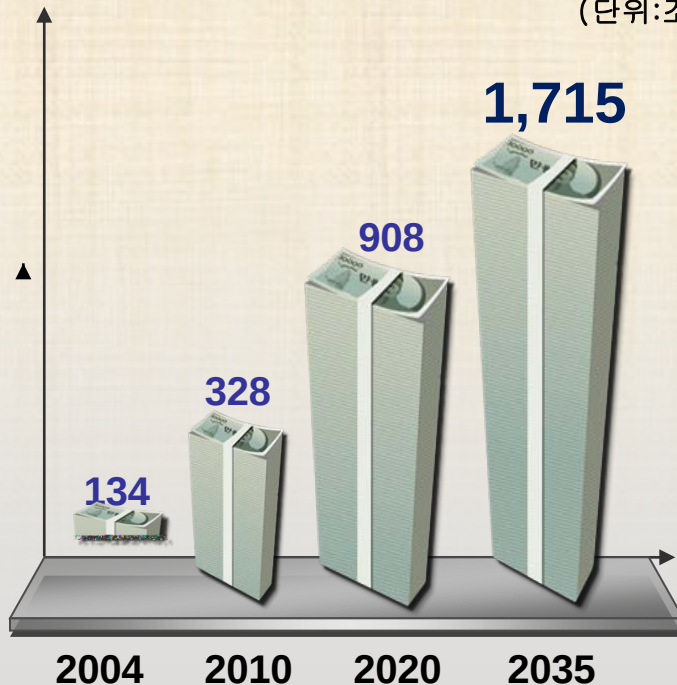
※ 장애나 유족연금의 경우 1개월만 가입해도 20년간입 노령연금액이 기준이 됨

국민연금 기금 운용

- 기금 운용 기본계획 수립 : 기금운용위원회
- 기금 운용 : 기금운용본부
 - 전문 펀드매니저의 운용 (주로 국·공채 등 채권부문)

적립금 추이

(단위: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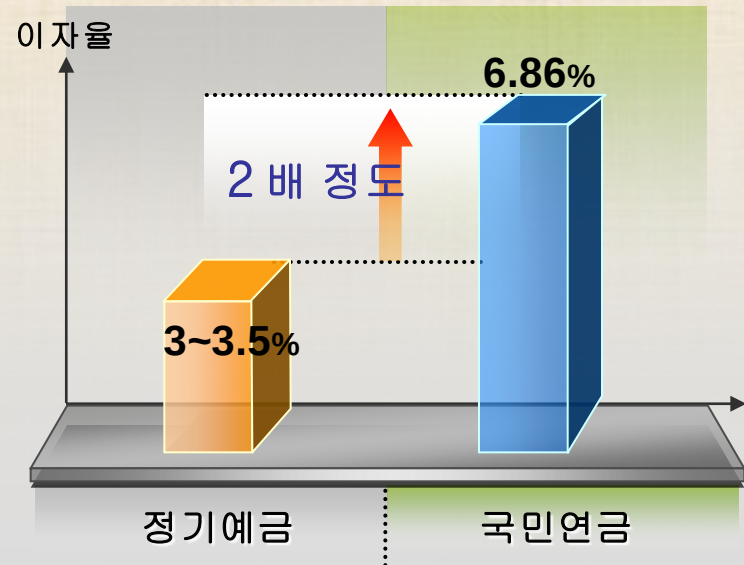


기금운용 수익률

연평균(198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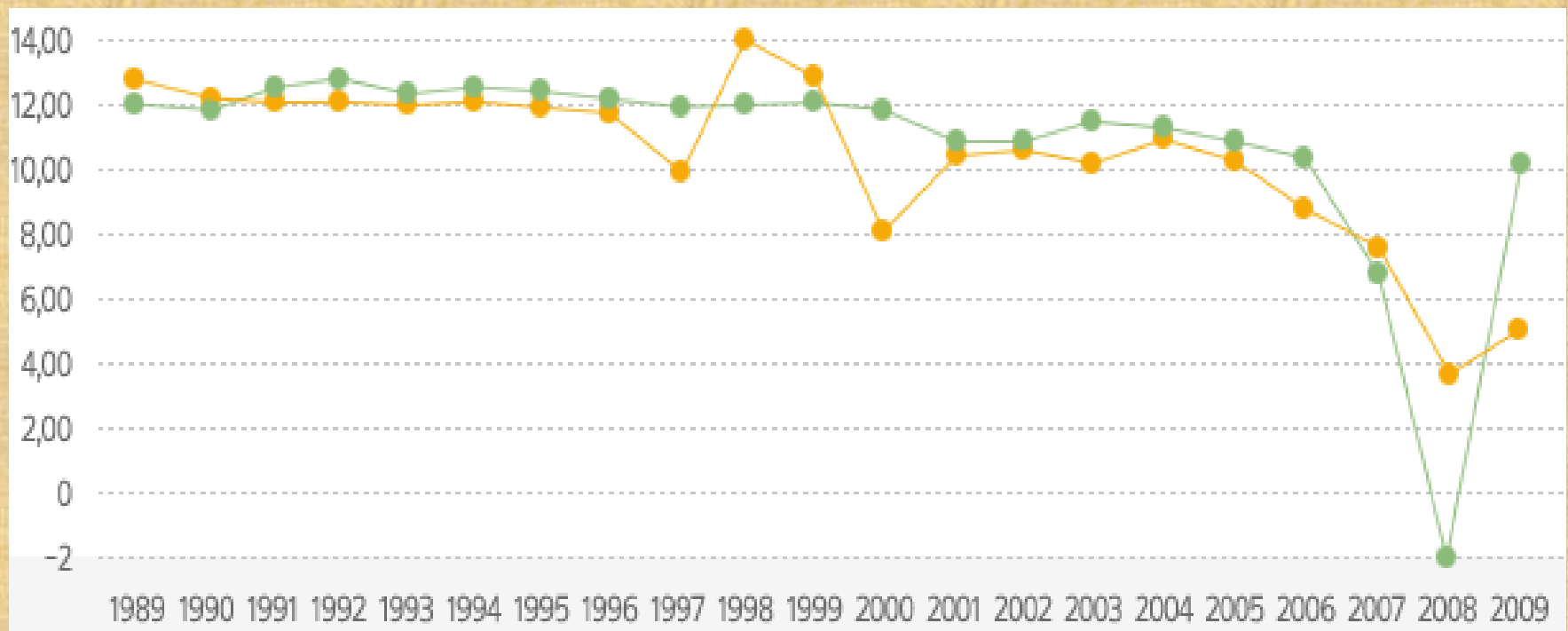
누적 수익률 6.86%

세계적으로 상위권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연도별, %-



연두색 : 연간수익률
 황색 : 3년평균 수익률

국민연금 기금 운용

- 기금 운용 실적 보고 : 정부(국무회의), 국회, 대통령
- 기금 운용 실적과 과정 감시 : 정부, 감사원,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 등

※ 278조원의 투자운용처 [2009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계	금융부문						공공 부문	복지 부문	기타 부문
	소 계	채권	주식	대체	단자	해외대차			
2,776,424 (100.0%)	2,772,519 (99.9%)	2,150,866 (77.5%)	495,051 (17.8%)	125,222 (4.5%)	3,422 (0.1%)	-2,042 (-0.1%)	0	1,540 (0.1%)	2,365 (0.1%)



국민연금 관련 주요 이슈

-제도 및 기금지배구조 관련

1) 연금재정 안정

- 재직자노령연금 개정(안) 집중 검토

2) 미수급, 저수급 자 문제: 사각지대

3) 가입자간 형평성

4) 급여수준의 적정성 5)기금지배구조 개편

국민연금 재정 안정

재정전망

2044년 당기적자 → 2060년경 기금고갈
전망

재정불안요인

- 저부담, 고급여 체계
- 저출산과 장수

대응방안

- 보험료율 인상, 급여수준 인하
- 수급개시연령 인상
- 기금 운용수익 확대
- 관리운영비 감소
- 급여제도 효율 운영(재직자노령연금 등)

재직자노령연금 개정 움직임

문제제기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보건복지위) 등이
간담회(2009.6.9) 통해 의원입법 발의

논의배경

- 60대 전반층의 근로의욕 저하
- 수급자의 연금권에 대한 의식 제고

이후 대응

- 보건복지부, 2010년말 법개정
2011년 시행 예정
- 개정안은 원희목의원 발의안과 흡사

재직자노령연금 개정 움직임

개정후 변화 [전망]

- 국민연금 수급자 총 300만중 1% 미만인 2만명이 수혜자
- 연금재정 추가 부담
2011년 775억원 (2012년 915억원)

평가

[개정안 수정 요]

- 연령기준의 소득기준 변경은 합리적
- 소득계층별 10%,20%,30% 일괄 적용 비합리적
- 노후소득불평등 확대시키고 연금재정 악화 기여(급여제도 비효율적 운영 사례)

재직자노령연금 개정(안)

-수급자 부담 변화-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275만원 미만	변동없음				
275만원~375만원 미만		부담	감소		
375만원~475만원 미만					
475만원 이상				부담	증가



재직자노령연금 개정(재정중립 중시안)

-수급자 부담 변화-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275만원 미만	변동없음				
275만원~375만원 미만		부담	감소		
375만원~475만원 미만					
475만원 이상				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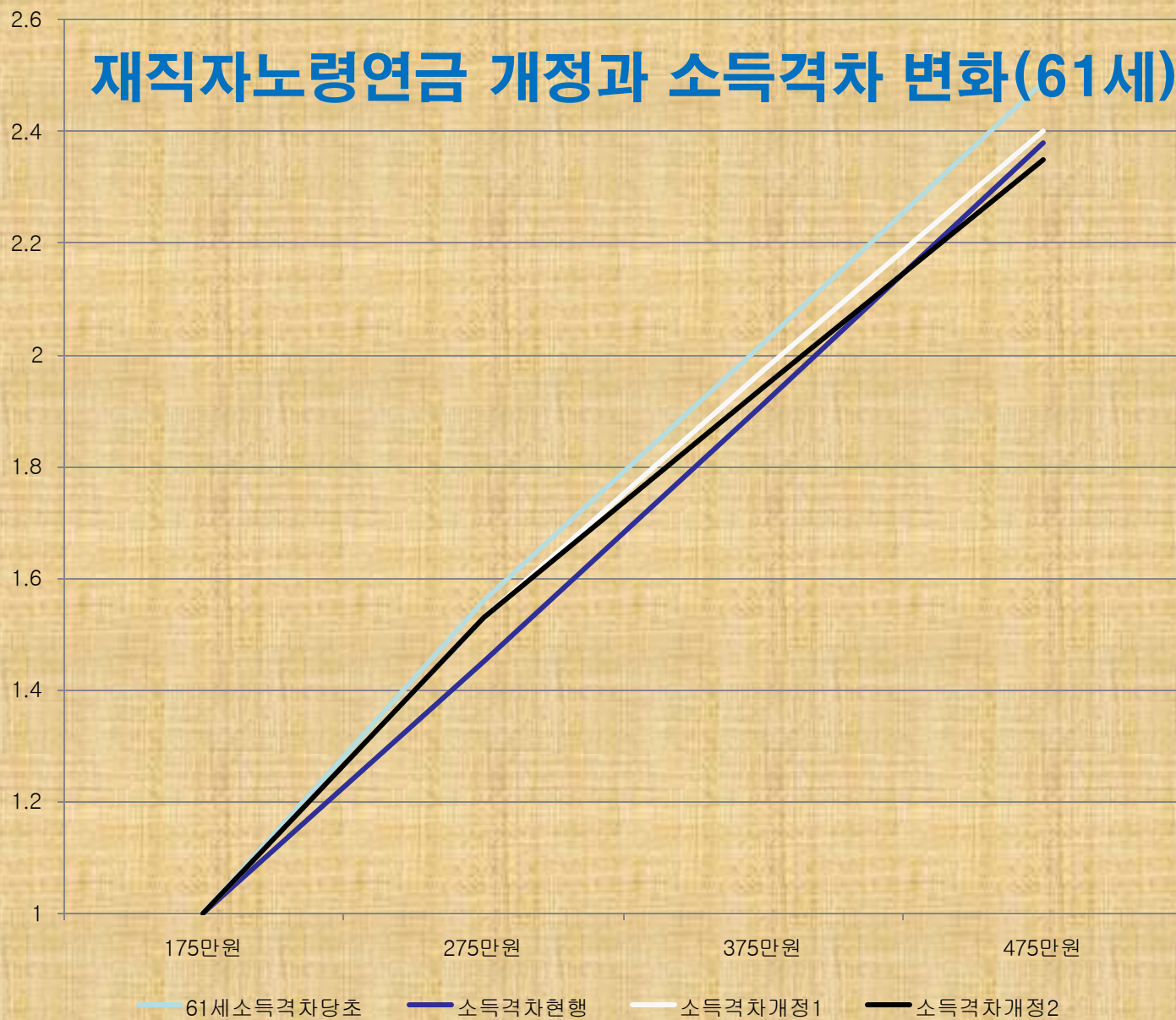
재직자노령연금 개정시 재정부담변화

- 소득계층별감액을 10%,20%, 30%(괄호안 값 10%,30%,50%
공무원연금 감액을 상한 50%(초과한계 감액은 30%~70%)
- 각 연령별 소득계층별 1인 가정, 소득은 175만원, 275만원, 375만원, 475만원인 수급자 (단위 :만원)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계
275만원 미만	변동없음					
275만원~375만원 미만	24(24)	18(18)	12(12)	6(6)	0(0)	60(60)
375만원~475만원 미만	18(12)	12(6)	6(0)	0(-6)	-6(-12)	30(0)
475만원 이상	12(0)	6(-6)	0(-12)	-6(-18)	-12(-24)	0(-60)
계	54(36)	36(18)	18(0)	0(-18)	-18(-36)	90(0)



재직자노령연금 개정과 소득격차 변화(61세)





재직자노령연금 시산 관련

-몇 가지 가정-

- 분석대상 : 20년 가입후 수급자
- 감액 적용제외자 : 소득 175만원 연금액 40만원
- 재직자노령연금 감액적용자
3단계 소득 계층(275만원, 375만원, 475 만원 기
준)소속자 연금액 모두 60만원
(재직자노령연금 적용시 소득 275만원인 자는 60세
이전 취업시 기준소득월액에서 최고등급 적용)

주요국의 수급 중 취로시 노령연금 감액제도

	만액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 조기수급 (조기수급개시연령)	만액연금 지급개시 연령 후 수급
미국	급여수준이 일정수준이상이면 급여액에 따라 감액 (62세)	감액 연금 없음, 단 1999년까지는 만액연금지급개시연령에서 69세 사이의 수급자 취로시 연금감액제도 있었음. 2000년에 폐지
영국	조기수급제도 없음	재직시 연금 감액 제도 없음
독일	급여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급여액에 따라 감액 (60~63세) 여성과 장기실업자,파트취업자 등은 60세 35년 이상 재직자는 63세	재직시 연금 감액 제도 없음
프랑스	유자격자 연금감액 없음 56세(단 가입기간 42년 이상자, 2004년 도입) 55세(가입기간 30년이상 장애자)	(급여+연금액)이 은퇴 직전 급여를 넘을 때 감액 저소득층의 경우, (급여액+연금액)이 최저임금(SMIC)의 1.6배까지 감액없음
일본	급여수준과 연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이들 금액에 따라 연금감액 (60세)	급여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초과급여와 연금액 합계액의 1/2 감액 (노령기초연금은 감액 없음)
우리나라	감액제도 없음 (55세)	급여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10%~50% 연금 감액 부양가족연금 지급않음

미수급, 저수급 자 문제 : 사각지대

- 납부예외자 : 514만명 (2010.5기준)
- 체납자 : 지역가입자 21.5%, 사업장 18%
(2010.4기준)
- 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의 59%가 미수급, 저수급
가능성

대책 1) 공적부조와의 효과적 연계방안 모색
2) 적극적 홍보로 자발적 참여 유도
3) 악의적 미가입, 체납자의 지속적 적발과 계도
* 개인차원의 노후소득 마련책 지원 대폭 강화

가입자간 형평성

2010. 7 기준

신고소득 현황

- 전체 평균 : 181.7만원
- 사업장가입자 : 206.8만원
- 지역가입자 : 109.0만원
- 시간이 경과하면서 격차 확대 중

대 책

- 신고소득 차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급여측면에서 우대받는 것은 사실
- 땀족한 대책은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작업 강화

급여수준의 적정성

병급조정 문제

-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조정 : 한사람에게
동시에 2개이상 수급권 발생시, 선택한
하나만 지급

- 타법령에 의한 급여 조정 : 동일사유로
타법령에 의한 수급권이 이중으로 발생
한 경우 1/2지급 또는 지급정지

지급사례

- 외국 : 독일, 캐나다
- 국내 : 공무원연금 등

대 책

- 급여수준 상향과 수급권 강화 차원에서 사안
별로 병급을 상향 조정 등 긍정적 검토
- 다만 재정안정화 측면 등 종합 검토하여 대응

기금 지배구조 개편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논의 :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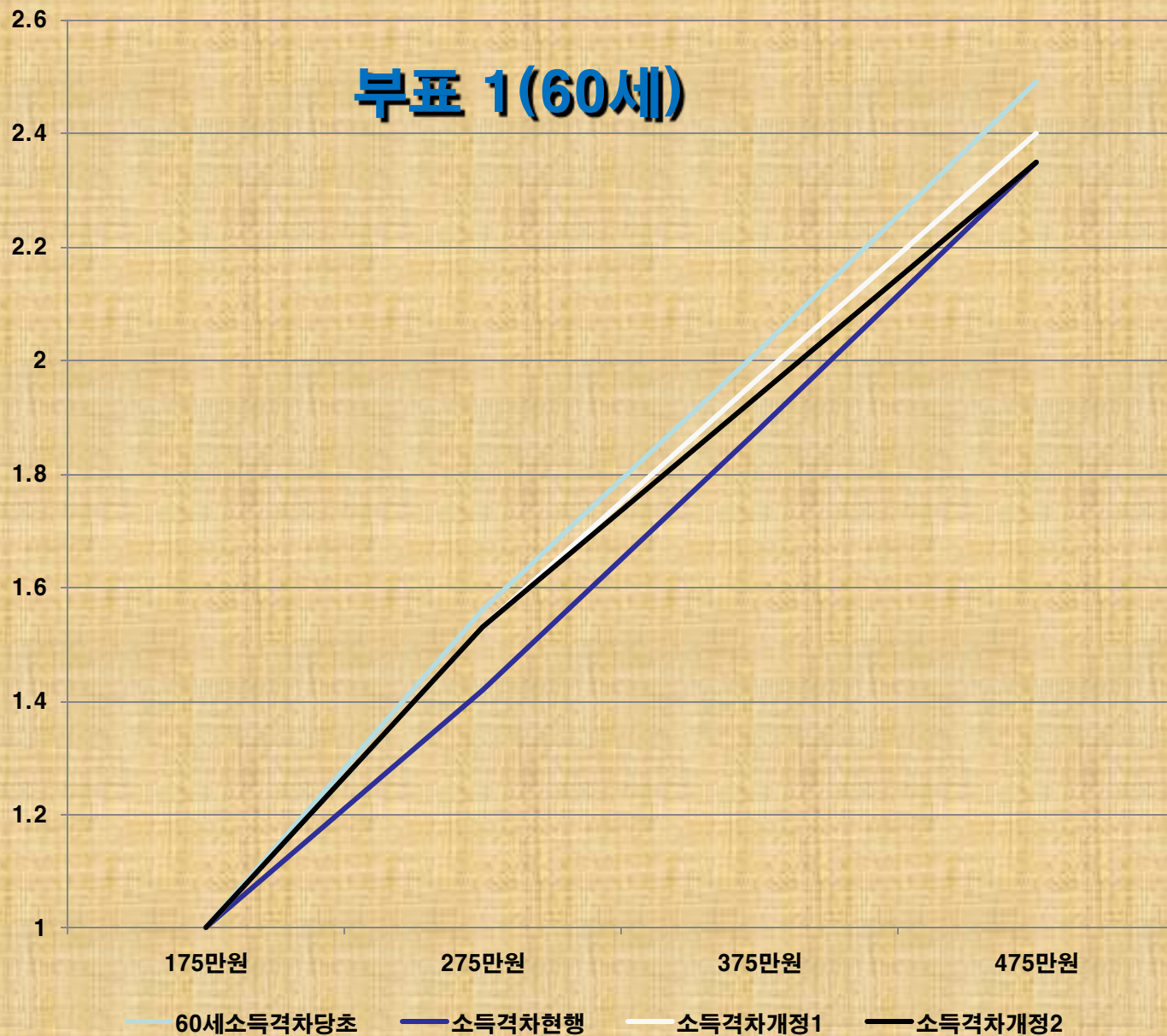
- 2006년 이후 장기 논의 중, 개정법안(2008년)의 국회심의 지지부진
-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주도권 싸움
- 이는 주무부처,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개정법, 기금운용공사)의 상호 관계, 독립성(인사권 등), 자율성, 책임성 분야에서 이견으로 나타남
- **기약없이 미루기보다 신 체제로의 이행 후, 필요시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일 것임**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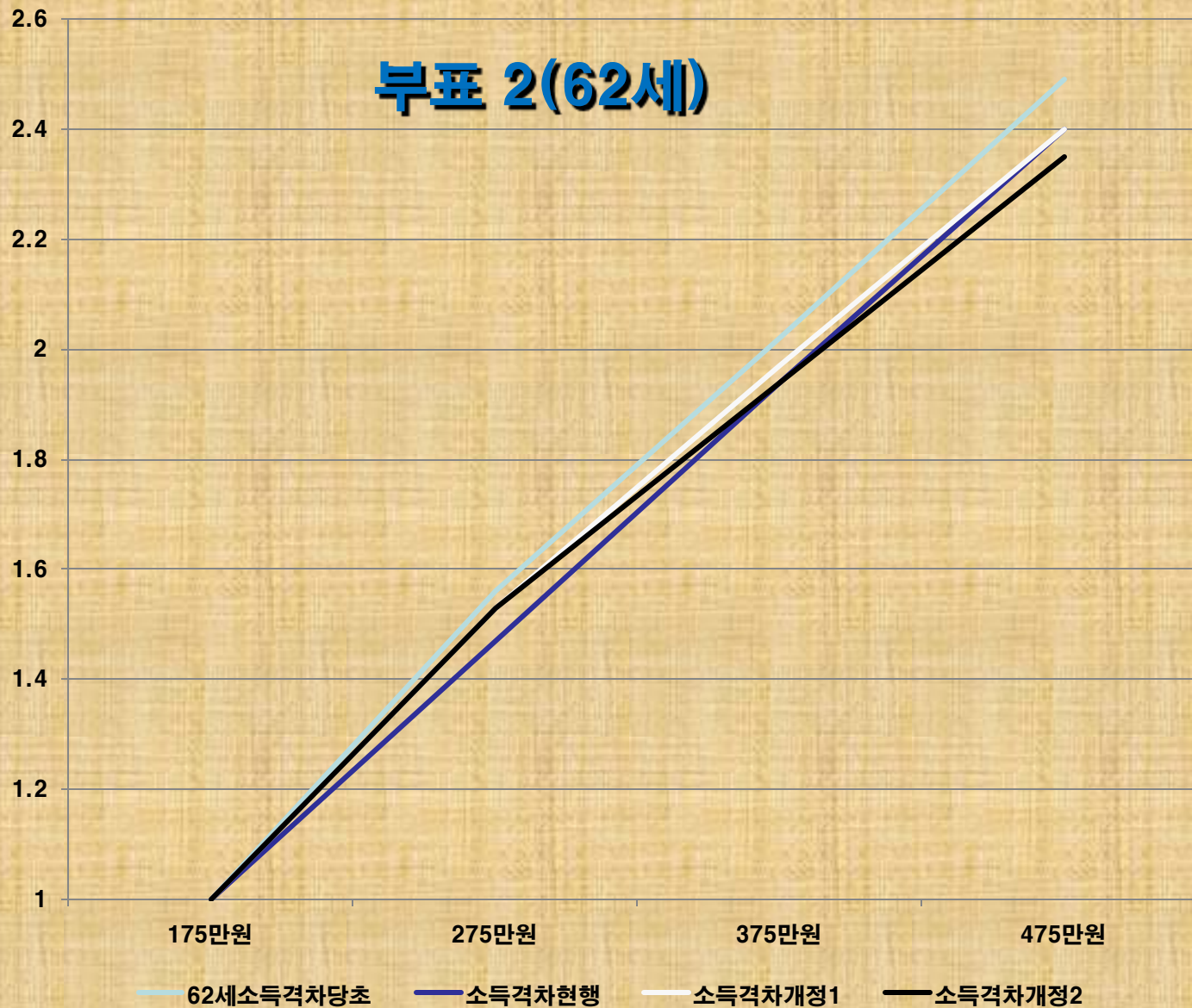


부표 1(6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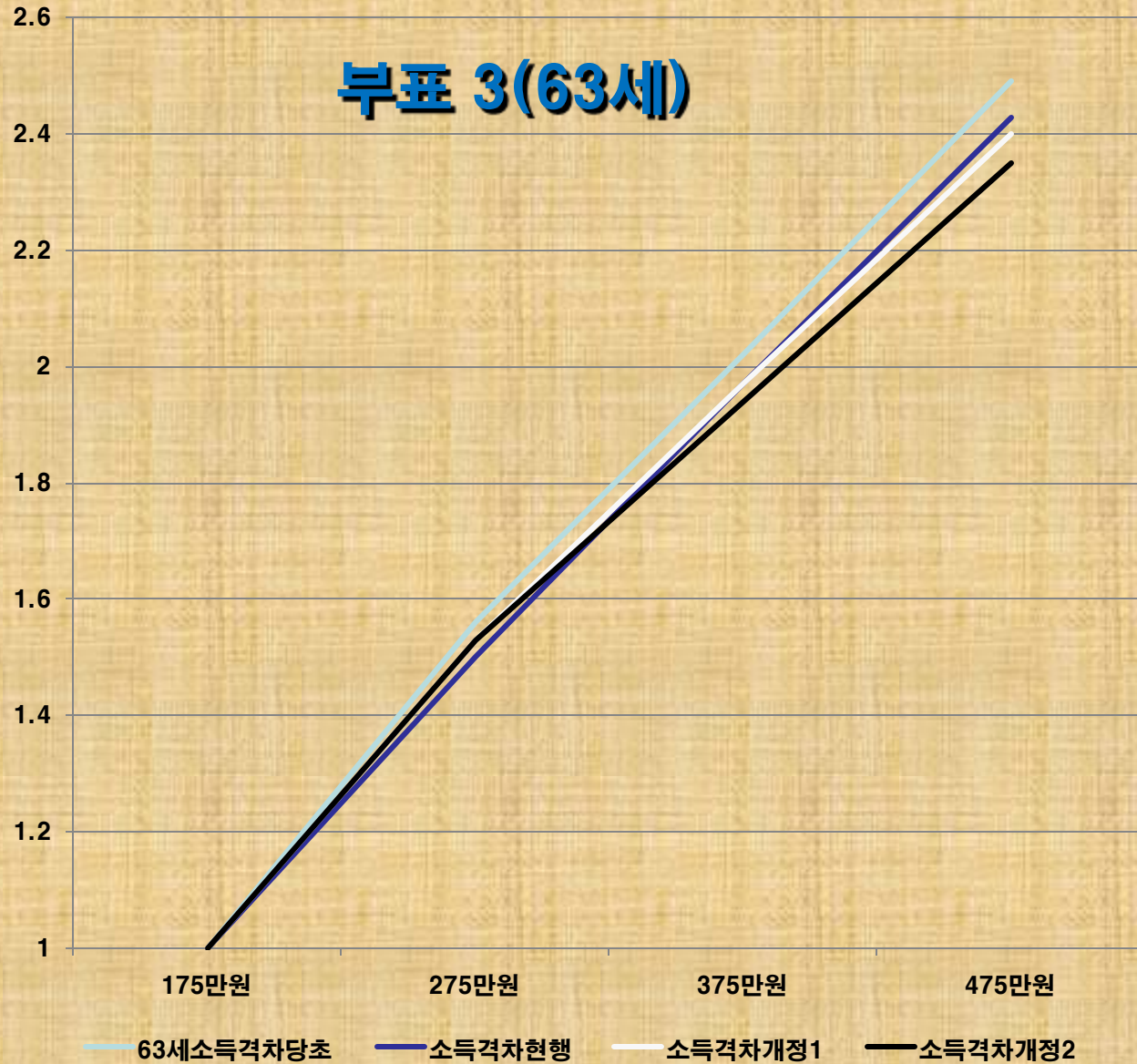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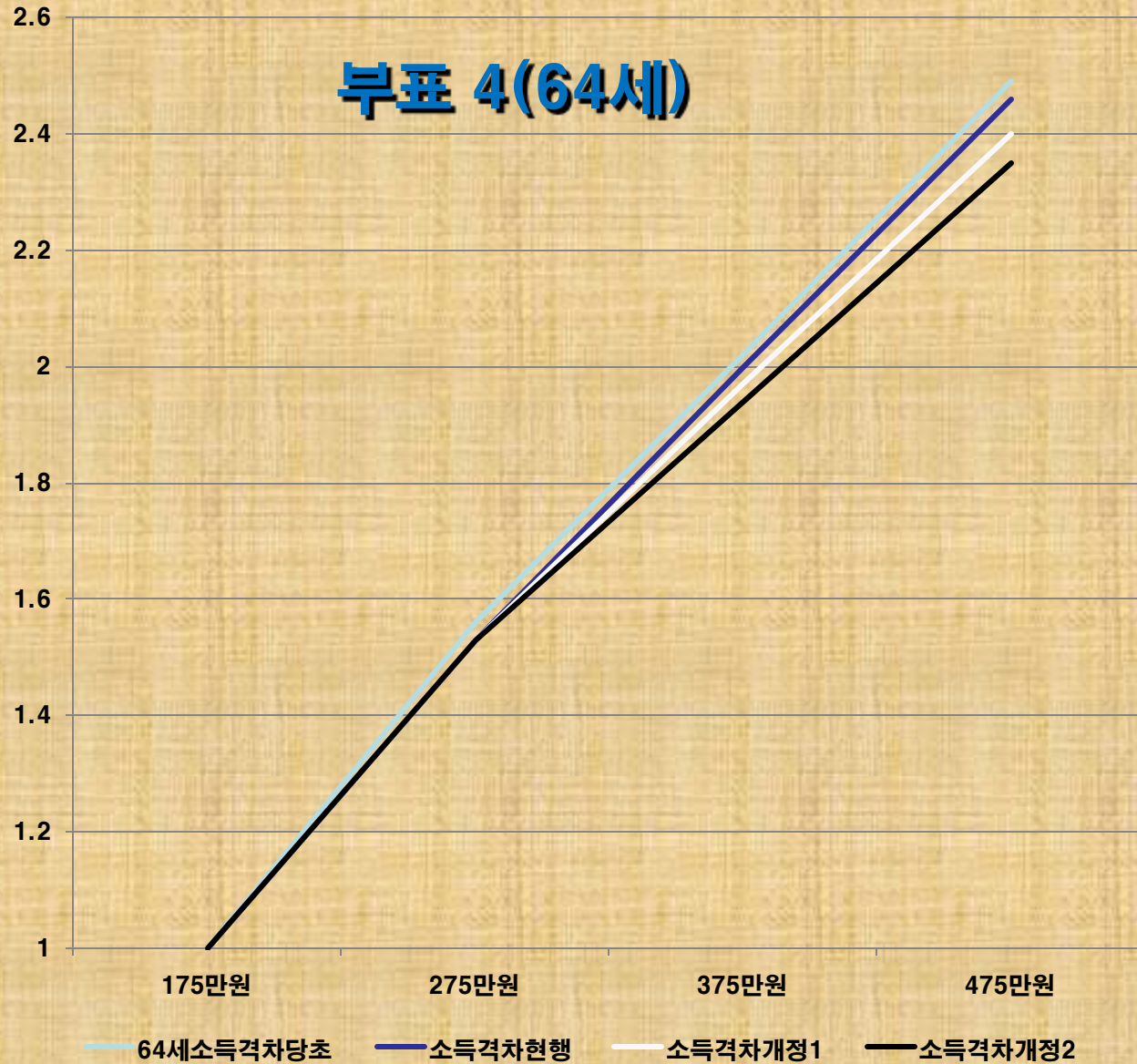
부표 2(62세)



부표 3(63세)



부표 4(64세)



저출산고령화와 건강보험

2010년 10월 5일

최 병 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고령화는 오래살고 싶은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축복,
- 그러나 엄청난 비용부담을 지불해야,
-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나?
부담에 상응하는 가치(Value for Money)

고령화의 극복

수명연장 (life years)

건강수명 연장 (Quality-adjusted Life Years)

- * 노인도 수술이 가능 (non-invasive)
- * 혁신적 진단기술, 꿈의 의약품
- * 로봇수술, 장기이식, 인공장기
- * 줄기세포, 유전자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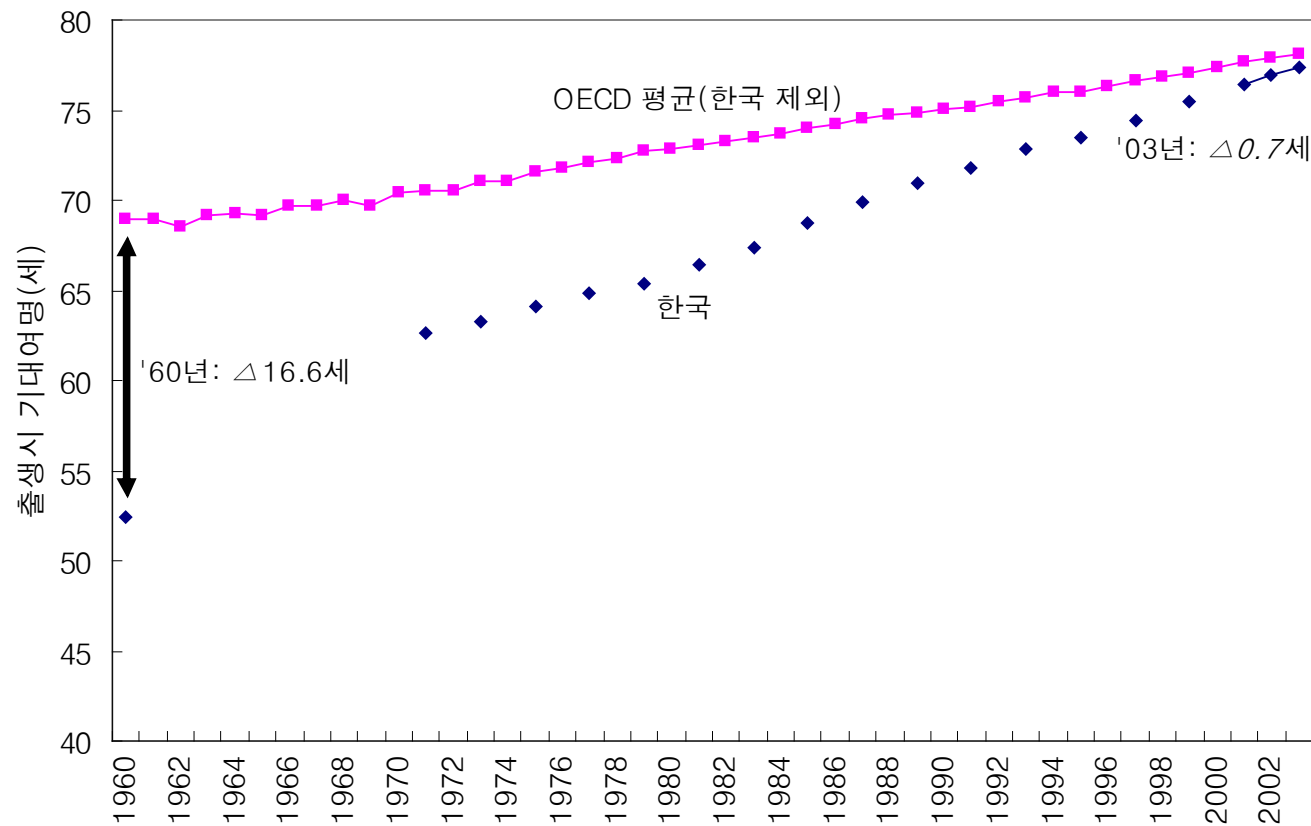
선진국의 몇가지 지표들

조기사망률 : 1970년 이래 절반이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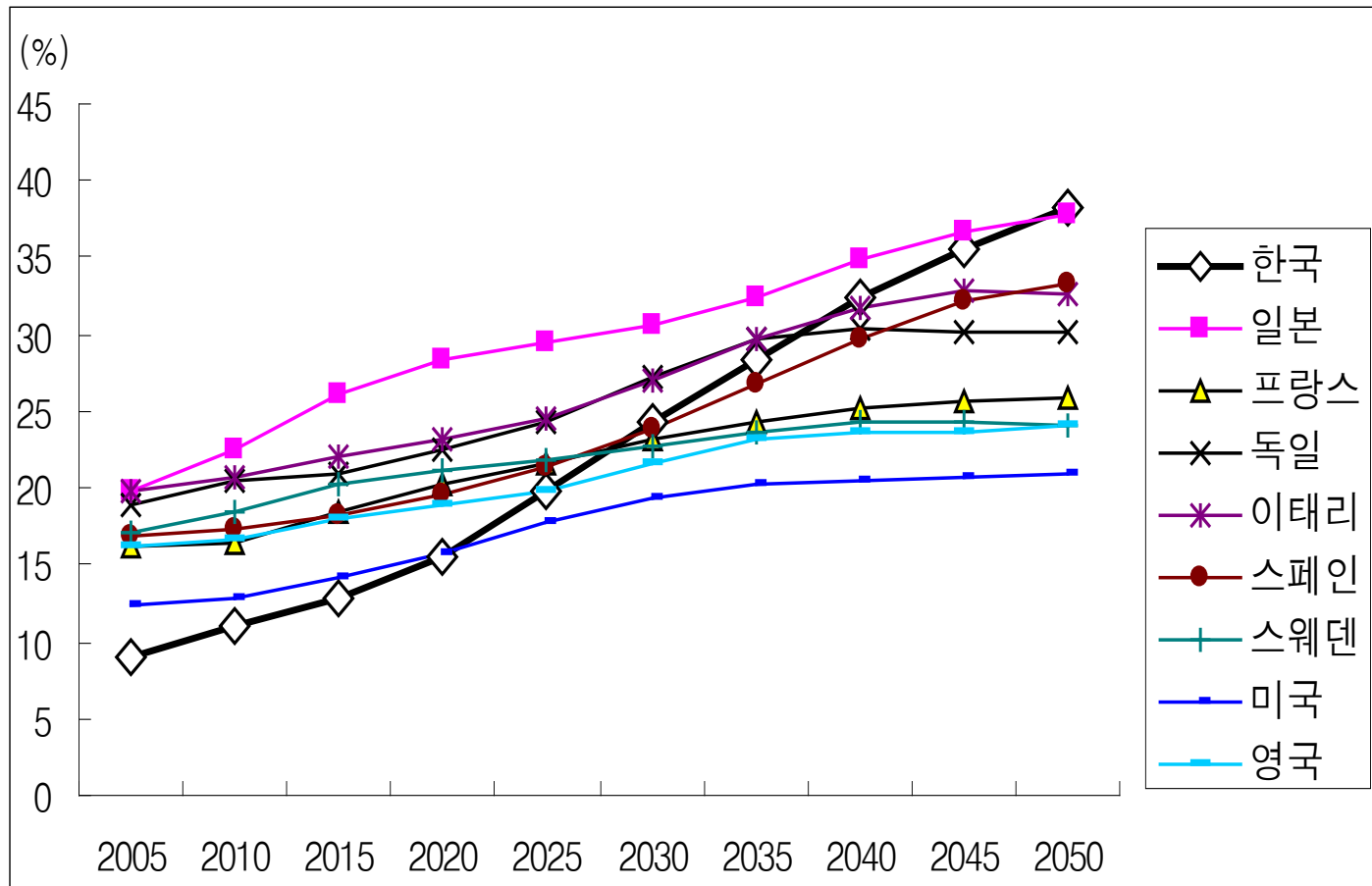
평균수명 : 1960년 이후 10년 연장,
(2007년 79세)

영아사망률 : 1960년에 비해 5배 감소

우리나라: 수명이 1960년 53세에서 2010년 80세



OECD 국가들의 고령화 전망(65+ 인구 비율)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한국은 '0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우리나라 노인(65+) 인구는 20년내에 2배,
40년내에 3배 가까이 증가

- 2010년 535만
- 2020년 770만
- 2030년 1,180만
- 2050년 1600만 (총인구 4200만의 38%)

건강수준의 향상은 보건의료가 결정요인?

대부분 연구에서 주요인은,
소득(경제성장),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의 건강기여는?

- 1990년 이래 수명연장의 40%는 보건의료가 기여

보건의료의 경제적 가치

- 성장 (제약, 기기, 재료, 병원)
- 고용
- Stabilizer

고령화에 따르는 의료비 증가

의료비용 ... health care

수발비용 ... long-term care

* 그리고, 누가 부담할 것인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의료비증가는 고령화 탓인가?

- 고령화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Red Herring) (Zweifel et al, Health Economics, 1999)
- *Sisyphus Syndrom*
고령화 - 의료비증가 - 고령화
- 대부분 연구에서 의료비 결정요인은,
Income (구매력)
Health care Technology
Cost of Dying

그러나...

Long-term care 비용증가는
고령화가 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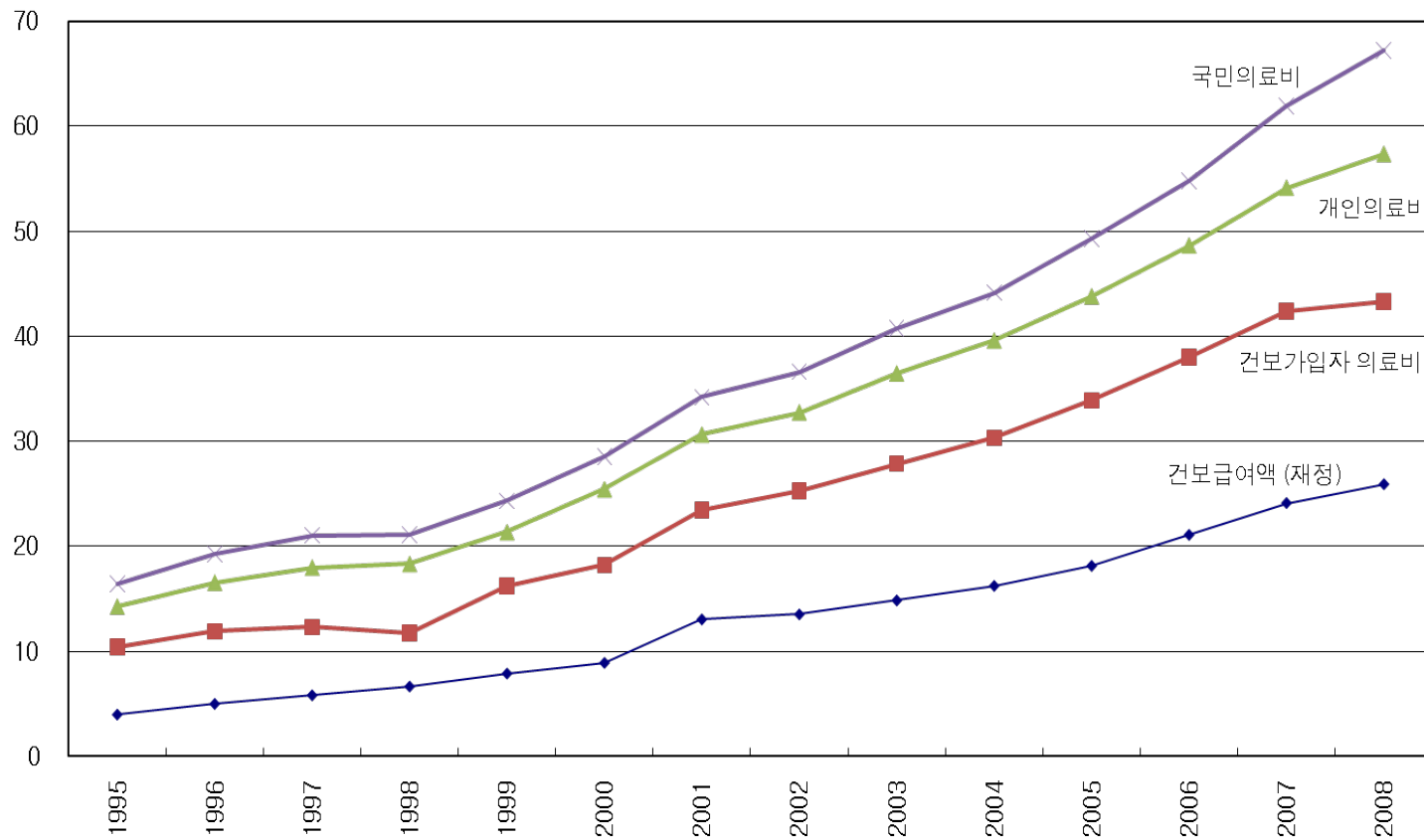
- * Long-term care 는
Health Care 와 Social Care 로 구성

- *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도입)의 장래부담
- * 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급여 압력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정형선,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전략 워크숍 발표자료, 2010.8)

(단위: 조원)



국민의료비 추이

(정형선,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전략 워크숍 발표자료, 2010.8)

국민의료비의 연간증가율

1970년대
연간증가율 평균 33.6%

1980년대
연간증가율 평균 19.1%

1990년대
연간증가율 평균 13.8%

2000-2008 11.7%

GDP 대비 국민의료비

1998년 4.2%

1999년 4.5%

2000년 4.8%

2001년 5.3%

2002년 5.1%

2003년 5.4%

2004년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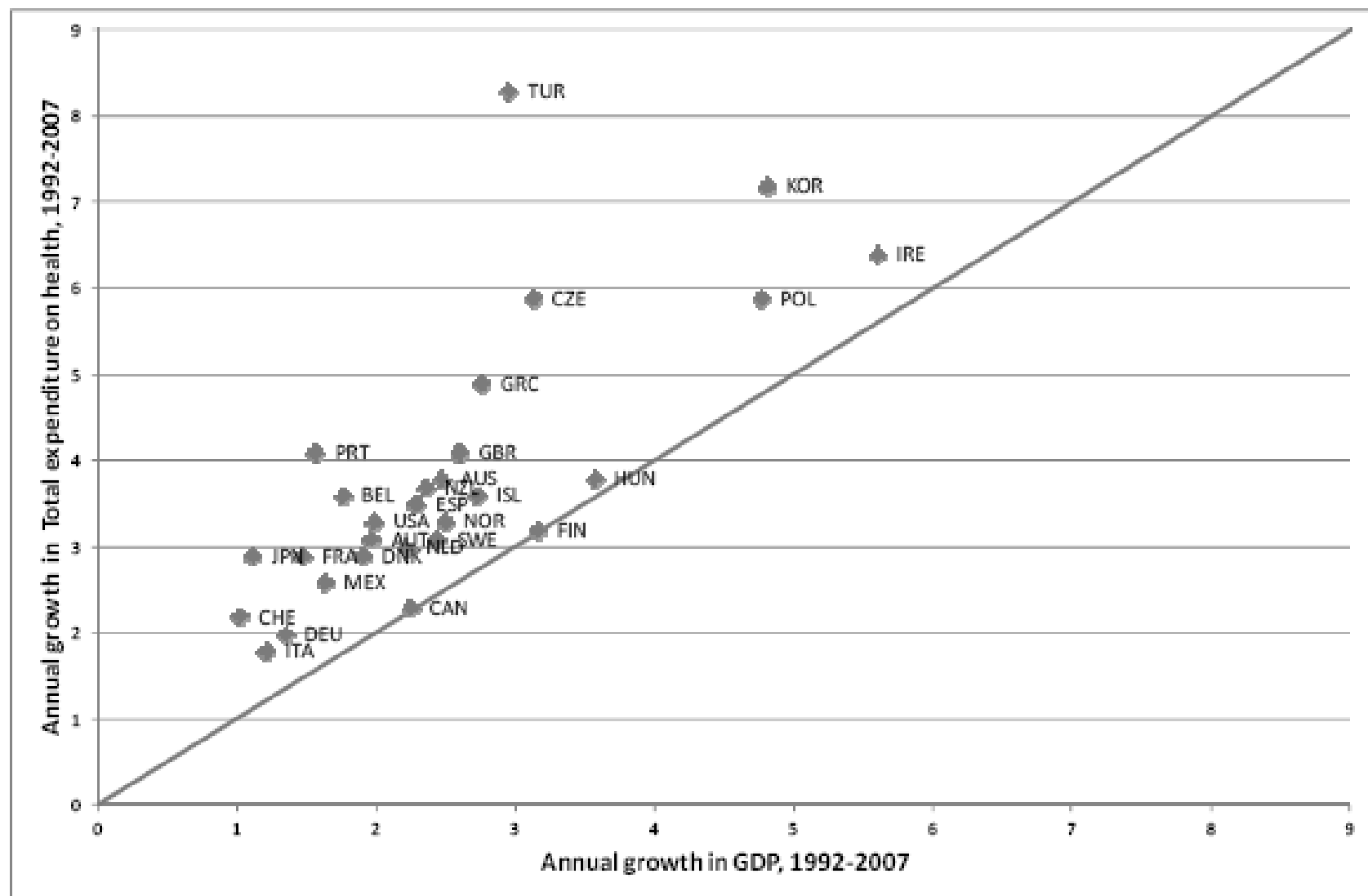
2005년 5.7%

2006년 6.1%

2007년 6.3%

2008년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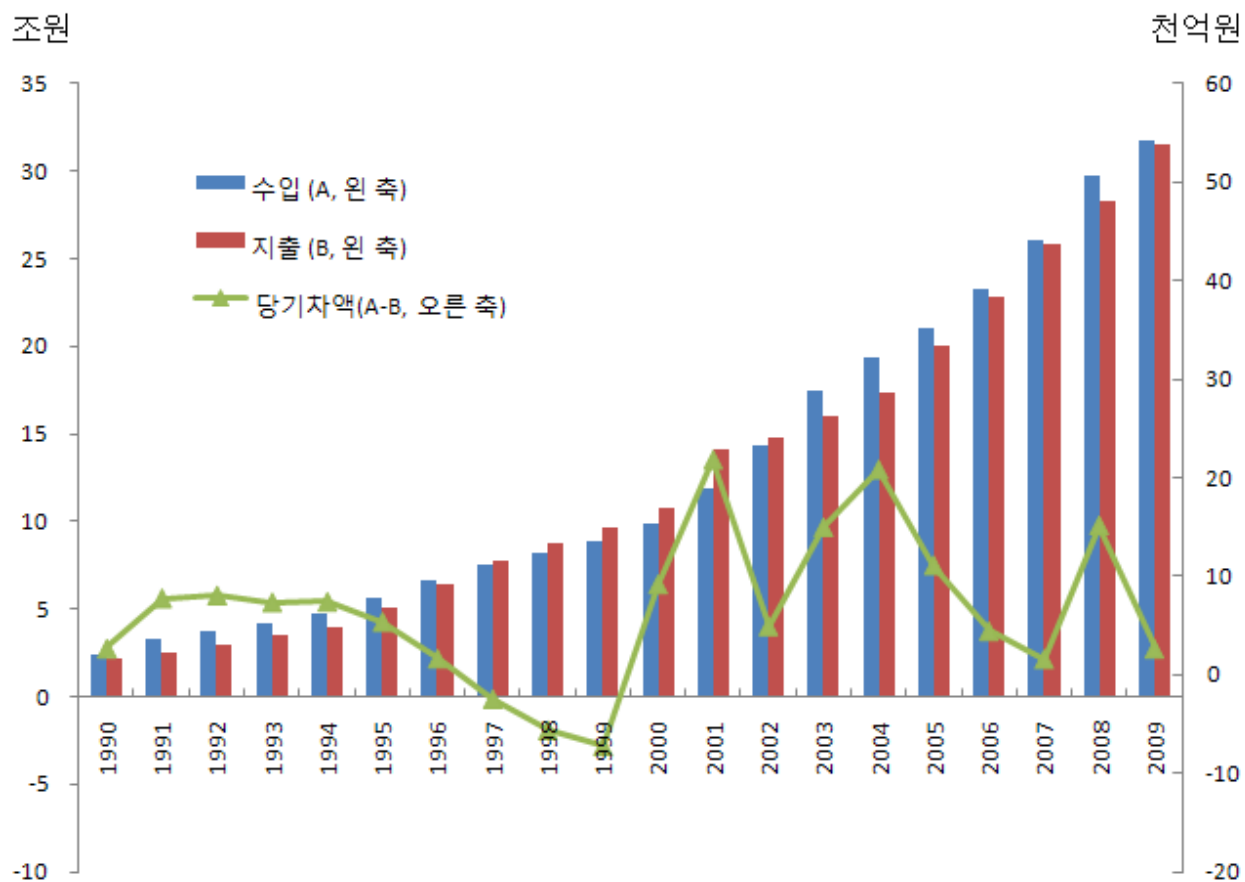
Figure 2. Annual growth in health expenditure and GDP, 1992-2007



Source OECD Health Data 2009.

건강보험재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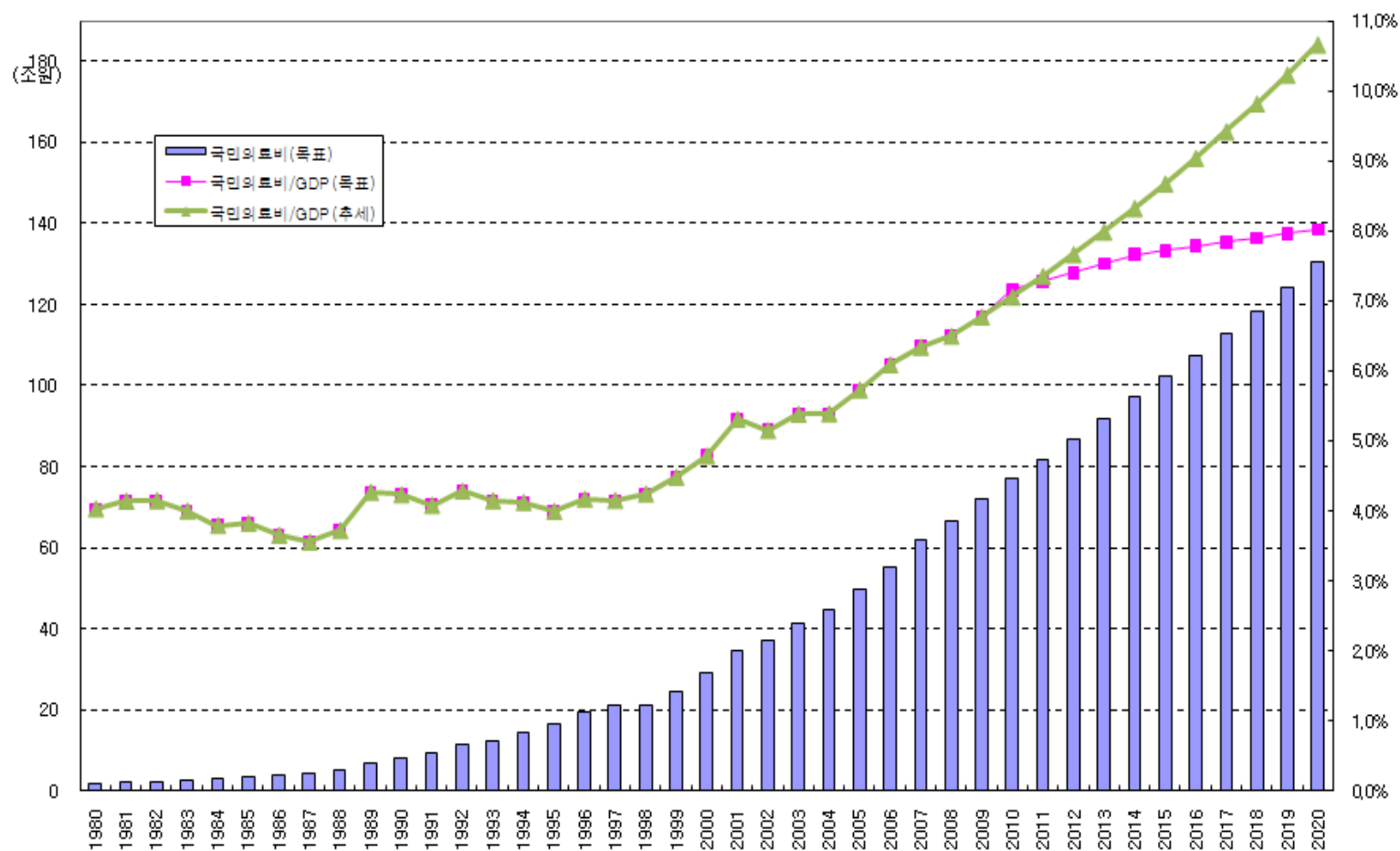
(정형선,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전략 워크숍 발표자료, 2010.8)



이대로 가면, 국민의료비는 2020년에 GDP의 10.8% (정형선,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전략 워크숍 발표자료,2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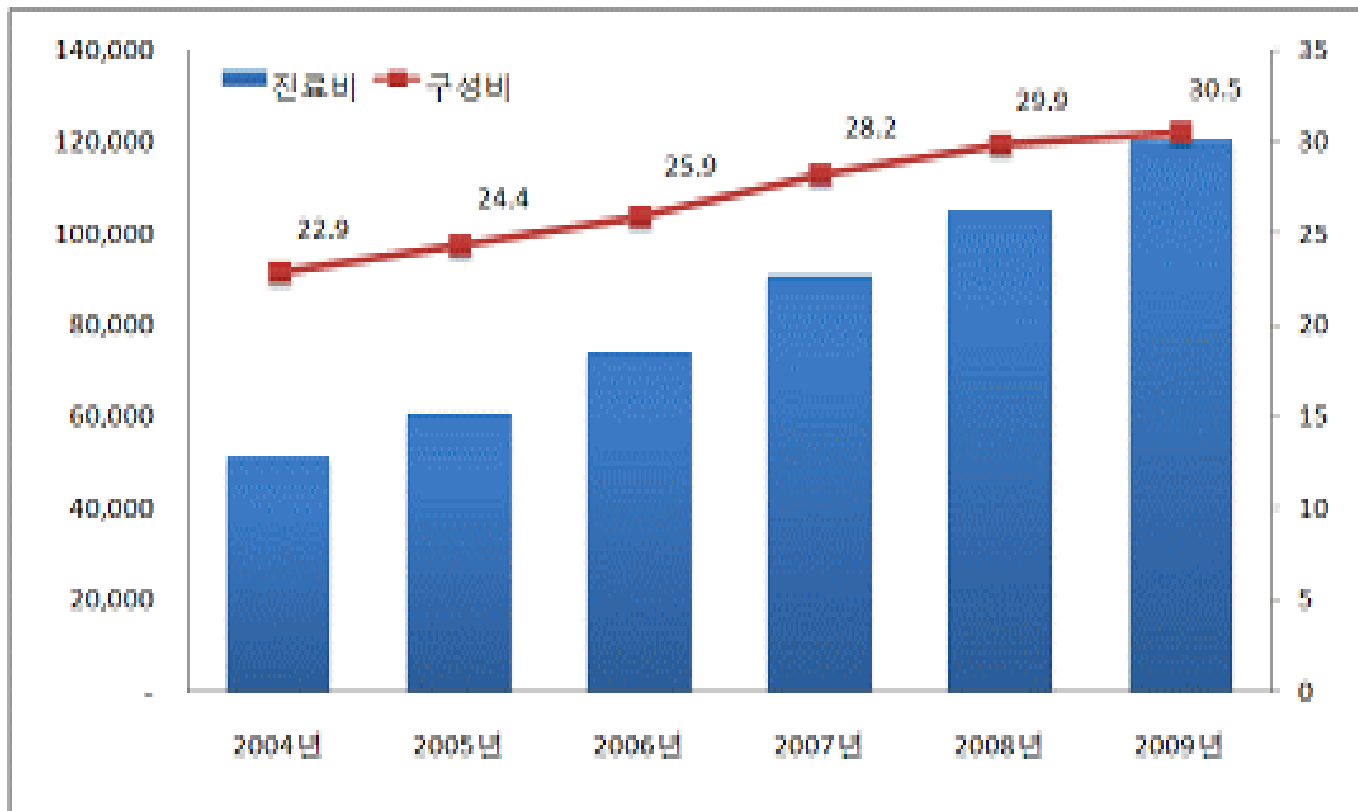
연도	국민의료비(조원)	GDP대비 국민의료비
2008년	66.7	6.5%
2009년	73.2	6.8%
2010년	80.4	7.1%
2011년	88.3	7.4%
2012년	96.9	7.7%
2013년	106.4	8.0%
2014년	116.8	8.4%
2015년	128.3	8.8%
2016년	140.8	9.1%
2017년	154.6	9.5%
2018년	169.8	10.0%
2019년	186.4	10.4%
2020년	204.6	10.8%

국민의료비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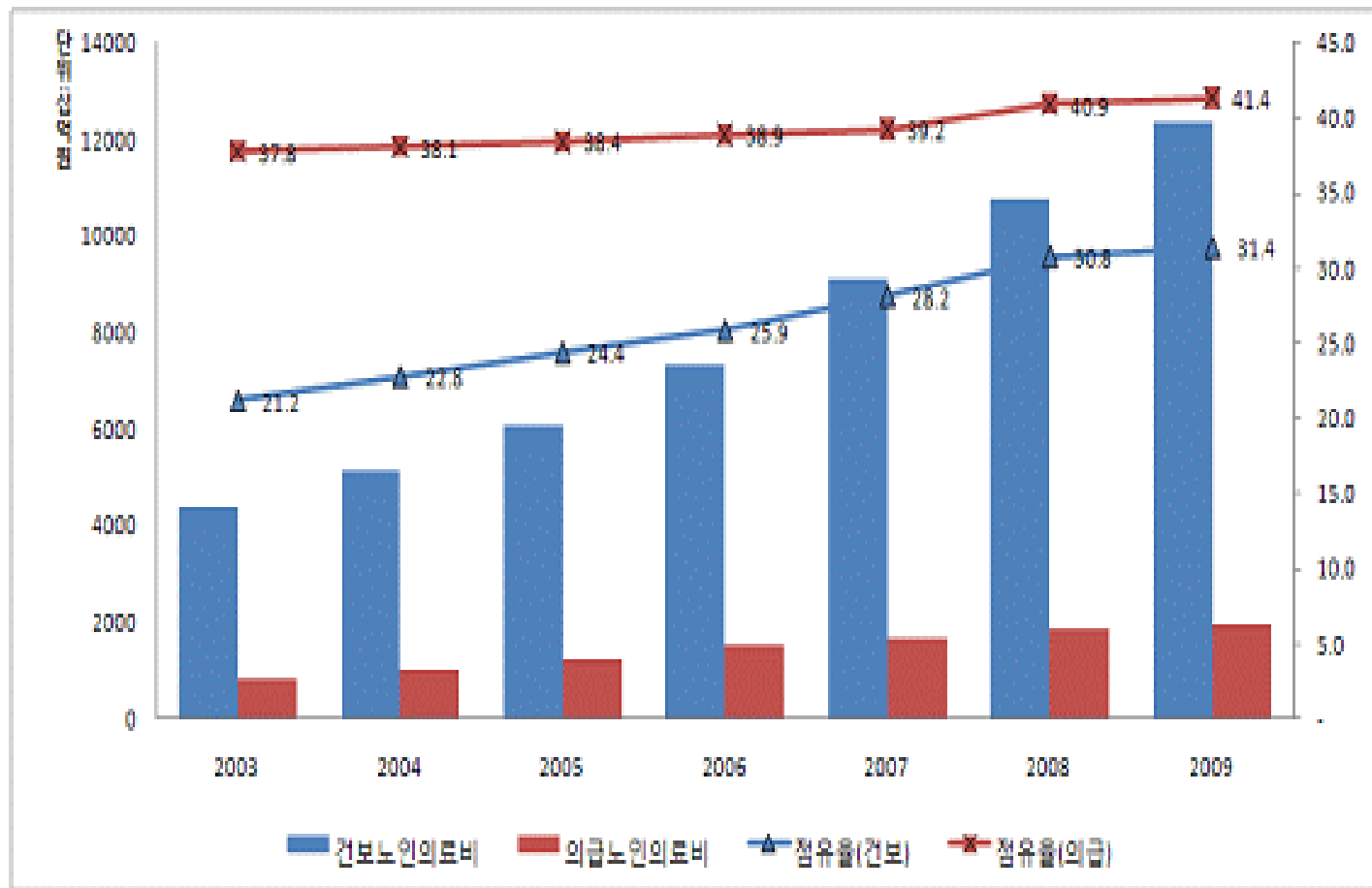
정형선, 201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전략 워크숍 발표자료_2010년8월30일

건강보험재정 중 노인의료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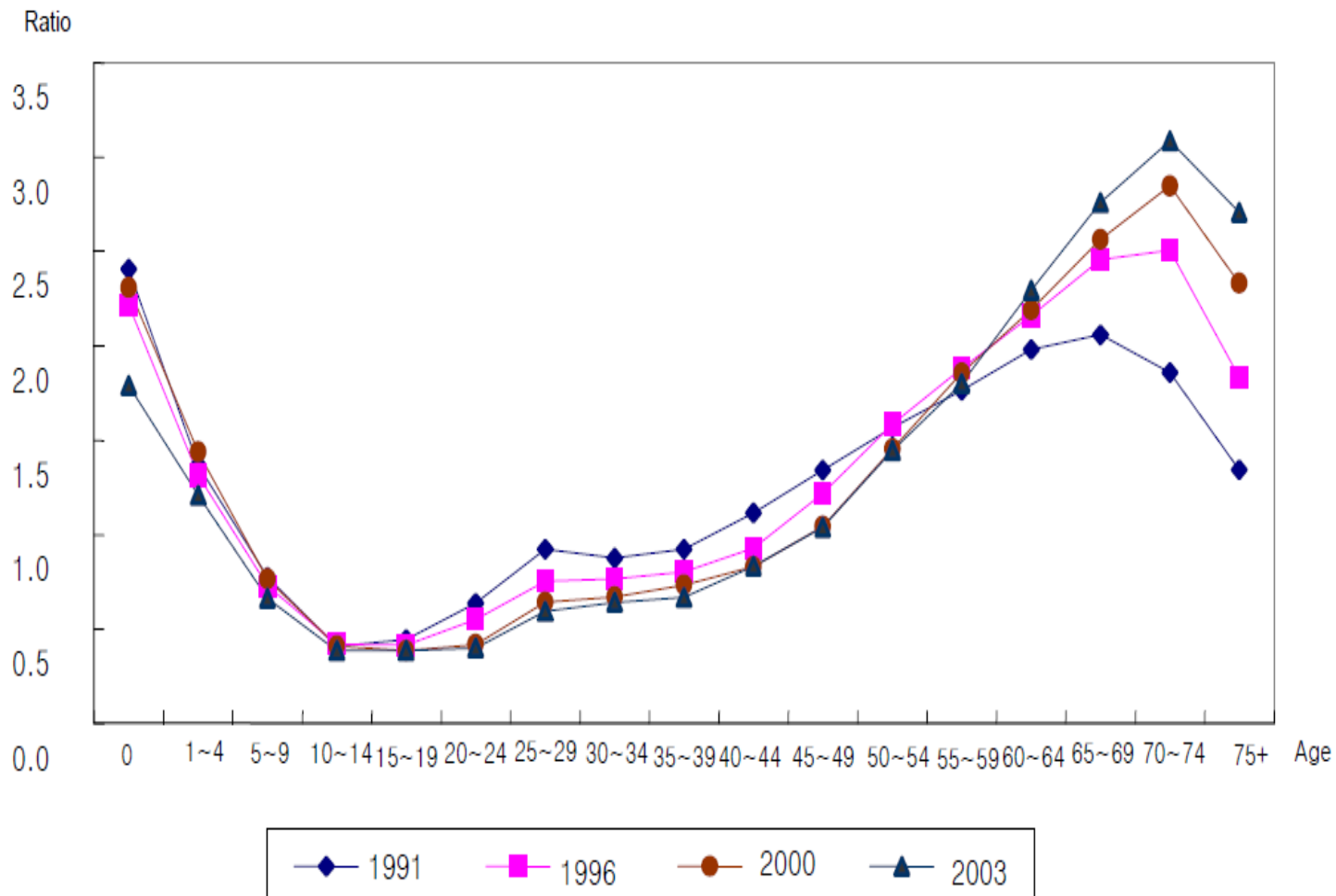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노인의료비 및 점유율



연령-의료비 profile



의료비, 지속가능한가?

- 경제적 지속가능성 (Economic sustainability)

if, 의료비투입의 Value > Cost"

- 재정적 지속가능성 (Fiscal or financial sustainability)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있더라도 세금이나 보험료의 인상이 가능한가"

정책방향

“Global 건강강국”

- 의료접근성
- 의료의 질
- 지속가능성 Value for Money
- 선도적인 보건시스템 (경쟁력)
- 산업적 가치 (미래성장동력, 고용)

고령사회의 모습

고령사회 = 미래사회?

- New medicine, New Tech
-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 Technology)
... U-health
- Globalization

규제 정책 vs. 인센티브 정책

- 규제: Top-down 방식으로 지출 통제
- 인센티브: 효율성 향상
환자-공급자-정부(보험자)의 인센티브 활용

전통적으로 규제정책 사용

- 예산제(caps to budget)
- 투입규제 (Labor & Capital)
의대정원, 병상, 신기술장비, 공공병원임금 등
- 진료량-가격 연계 규제(volume-price adjustment)
- 약제비통제 : price and volume mix 통제, 본인 부담 인상
- 비용전가 : 급여범위 축소, 본인부담 인상

규제의 한계

- 일정기간 동안 효과적,
- 장기적으로 의료비 상승압력,
- 장기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 보임
 - 비용통제정책이 의료접근(access to care), 형평(equity), 질(quality)을 희생
 - 바람직한 신기술 접근 연기
 - 환자만족도 떨어짐(less responsive care)

인센티브 정책

- 개인, 환자의 인센티브 활용

Self-care

Care coordination

- 공급자, 보험자의 인센티브 활용

P4P (pay for performances)

EBM (evidence-based medicine)

HTAs (health tech. assessments)

Value-based Pharmaceuticals reimbursement

ICTs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ies)

Care coordination

Care coordination 이란?

- 공급자간 진료의뢰를 향상시키고,
- 환자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잘 navigate 하도록 도와주고
- 불필요하고 값비싼 입원과 전문의 진료를 예방하는 것임.

❖ Coordination of care (조직화된 진료)

환자들은 근래에 올수록 여러 공급자들을 찾아 나섬
그러나, 의료시스템의 분절화(fragmentation) :

- 환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함
- 효과적인 진료를 수행하지 못함
- 안전하지 않음

통합화된 진료(integrated care)가 필요

→ Self-care, Care planning, Multidisciplinary teamwork, Integrated care organization이 발전되어야 함

Payment for Performance

(P4P, 성과기반 지불보상)

- 역사적으로 의사들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가정에 입각
 - 그러나 상당수의 임상사례들은 질과 비용 측면에서의 의문
 - P4P의 적용: Primary care, Hospital care, Prevention
 - Evidence-based protocol 사용을 장려
 - 의료의 질의 변이를 축소
- * UK Quality Outcomes Framework(QOF) :
- GP들의 질을 측정하고, 양질에 대해 가산보상을 함으로써,
QOF 도입 이후 상위1등급과 하위5등급 GP들간 성과의 격차를 축소

Value 에 기반한 의약품가격과 지불보상

- 80% 국가가 특정국가들의 약가를 자국의 약가산정기준으로 삼음
 - 문제점
 - → 신약은 high-price market에 진입, 이들이 곧 특정국가 됨
- 근래의 새로운 방안으로 신약 개발을 보험자와 회사가 함께 개발
 -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약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있음
- 많은 국가들이 제네릭 사용으로 efficiency gain을 성취하고 있음
 - 2006년 제네릭의 비중 → 1%(아일랜드)에서 60%(폴란드)

ICTs(정보교환기술)사용

→ 질 향상, 의료사고 예방, 비용 절감

- 검사중복 줄이고, 청구비용 절약
 - 미국 New England EDI
 - 건당 5달러 ► 25센트로 줄이는 효과
 - 스웨덴 전자처방전 : 하루 30분 절감
- Telemedicine : remote area 진료 가능,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 가능
- 장애요인
 - ICTs의 수혜자와 부담자 다름
 - 환자개인의 privacy 보호문제
 - 다른 IT 시스템간의 호환성 문제(inter-operability)

Prevention (예방)

- 예방과 관련한 기술진보:
예방의 질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게 대두
- 국가 암검진의 질
- 의약품에 기초한 질병예방
 - * statins (고지혈치료제)
 - * oral hypoglysemics (경구용저혈당제)

Patient-centered care (환자중심의 진료)

- 환자의 가치와 선호 (patient value and preference)를 존중
- 병동을 넘나드는 환자 : coordination과 integrated care가 필요
- 환자에 대해 정보, 의사교환 및 교육을 제공
- 신체적 안락, 정서적 지원, 비공식적인 간호 (informal caregiver)의 개입이 필요

'Patient-centered medical home'

- 일차의료(primary care)의 원칙을 지속적인 질 관리, 안전향상과 결합한 모형
- Care planning, EBM, clinical decision-support tools
- quality performance measurement
- payment 등을 통해 실현
- 미국 의료개혁에서 주요한 의료서비스 전달모형(delivery model)으로 대두

HTA(의료기술평가)와 Clinical Evaluation (임상평가) 사용

- 여러 진료방식 중 어떤 option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지 정보부족
- 이에 따라 때로 환자는 위험에 빠지게 됨
- 많은 보건예산이 비효과적이고, 불필요하고, 심지어 해로운 진료에 낭비
- 여러 진료방식들간의 비교효과성 (comparative effectiveness),
-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 편익과 폐해에 대한 근거를 제공

많은 국가들이 HTAs 조직 설립

- Danish Center for HTA
- Canadian Agency for Drugs and Technology in Health
- French Haute Autorite
- UK NICE
- US : Federal Coordinating Council for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에 11억달러를 투자
 - 지난 10년간 HTA 연구결과 :
급여범위의 결정과 practice guideline에 사용

Quality-led governance

- Quality(질지표)가 보건의료 관리시스템을 다시 디자인하는 추진원리(driving principle)로 작동

많은 선진국에서 질지표를 정책에 반영

- 네덜란드 Health Care Performance Report(2008) : OECD HCQI를 벤치마킹
- 2010년의 Danish Hospital Sector Report
- 2010년 4월, 영국의 모든 공급자들은 Quality Accounts를 생산해야 함.
즉, Public annual reports on effectiveness, safety, and patient experiences
- 캐나다 Ontario 주 : Balanced Score Card(BSC)적용
Report Cards (Leapfrog, Health Grades) 작성

미래의 건강강국을 위해 투자

- 당장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인 가치를 보아야 함
- 정책수단들이 상호연결되어 있어 분절적인 투자가 아닌 장기플랜하에 대규모 투자 필요
 - care coordination을 위해서는 good information flow 필요
 - P4P는 많은 정보를 필요
 - EHR은 coordination과 P4P를 가능하게 함
 - EBM, clinical guideline, P4P는 약가정책에 필수 조건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보험업의 역할

2010. 10. 5

진 익

보험연구원



INSURANCE

구 성

저출산 고령화 영향

불확실성 확대

보험업 대응

[능동적 역할] 금융기능 강화

향후 과제

[보장 강화] 공사 안전망 조화

불확실성 확대

저출산 고령화 영향 관련 기존 논의

미시적 차원



거시적 차원

노후소득보장

잠재성장 둔화

저출산 고령화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약 -0.3%p 하락 (OECD, 2005)

불확실성
확대

성장잠재력 제고에 주력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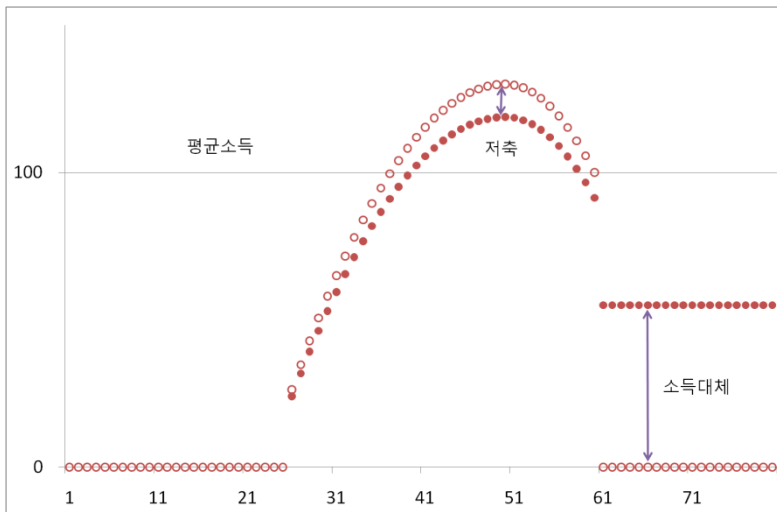
금융업의 능동적 대응 절실

불확실성 확대: 노후소득보장 (1)

❖ 공적 안전망 축소, 가계 내 이전소득 감소로 **노후소득 보장 불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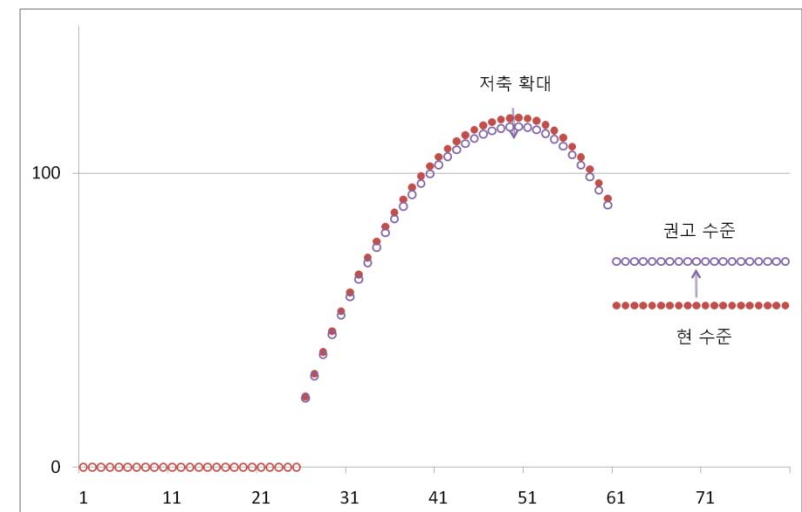
소득대체율

현 수준 55% : 노후 준비 부족
OECD 권고수준 60~70%



소비 & 저축

퇴직 전, 추가 저축으로 소비 감소
퇴직 후, 소득 감소로 소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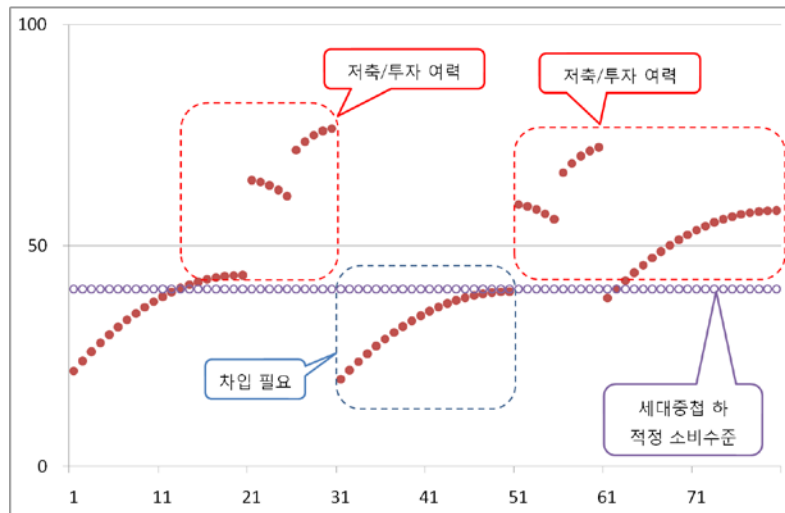


불확실성 확대: 노후소득보장 (2)

❖ 중첩세대 부양부담으로 가계부문 저축 확대 **여력 및 필요성 불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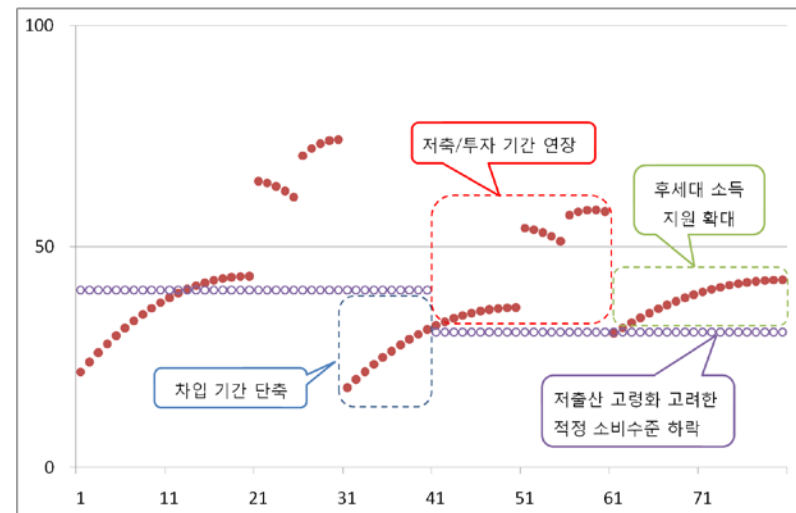
생애주기가설

소비 평탄화, 퇴직 후 소비 유지
퇴직 전, 추가 저축 여력 불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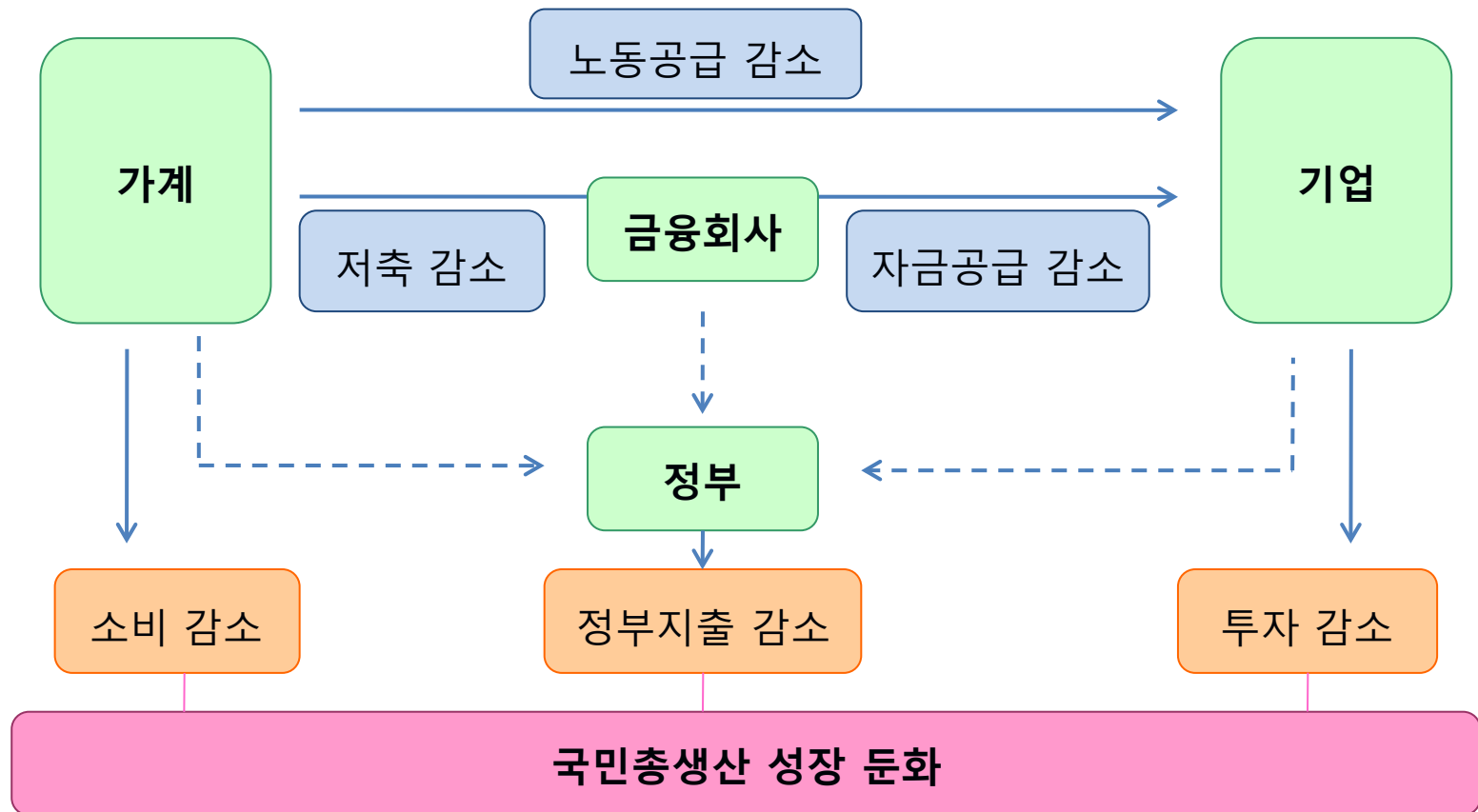
기대수명

기대수명 연장 속도 불확실
필요 저축규모 불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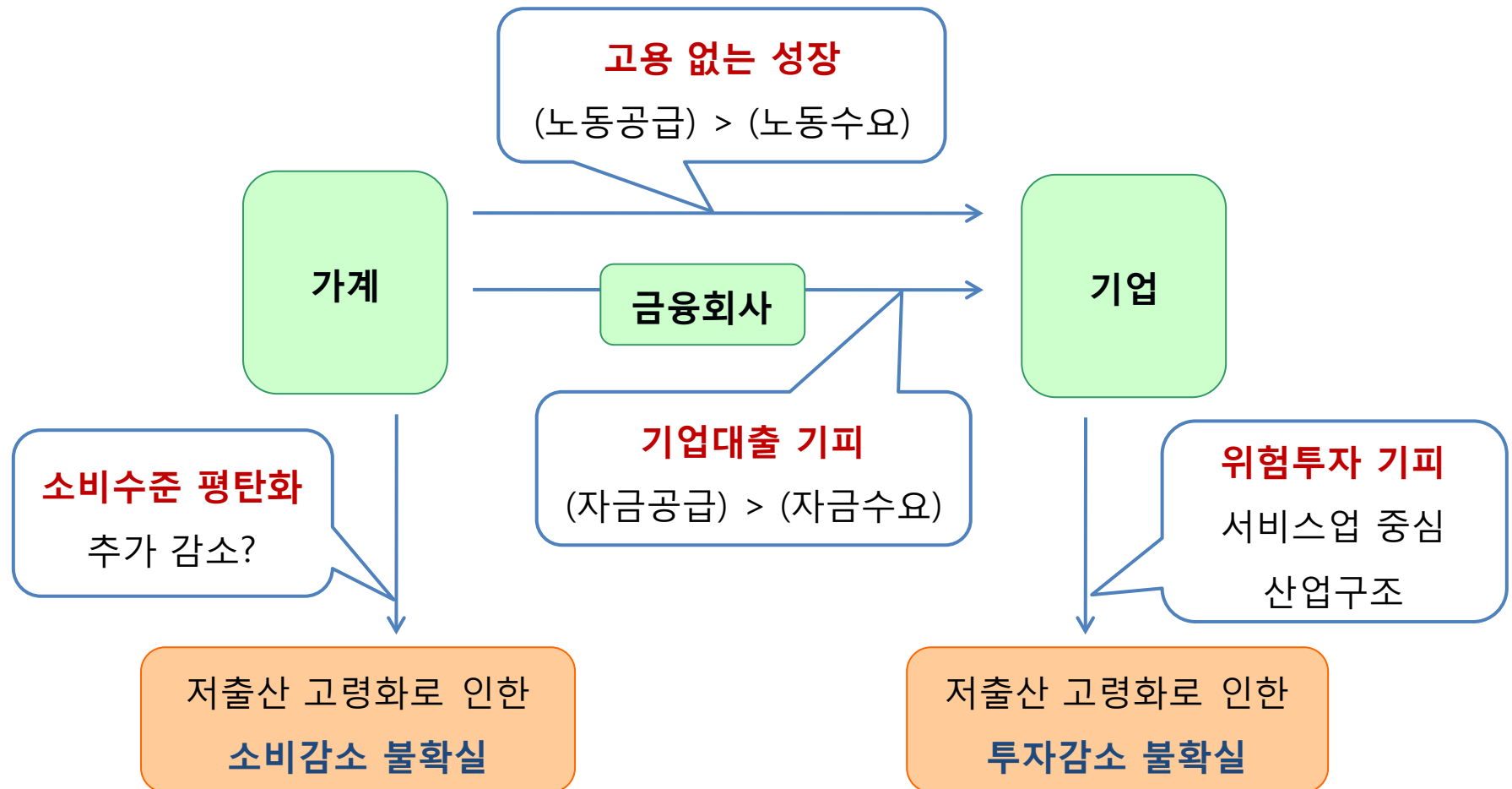
불확실성 확대: 잠재성장 (1)

❖ **경제성장 둔화 악순환** (소득 감소 ↔ 소비, 저축(투자), 정부지출 감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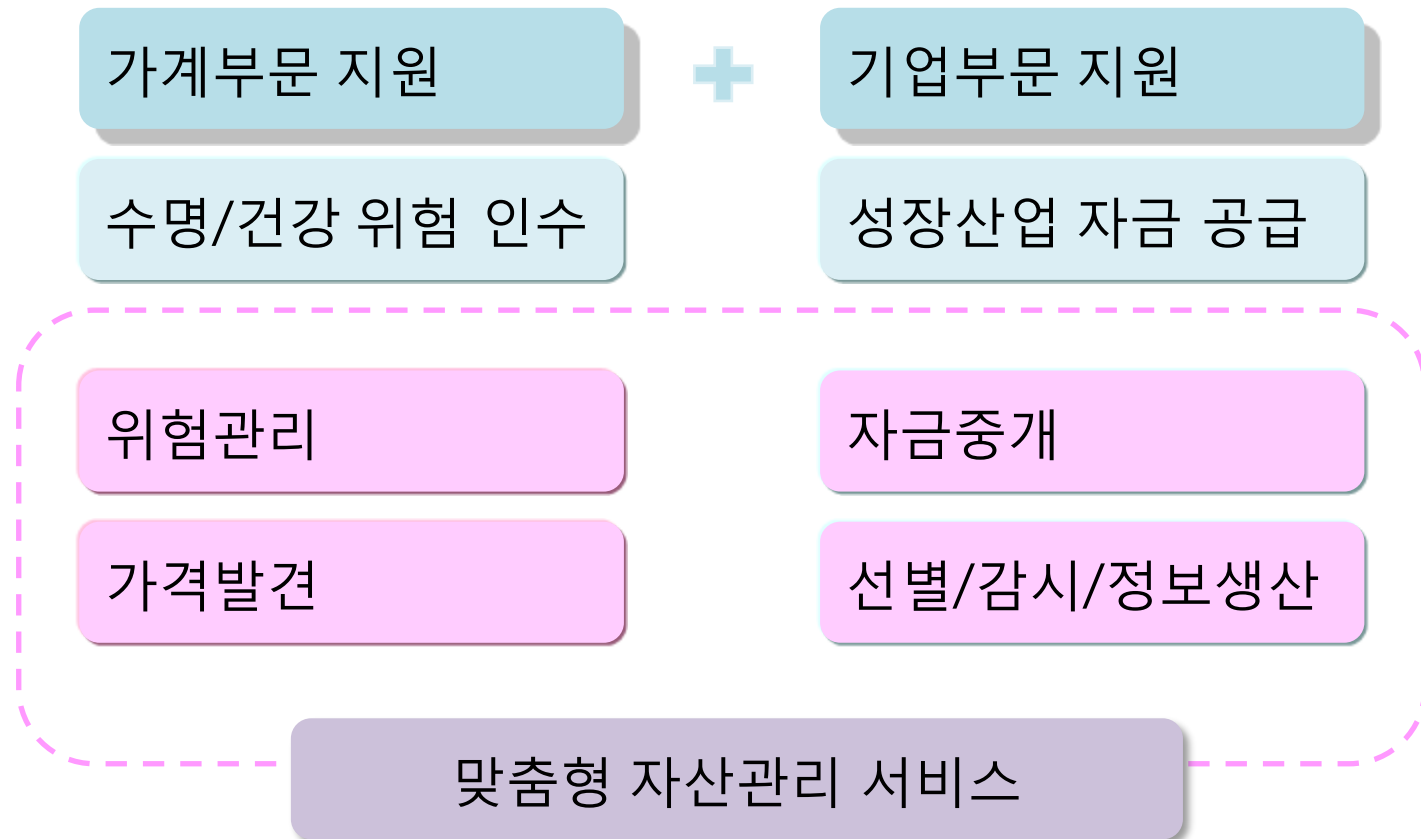
불확실성 확대: 잠재성장 (2)

❖ 소비 감소 여부, 고용/저축 감소 영향 불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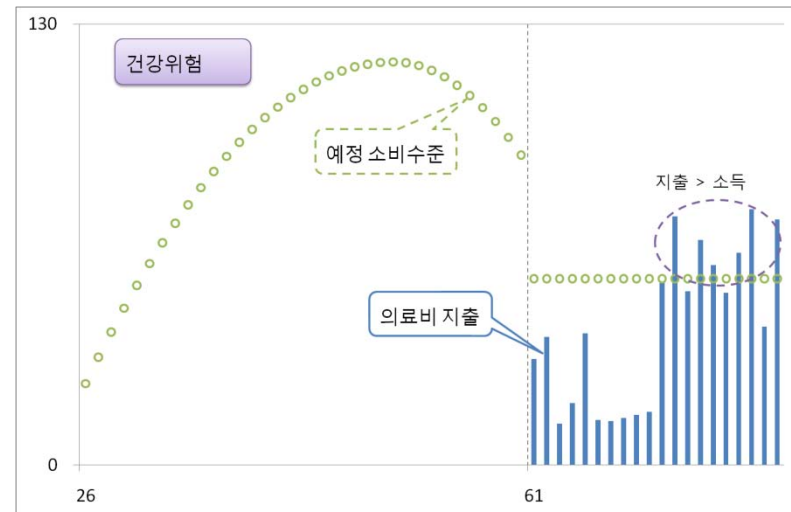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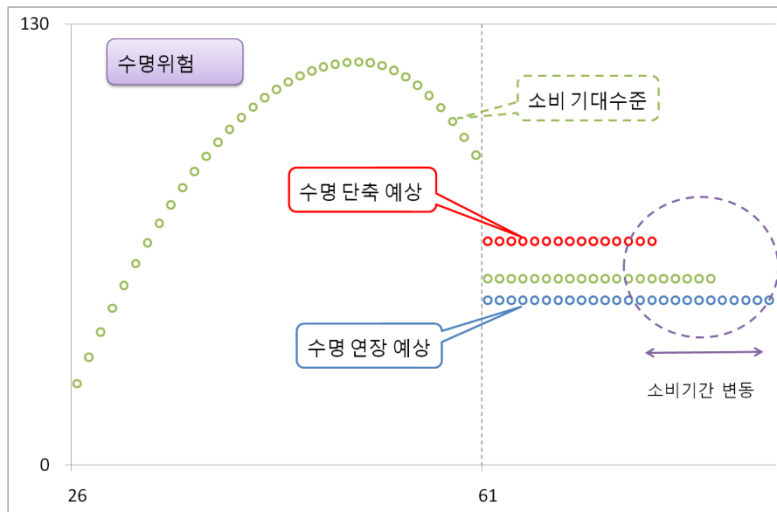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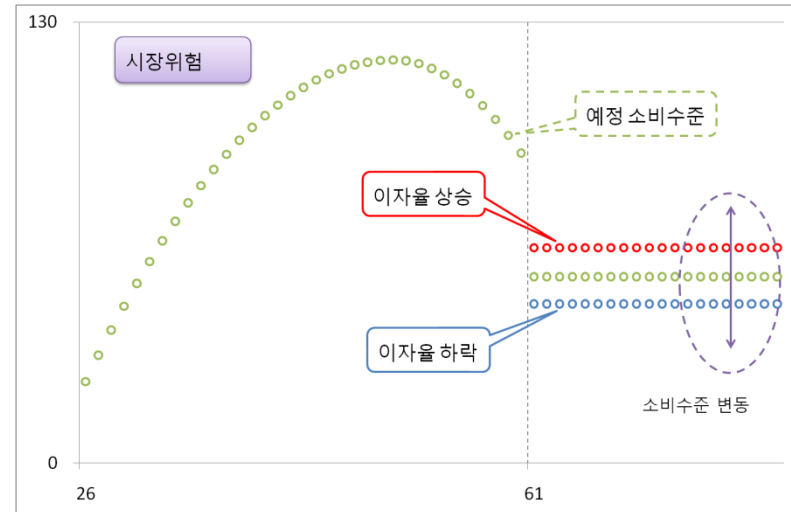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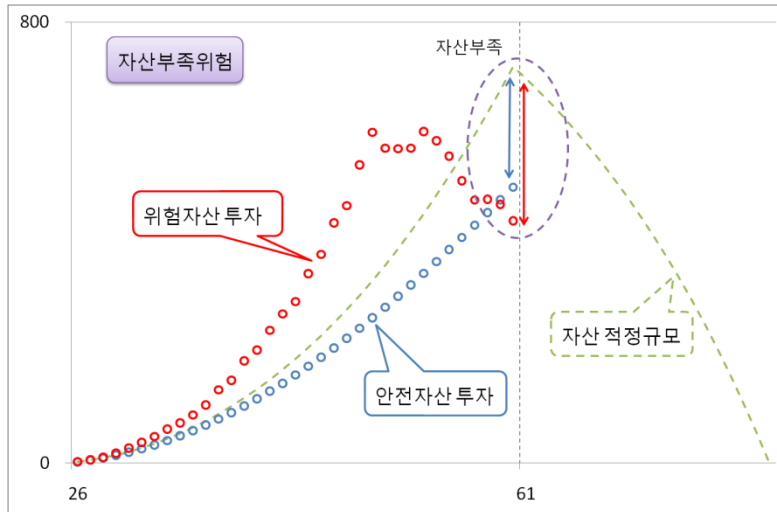


보험업 역할

보험업 역할: 금융기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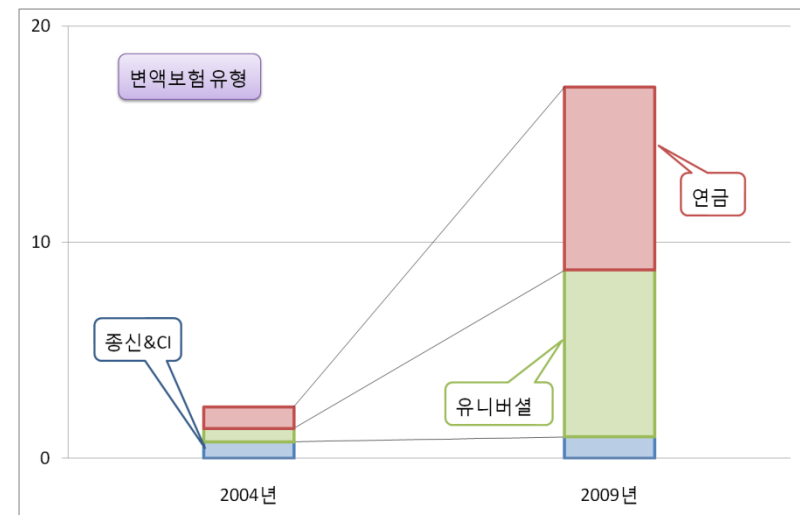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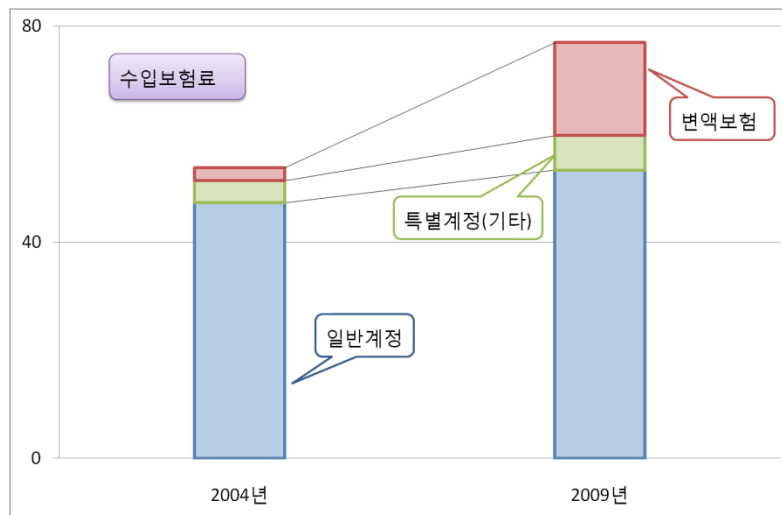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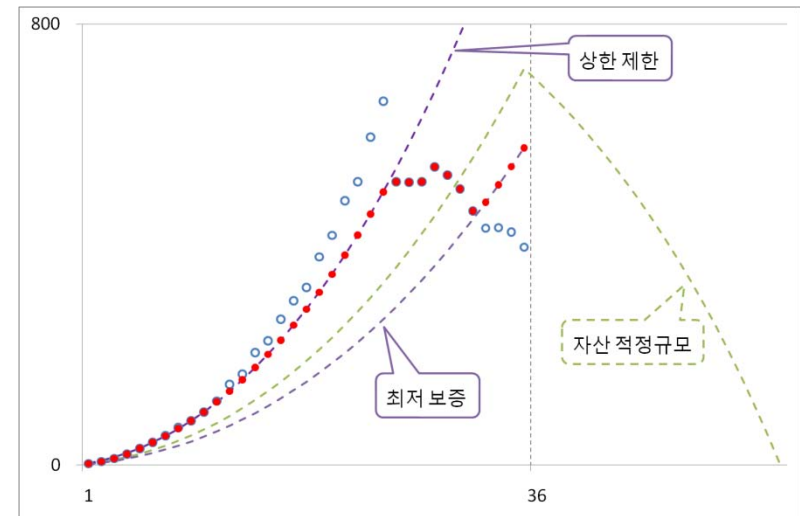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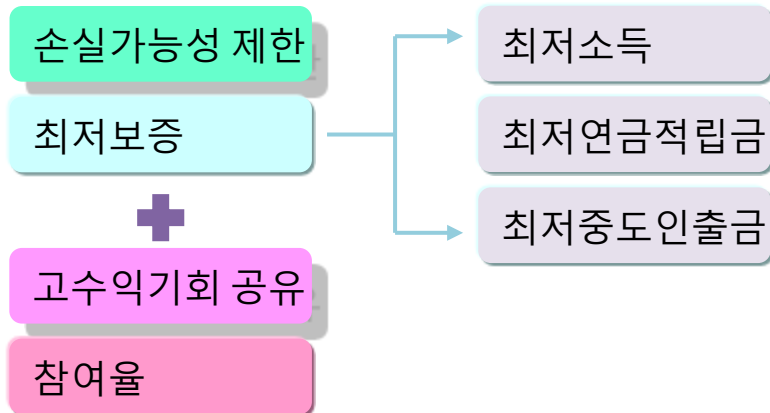


보험업 역할: 위험관리 (1) -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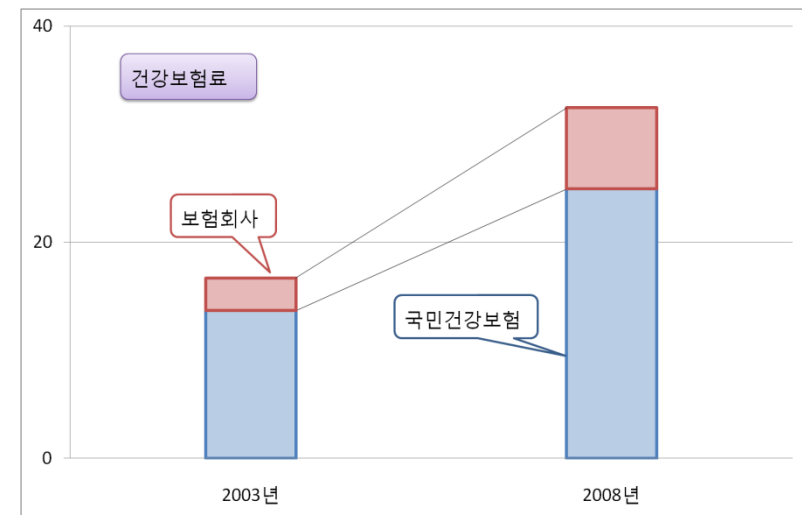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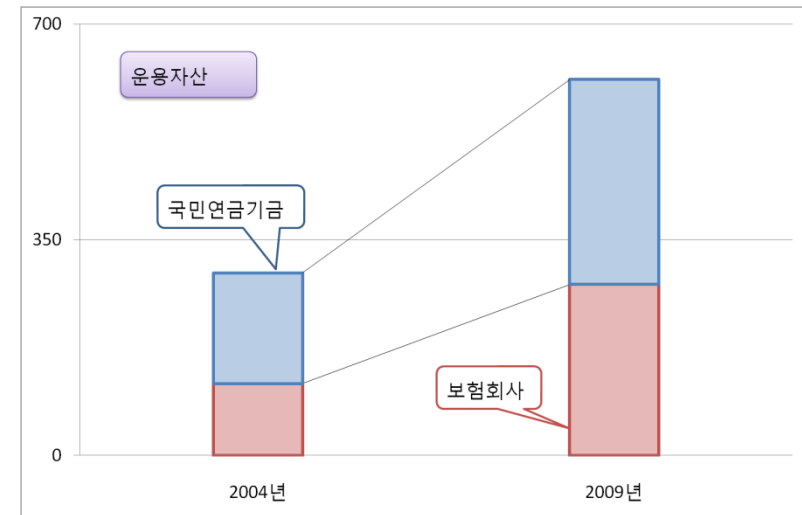
보험업 역할: 위험관리 (2) - 자산 축적기

❖ 변액보험 통해 자산부족위험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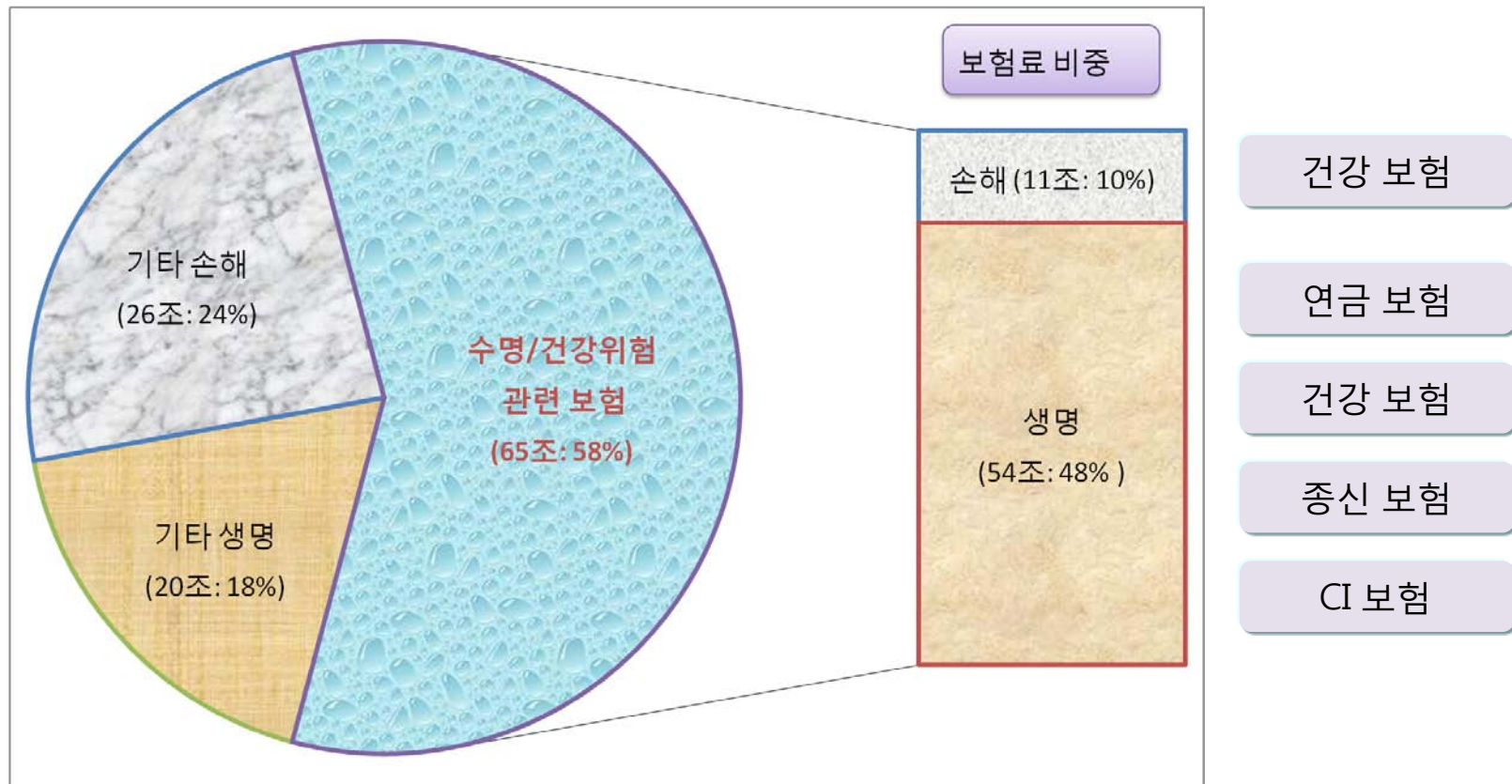
보험업 역할: 위험관리 (3) - 자산 소진기

❖ 연금/건강보험 통해 위험 인수



보험업 역할: 위험관리 (4) - 사적 안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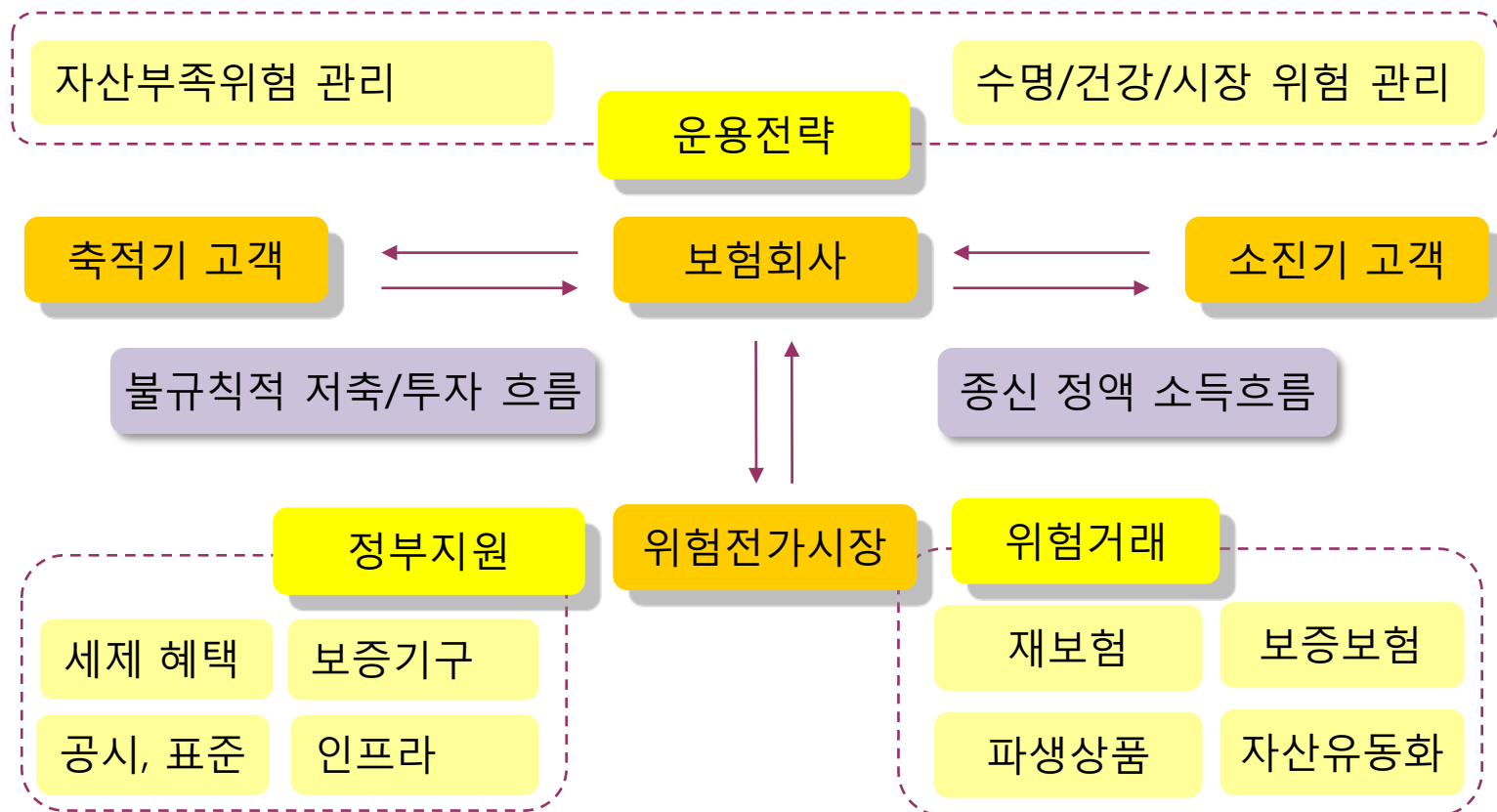
❖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수명/건강 위험 인수와 관련



보험업 역할: 가격발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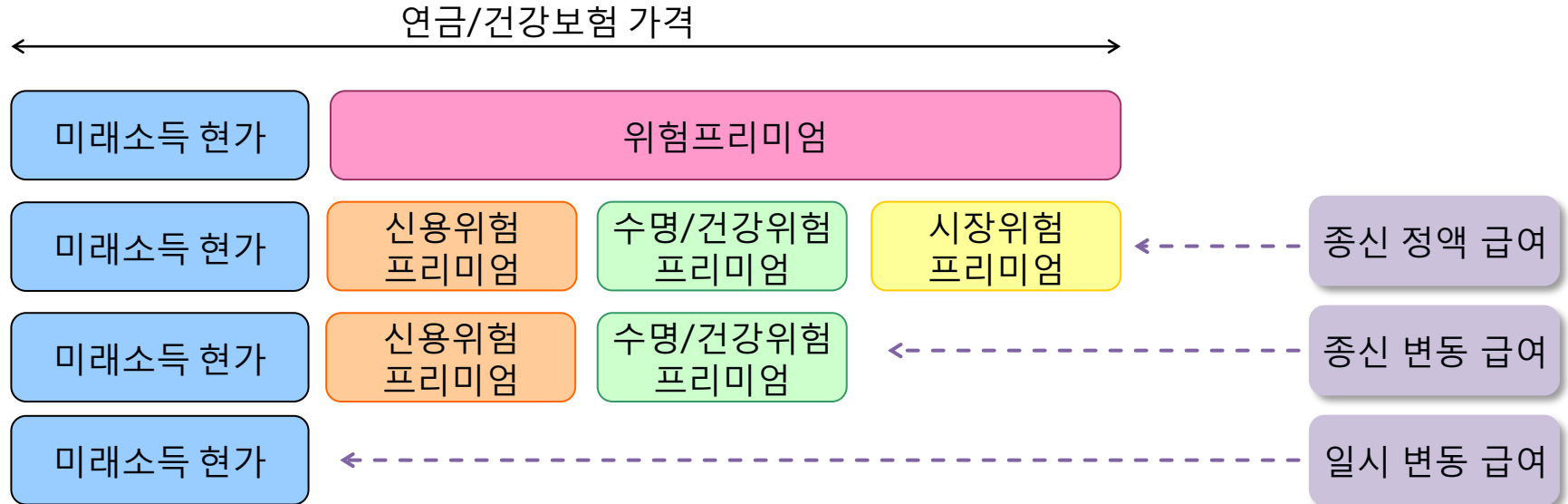
❖ 수명/건강위험 관련 **자산 전환** (asset transformation)

세대간 위험 공유 (risk sharing)



보험업 역할: 가격발견 (2)

❖ 수명/건강 위험 관련 **적정 위험프리미엄 발견** (price discovery)



위험 공유	주기적 계약조건 조정 (Impavido et al., 2004)
위험 전가	수명스왑, 수명연계채권 (Blake, Cairns and Dowd, 2006)
위험 풀링	펀드 구조 종신 급여 (Goldsticker, 2007)

보험업 역할: 가격발견 (3)

❖ 수명/건강 위험 관련 **표준 설정, 위험전가시장 조성**

“The Life and Longevity Markets Association” in EU(European Union)

참여기관

AXA, Deutsche Bank, J.P. Morgan, Legal & General,
Pension Corporation, Prudential, RBS and Swiss Re

Work Stream

[Technical] P&C(상품&담보), D&I(데이터&지수), MI(시장인프라),
V&RM(가치평가&위험관리) 관련 표준 마련

[Documentation] ISDA와 공조, 매매 관련 표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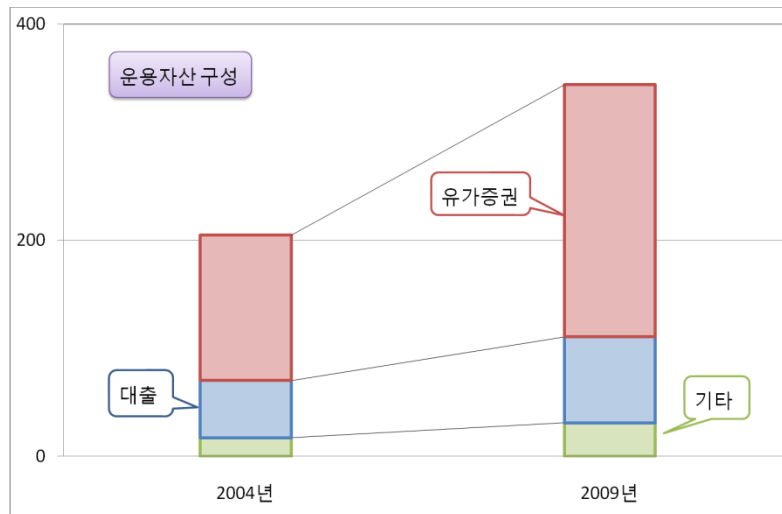
[Accessibility] 표준 배포

보험업 역할: 자금중개 (1)

❖ **기관투자자**로서 고령친화산업,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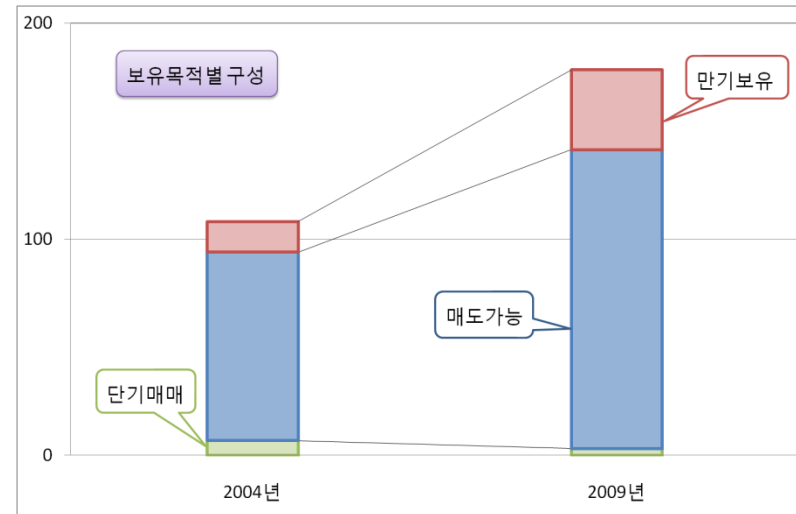
유가증권자산

직접금융 통한 기업부문 지원
선별기능 통한 성장산업 발굴



장기보유 성향

장기투자위험 감내 여력
장기 관계금융 통한 감시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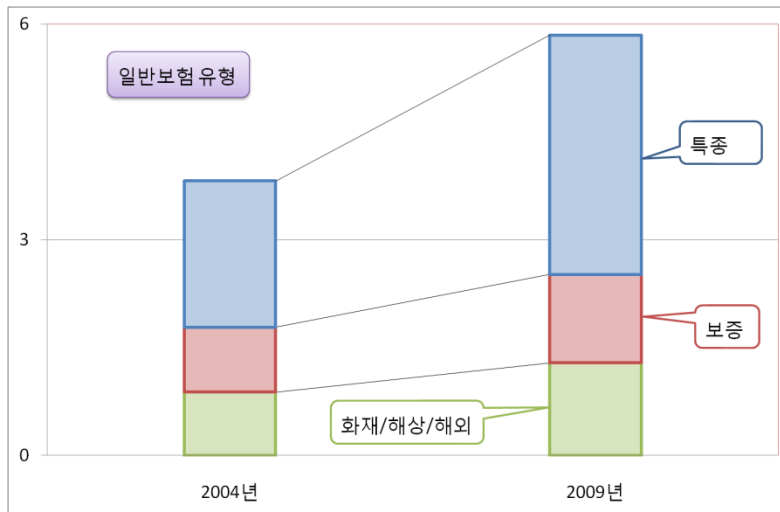


보험업 역할: 자금중개 (2)

❖ **보증/특종보험** 통해 고부가가치 혁신/서비스 산업 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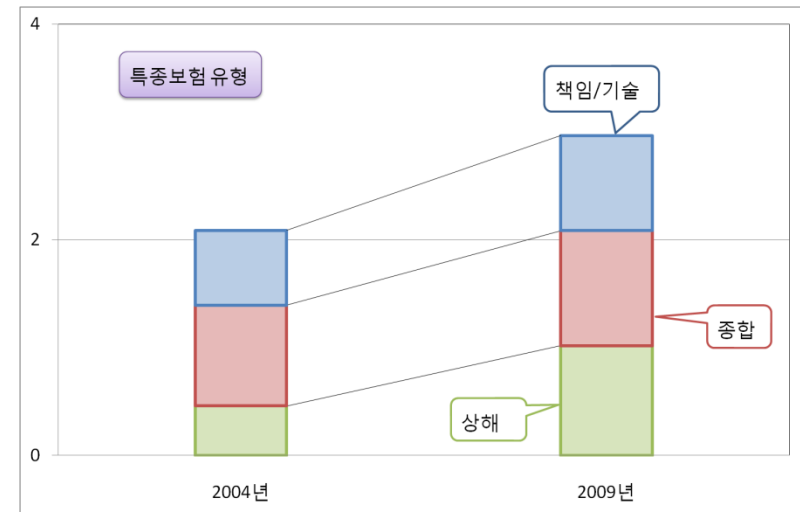
보증보험

녹색(혁신)기업 자금 조달 지원
이행/성과/금융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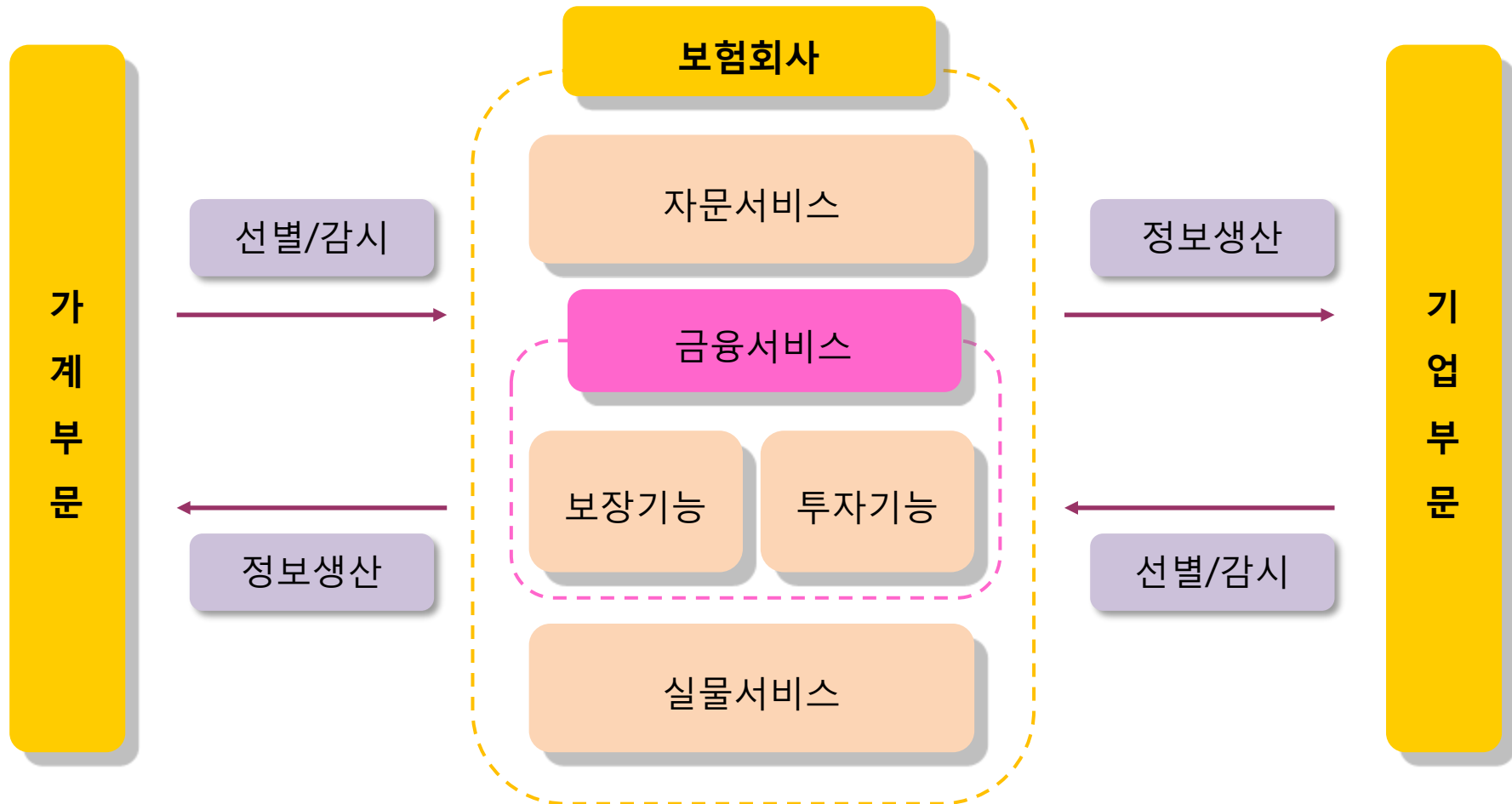
책임/기술보험

전문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기술/공정 혁신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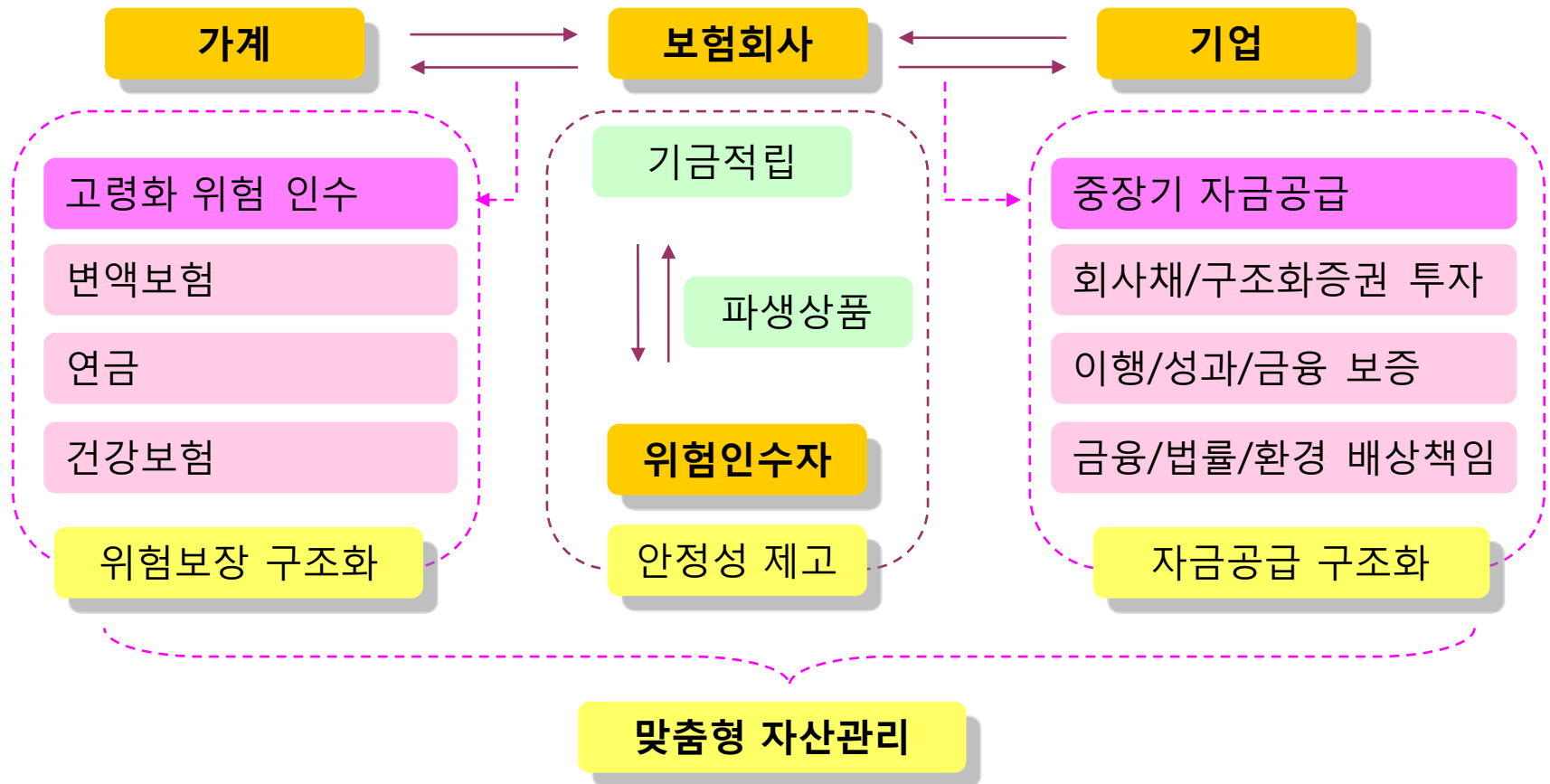
보험업 역할: 선별/감시/정보생산

❖ 금융 지원 대상 선별/감시, 수요/가격/성과 정보 생산



보험업 역할: 종합

❖ 금융기능 제고 통한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지원



향후 과제

향후 과제: 기본 방향

❖ 금융의 위험관리(보장)기능 개선 위한 **공사부문간 공조 체계 구축**

정부 지원	경제발전단계 시각	불완전시장 시각
명분	민간금융 미성숙	시장실패
대응	공적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충
수단	직접 지원 (예: 세제혜택)	민간 경험 축적 지원
비전	공적 안전망 축소 사적 안전망으로 대체	공적 안전망 유지 공사협력 방안 모색

향후 과제: 보장기능 개선 (1)

❖ 보장기능 축소에 따라 **가계 위험부담 확대 추세**



정책 과제: 보장기능 개선 (2)

❖ 보험업이 직면한 **체계적 위험 관리 수단** 부족

위험 유형	개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발생 요건	개별 수명/수익 불확실	기대 수명/수익 불확실
헤지 가능성	풀링 통한 위험분산	거래 통한 위험전가/공유
거래 조건	고객별 할인/할증	위험프리미엄
체계적 위험 전가시장	시장/신용 위험	파생상품시장
	수명/건강 위험	---

정책 과제: 보장기능 개선 (3)

❖ 체계적 위험 관리수단 부재에 따른 **시장실패 발생**

이론 예측

상속자산 외 모든 자산 연금화 적절 (Yaari, 1965)

현상

자발적 연금화 비중 낮음 (DB형 → DC형)

원인

체계적 위험 부담에 따른 금융회사 자본비용 증가
부채가치 대비 8~15% (Hari, et al., 2008; Stevens et al., 2009)

위험프리미엄 통해 계약자에게 부담 전가
미국 연금가격 중 15~20% (Mitchell et al., 1999)

대응방향

체계적 위험 관리수단 제공 통한 연금가격 인하 유도

향후 과제: 보험회사 (1)

❖ 저출산/고령화 위험 적극적 인수 위한 금융기능 강화

과제	방향	내용
위험관리	수명/건강위험 인수	종신연금 등 장기성 상품 확대 연금 지급방식 다양화 건강/장기간병 보험 다양화
가격발견	위험전가시장 조성 주도	보험/은행/금융투자 협의체 구성 표준 설정, 지수 개발
정보생산	자문서비스 강화	노령고객 서비스 윤리성 강화 상품구조/성과 관련 투명성 제고

향후 과제: 보험회사 (2)

❖ 성장잠재력 제고 능동적 지원 위한 금융기능 확대

과제	방향	내용
자금중개	장기 자금 제공	회사채 투자 통한 자금중개 확대 혁신중소기업 지분투자 확대
	신성장 산업 성장 지원	녹색기술/사업 관련 위험 인수 보증보험, 배상책임보험 확대
선별/감시	고령친화산업 선별 지원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다각화 시도 건강, 장묘, 장기간병 관련 사업 U-Healthcare 사업

향후 과제: 정부 (1)

❖ “최종위험인수자”로서 보험회사 금융기능 확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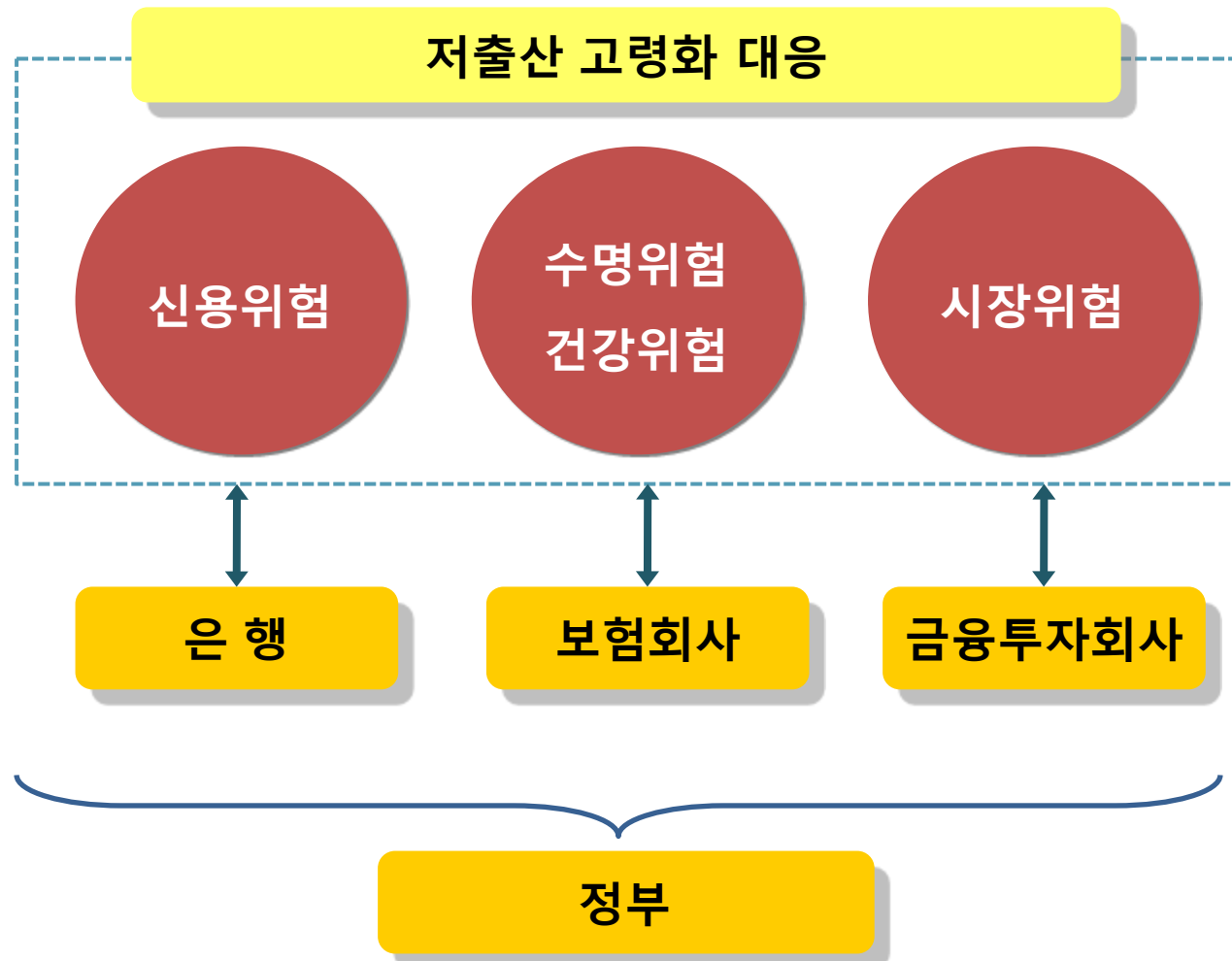
과제	방향	내용
세제 지원	노후준비 유인 확대	연금 수급기간별 세제혜택 차등화 개인연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소득공제 퇴직일시금 소득공제 축소 퇴직보험 퇴직연금 전환 시 세제혜택 부여
인프라 구축	체계적위험 인수	DB형 퇴직연금 연금지급보장 제도 도입 국가재보험 형태 공사간 위험공유체계 구축 (종신연금, 장기간병, 녹색기업 금융보증 등)

향후 과제: 정부 (2)

❖ 종합서비스 위한 검업 확대 지원, 보험업 성장기반 확충

과제	방향	내용
제도 개선	자문서비스 활성화 지원	보장기능 연계 종합금융서비스 기반 조성 신탁, 자금이체 등 금융업권간 형평성 제고
	보증/책임보험 성장 지원	장기금융시장 활성화 위한 금융보증 제도 도입 신/녹색성장 산업 관련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환경오염/수탁자책임/개인정보 등)
	U-Healthcare 사업 참여 지원	의료법상 허용범위, 책임소재 기준 정비 IT기반 서비스 제공 위한 보험업 부수업무 확대

향후 과제: 금융업/정부간 공조 체제



참고자료 (1): 연금수요 유인 위한 세제혜택 확대

퇴직연금
불입액
공제 신설

(퇴직연금+개인연금) 불입 합계액 소득공제 : 한도 400만원

개인연금 외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별도 소득공제
공무원연금 별도 공제 참조, 소득수준에 따른 한도 차등화

퇴직소득
공제기준
조정

연금소득 공제한도 900만원, 퇴직소득 정률(40%)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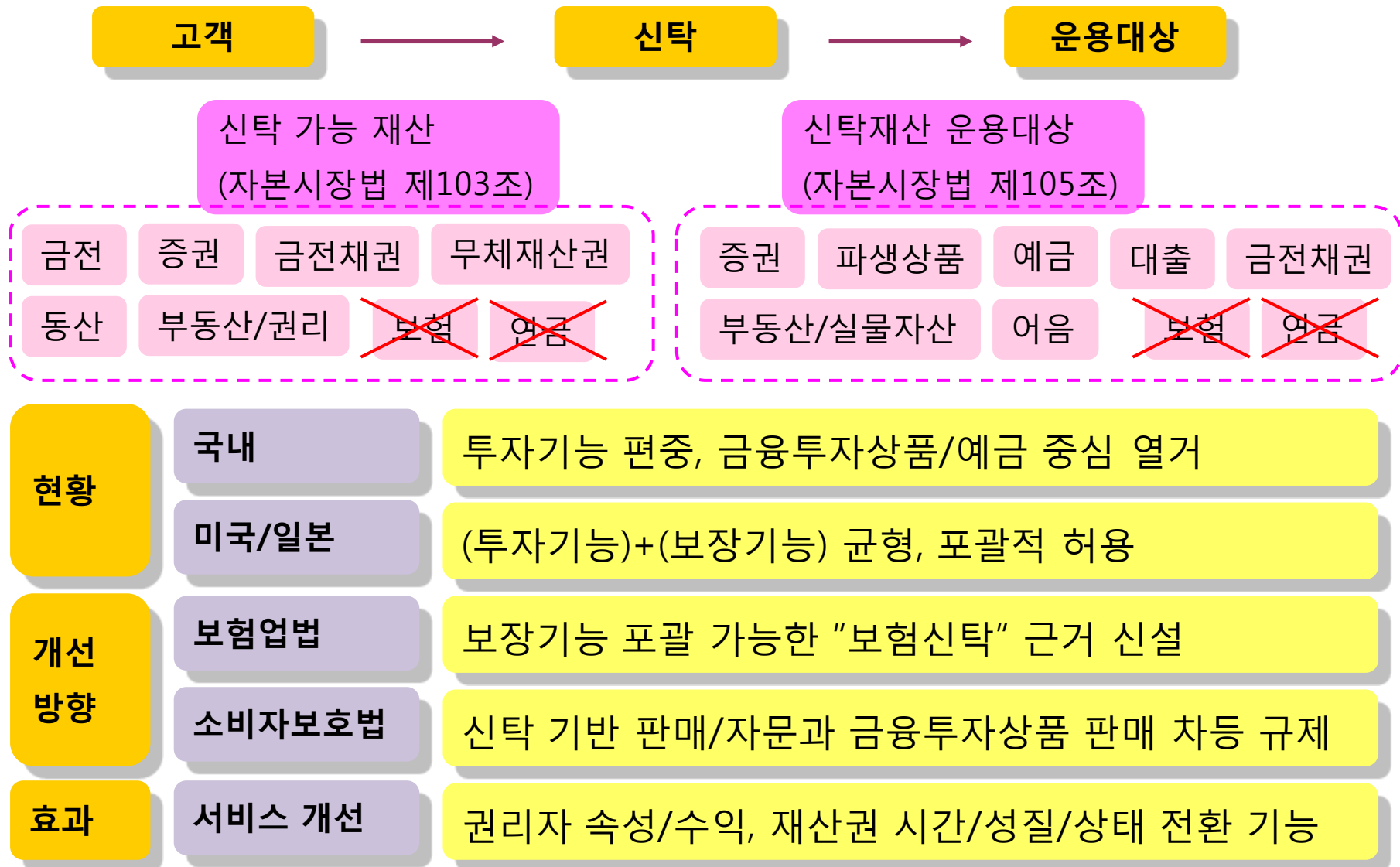
연금소득 공제 한도 1,200만원 이상으로 확대
퇴직일시금 공제비율 단계적 축소, 연금화 유도

퇴직보험
연금전환
세제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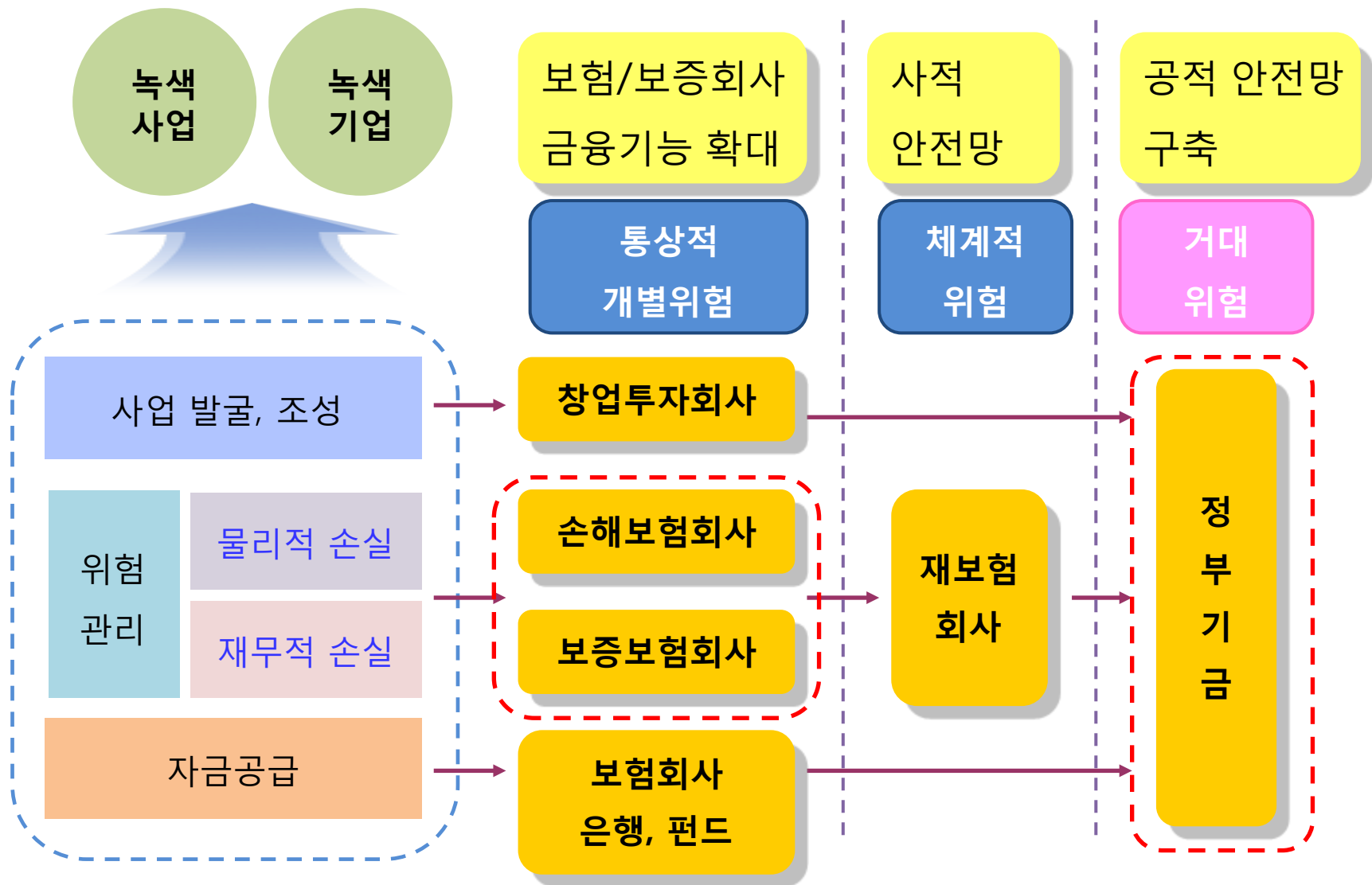
현행 퇴직보험(신탁) 2010년 말 효력 정지 예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퇴직보험적립금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해당 기업 법인세율 인하, IRA 예치 퇴직금 소득세 환급

참고자료 (2): 고령시대 고객서비스 기반 위한 신탁제도 개선



참고자료 (3): 장기자금 운용 위한 녹색/혁신 기업 지원체계 구축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은행권의 과제

2010. 10

이석호,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목 차

I. 검토의 배경

II. 주요국 사례

1. 고령화 진전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개인 금융자산 운용 특징
2. 고령화 진전에 따른 주요 선진국 은행의 대응 사례
 - 가. 상품 측면의 대응
 - 나. 기타사업 측면의 대응

III.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은행의 영업 현황 및 대응방향

1. 고령화 관련 국내은행 영업
 - 가. 현황
 - 나. 문제점
2. 고령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향
 - 가. 기본방향
 - 나. 세부전략
 - 다. 기타과제
3.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 가. 고령화 진전에 따른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강화 필요성
 - 나. 퇴직연금
 - 다. 주택연금

IV. 맺음말



I. 검토의 배경

II. 주요국 사례

III.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은행의 영업 현황 및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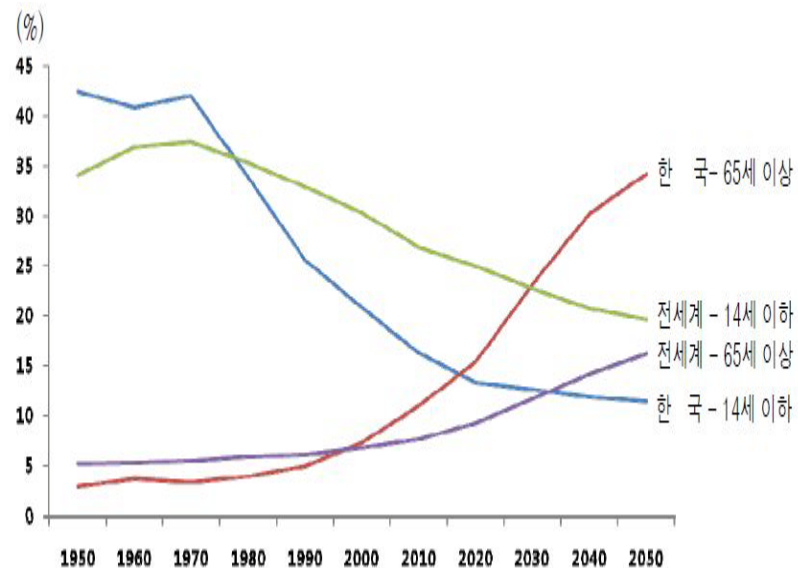
IV. 맺음말

검토의 배경(1)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인구 고령화는 전체 인구중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
 -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전세계에 비해 급격히 상승
- 한국의 경우 14세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이후 전세계에 비해 급속히 하락
 - 특히 2020년에는 부양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가 부양을 받은 14세 이하 인구를 추월

세계 및 한국 인구 비율 변화 전망



자료: UN (2008)



◆ 고령화 진전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

- 생애주기소비이론(lifecycle income theory of consumption)에 따르면 노년층은 자산을 처분하여 소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경향
 - 노년층의 경우 은퇴이후 소득수준은 감소하는 반면 소비수준은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에 기인하여 일정 수준을 지속하기를 원하기 때문
- 인구 고령화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음
 - 거시적 관점에서는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자산 처분 규모 증가(저축률 하락)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
 - 미시적 관점에서는 주어진 자산규모에서 위험기피성향이 상승하면서 예금 등 고정적인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되는 안전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



◆ 주요국 사례 및 국내현황 등을 토대로 우리나라 은행의 과제 및 시사점 모색

- 미시적 관점에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주요국 가계의 포트폴리오 조정의 특징을 고찰
 - 또한 이에 따른 주요국 금융회사의 대응을 은행 중심으로 사례 분석
- 주요국 사례, 국내 현황 등을 토대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우리나라 은행의 역할 및 시사점을 모색
 - 고령화 진전으로 유발되는 고객의 니즈(needs)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상품의 개발 방향을 제시
 - 또한 상품 측면 이외에도 은행의 기타사업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고찰
 - 한편 은행권이 key player이고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퇴직연금, 주택연금 부문과 관련된 과제도 모색



I. 검토의 배경

II. 주요국 사례

III.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은행의 영업 현황 및 대응방향

IV. 향후 과제 및 맺음말



II. 주요국 사례

1. 고령화 진전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개인 금융자산 운용 특징

2. 고령화 진전에 따른 주요 선진국 은행의 대응 사례

주요국 사례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자산 운용의 특징[1]

◆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은 총자산의 30% 내외 수준이며, 점차 비중이 높아질 전망

- 주요국 가계의 자산구성비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의 비중이 일본(2004)의 경우 26.7%, 미국(2007)의 경우 33.9% 수준
 - 일본의 경우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10년에는 27.1%, '15년에는 27.5%, 그리고 '25년에는 28.4%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총무성, 전국소비자실태조사, 2006년)

주요국 가계의 자산구성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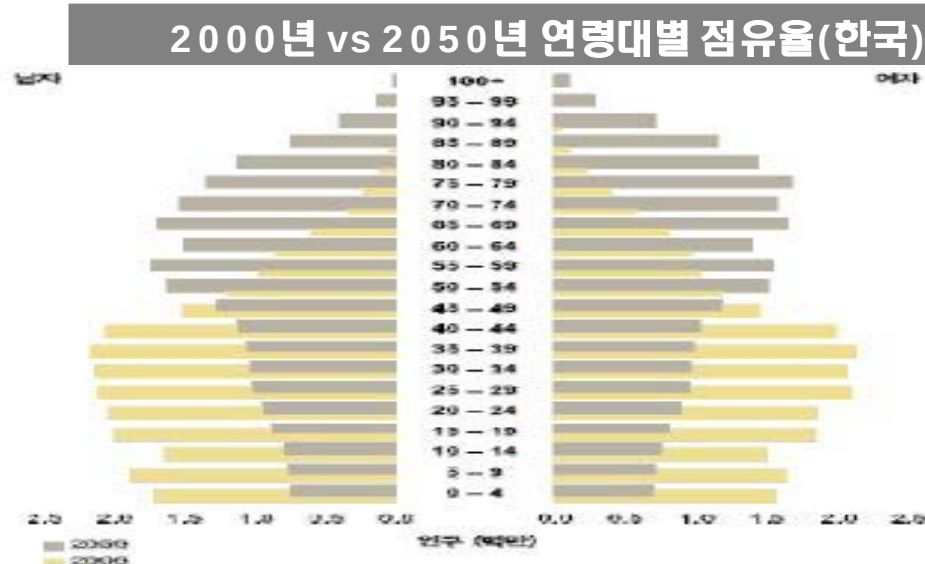
	일본 (2004)	미국 (2007)	한국 (2006)
금융자산	26.7	33.9	20.4 ¹⁾
비금융자산	73.3	66.1	79.6

주: 1) 전월세보증금 포함
자료: 한국 가계자산조사, 일본 National Survey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미국 Survey of Consumer Finances

주요국 사례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자산 운용의 특징[1]

◆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은 총자산의 30% 내외 수준이며, 점차 비중이 높아질 전망 (계속)

- 한국(2006)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은 20.4%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향후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점차 상승할 전망
 -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 ('01년: 17% → '06년: 20%)
 - 향후에는 주택소유 욕구가 강한 30대~40대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50대~70대 인구의 비중이 높아 실물자산 보다는 금융자산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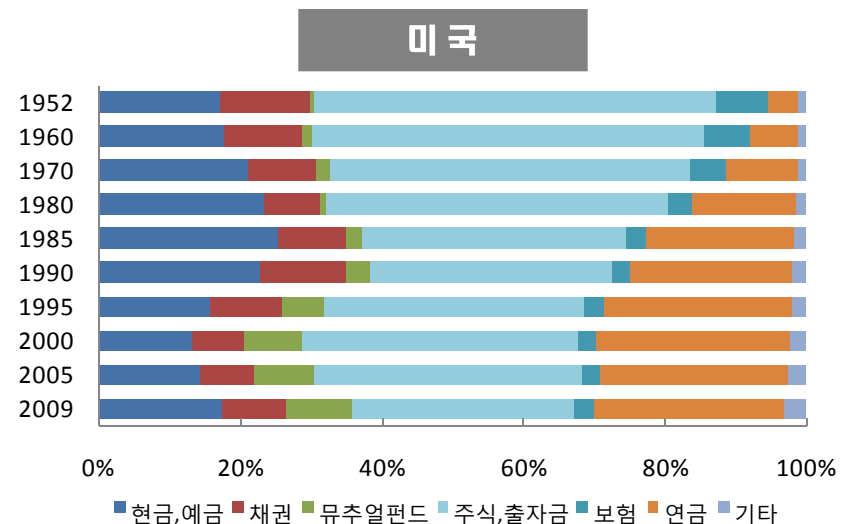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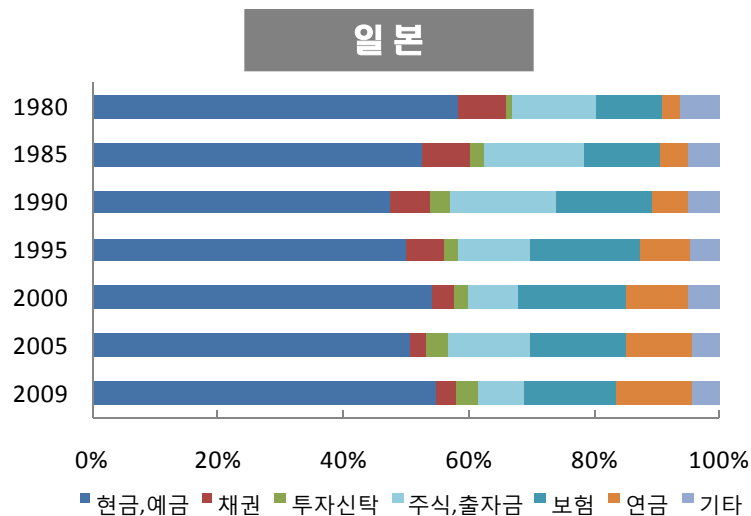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Population Division

주요국 사례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자산 운용의 특징[2]

◆ 주요국 가계는 금융자산중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

- 일본의 경우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한 가운데 연금 및 보험상품 비중이 80년대 이후 상승추세
- 미국의 경우도 주식의 비중이 축소되는 가운데 연금의 비중이 크게 증가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구성 추이



주요국 사례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자산 운용의 특징[3]

◆ 향후에도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

- 일본 총무성이 실시한 '전국소비실태조사'(2006)에 따르면 금융자산중에서 예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년의 62.1%에서 '15년에 62.7%로 높아진 이후 '25년에는 63.0% 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 전망

(단위: %)

	2005	2015	2025
예금 및 저축	62.1	62.7	63.0
주식 등 유가증권	11.6	12.1	12.4
생명보험 등	24.3	23.5	23.1
기 타	2.0	1.7	1.5

자료: 일본 총무성, 전국소비자실태조사(2006)

주요국 사례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자산 운용의 특징[4]

◆ 이론적으로도 연령 증가에 따라 안전자산 보유 비중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상당

- Bertaut 등(2002), Ameriks 등(2004) 등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식 등 위험자산의 보유비중이 감소하며, 특히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연구에서는 미국의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 미국의 교원연금기금(TIAA-CREF) 등을 이용하여 연령이 가계의 자산구성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상호(2010)는 연령의 증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위험기피 성향의 증가를 초래하여 위험자산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
 - 또한 박대근(2010)은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자료(2006년)를 이용한 분석에서 주식보유확률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있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결과를 도출

주요국 사례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자산 운용의 특징(5)

◆ 실증분석 결과도 고령화가 진전될 수록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고령화가 진전될 수록 예금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OECD 32개 국가의 1997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
 - 종속변수로는 GDP대비 은행예금 비중, 독립변수로는 고령화 변수로서 부양인구의존도 비율 (65세 이상 노년인구/경제활동인구) 등을 사용

고령화가 예금에 미치는 영향

설명변수	부 양 인 구 의존도 비율	GDP 성장률	국채수익률
추정계수	0.0713*	- 0.0109*	0.0003
[표준편차]	[0.0125]	[0.0035]	[0.0009]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주요국 사례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자산 운용의 특징[6]

◆ 한편, 고령화 진전이 오히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높일 것이라는 이론적 견해도 존재

- 고령화에 따른 저축 및 투자 감소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낮은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
 -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적립식 펀드나 주식형 펀드 등과 같은 주식형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일 수 있음
- 이럴 경우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축소되고 금융자산 내에서 주식이나 펀드 등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자본시장의 발달로 유가증권 투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



II. 주요국 사례

1. 고령화 진전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개인 금융자산 운용 특징

2. 고령화 진전에 따른 주요 선진국 은행의 대응 사례

가. 상품 측면의 대응

나. 기타사업 측면의 대응

주요국 사례 - 은행의 대응: 상품 측면(1)



- ◆ 주요국 은행들은 고령화 진전으로 유발된 고객 니즈(needs)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고령화 진전으로 유발된 고객 니즈

소득니즈

은퇴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현금흐름(cash flow)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요

건강니즈

수명 연장 등으로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대비하는 수요

자산관리위탁
니즈

금융공학 발달 등에 기인하여 자산관리를 프라이빗 뱅커(PB) 등과 같은 전문가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수요

주요국 사례 - 은행의 대응: 상품 측면[2]



◆ 소득 니즈에 대응하여 일정 수준의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제시

일본 케이요 은행

- 원금(월복리이자)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원금분할수취형 정기에금 개발
 - 동 상품은 원금의 50%(해당이자 포함)를 매월 또는 2개월마다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0%와 이자는 5년후 일괄수령 가능

일본 아시카가 은행

- 예탁 1년 후부터 2개월마다 원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 정기에금 도입
 - 만기수취원금(당초 예입금액의 50~60%)과 분할수취원금(당초 예입금액의 10~50%)을 고객 자신이 설계할 수 있는 장점

일본 미즈호 은행

- 퇴직금 전용 정기에금 등을 통해 일정기간(주로 3개월) 우대금리 적용

자료: 부기덕(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미·일 금융기관의 대응과 시사점”, The Banker



◆ 건강 니즈에 따른 지출 용도 목적으로 장기·저리 대출상품 제공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 고령층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고령층 건강상품 및 서비스 구입자금 용도로 대출상품 도입
 - 구체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에 필요한 고액 보증금 일괄대출, 병원치료비, 간병인 고용비용 등 재택 건강관리 비용의 월별 분할대출 등의 형태로 운영

일본 쇼쿠산 은행

- 지역거주 65세 이상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연2회 생활안정자금 대출
 - 동 대출에는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쇼쿠산은행의 자회사인 쇼쿠산카드서비스의 보증을 첨부하도록 요구

자료: 류성경(2007), “고령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전략”, 아시아연구



◆ 자산관리 위탁 니즈에 대응하여 자산운용 관련 컨설팅 플라자 등 개설

미국 Amegy Bank

- 은퇴준비, 은퇴시기, 은퇴이후, 상속시점 등 4가지 단계로 구분된 다양한 자산설계 정보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일본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 ‘자산승계플래닝’ 제공을 통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가족구성이나 재산상황을 분석하여 고객별 니즈에 맞게 플랜 제시

일본 세카가야 신용금고

- 컨설팅 플라자를 개설하고 신탁이나 부동산에 정통한 직원 배치를 통해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상속, 사업승계에 관한 컨설팅 등을 제공

자료: 서윤석(2008), “일본의 고령자 대상 신 금융서비스,” The Banker



◆ 비금융서비스까지 포함한 회원제 서비스 확대

- 은퇴 이후 여행, 취미, 스포츠, 동호회 활동 등에 고령층이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응하여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회원제 서비스 확대

일본 주오미즈이 신타은행

- 금융서비스(금리 및 수수료 우대, 자산관리 서비스) 이외에 기타 서비스로 국내외 여행정보 및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각종 티켓 예약 등 제공

일본 스미토모 신타은행

- 64세 이하 개인이 가입하여 70세에 자동퇴회 처리되는 회원제 서비스
 - 금융정보는 물론 여행이나 레저, 건강 등 고객라이프 스테이지 전반을 지원
 - 구체적으로는 스포츠클럽, 각종 건강검진, 간병서비스 등에 대한 할인혜택 제공



◆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부문 비즈니스 등 확대

미국 Citizen bank

- 지역 방송국과 함께 지역사회 시니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Compass Care 프로그램 등 지원

미국 Standard Chartered Bank

- 육체적 · 정신적 장애로 집에서 기거하는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식과 식품을 전달해주는 Citymeals on Wheels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HSBC Hong Kong

- 시니어들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HKCSS)와 함께 Aging Well Living Well program을 제공하여 소외된 노인들을 지역사회에 다시 어울리게 하며 노인층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함.

주요국 사례 - 은행의 대응: 기타사업 측면(3)



◆ 기타: 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은행업무관련 정보제공, 눈높이 맞춤 서비스 제공 등

네덜란드 RaboBank

- 은행서비스와 금전적 관리(financial management)에 미숙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
- 'Modern Banking' 이란 지침서를 통해 은행관련 정보를 제공
- 작은 마을 단위로 한 모바일 뱅킹서비스 확대
- 은행지점마다 시니어고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실시
- 시니어고객과 시력장애인 고객들을 위한 은행이용 서비스

미국Post Office Saving Bank

- Special Thursday 제도를 통해 매주 목요일 은행개점 후 3시간 동안 시니어들만을 위한 카운터를 개설하고 거래를 기다리는 시니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



I. 검토의 배경

II. 주요국 사례

III.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은행의 영업 현황 및 대응방향

IV. 맺음말



III.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은행의 영업 현황 및 대응방향

1. 고령화 관련 국내은행 영업

2. 고령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향

3.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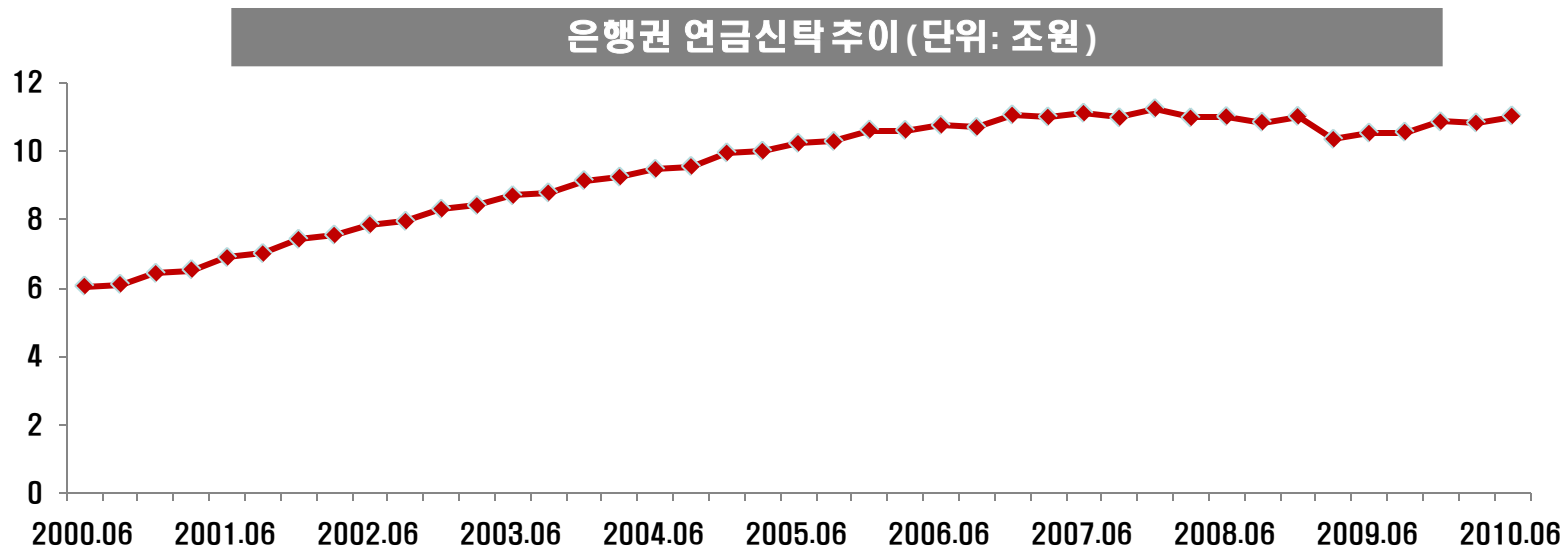
4. 주택연금

고령화 관련 상품(연금신탁)



◆ 은행권의 연금신탁 누적액은 7조 2,388억원으로 감소 추세

- 2010년 3월 말 기준 은행권 연금신탁 누적액은 11조 26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증가세가 점차 둔화
 - 저금리 환경하의 운용수익률 저하 등 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방카슈랑스 시행 및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상품 설계금지 등도 요인



주: 1)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신탁계정 대차대조표 상의 연월말 누적액 기준

2) 신규취급이 중단된 개인연금신탁, 신개인연금신탁 및 신규취급 가능한 연금신탁의 합

자료: 금융감독원

고령화 관련 상품(예금 상품)



◆ 국내 대부분의 주요은행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리, 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 중

- 연금 형식으로 이자와 원금을 수령하는 예금과 보험을 결합한 상품들이 출시
- 은퇴 후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퇴직금 전용 정기예금 상품과 연금이체 시 수수료 등을 우대해주는 상품도 판매
- 그 밖에도 예적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헬스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니어 고객들을 유치

주요은행 고령화 관련 예금상품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농협
예금 상품	WINE 정기예금 이자 수령방법을 만기 일시지급, 월이자지급, 연금지급식으로 구분.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KB시니어웰빙 정기적금 헬스케어서비스, 4대 연금 수급 권자 우대금리 제공	뉴라이프연금예금 4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목돈을 일시에 가입 후 설정한 금리주기와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연금지급주기를 다양하게 설계 뉴라이프저축통장 연금수령고객을 대상으로 연금이체만 하면 금리우대, 수수료면제 등 우대서비스 제공	호두적금 부모님의 회갑, 칠순, 가족여행 등 특별중도 해지요건에 해당할 경우 약정이율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신탁용 정기예금상품 월복리연금식 적금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전까지 생활비마련을 위한 연금식 적금상품	부자되는 연금통장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가능 및 수수료 면제 특화 상품 하나 셀프디자인예금 고객이 직접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설계하는 상품	안심체크 정기예금 만 30세 이상 개인, 1억 이상 가입 가능, 만기 1년, 무료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신탁의 적립금을 정기 예금으로 운용하고자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나눠 받는 상품 100세 통장 계약금보장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장례지원서비스, 금리우대(4대연금수급, 자동이체)	새희망연금예금 농업인, 조합원, 4대연금을 지역동행계좌로 수령시 우대금리 지급 장검다리 연금적금 납입 금액, 납입 횟수 제한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노후생활자금 적립 적금 후 적립원리금을 연금으로 수령 브라보 백년 예금저축 만기일시지급식, 거치후 원리금 분할 지급식, 바로 원리금 분할 지급식 등 다양한 금융거래 선택가능

자료: 각 은행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고령화 관련 상품(대출 상품)



◆ 고령층 및 고령화와 관련된 대출상품은 상대적으로 드문 것으로 파악

연금 신용대출

- 연간 연금수령금액의 범위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
- 부가적으로 차주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금 상환부담을 100% 면제하는 혜택 제공

퇴직연금 대출

- 퇴직연금 담보 전용 대출 상품
- 퇴직연금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 가능
 -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시
 - 가입자 및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기타 고령화 관련 상품(카드 상품)



◆ 국민연금 수급자 및 경제력을 갖춘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은행의 고령층 겨냥한 카드상품들이 출시

- 실버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카드상품들은 의료관련 서비스 등을 주요 혜택으로 제공
-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등 연금 수령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들도 출시
- 그러나 아직까지는 출시된 고령화 관련 카드 상품의 종류가 다양화되지 않아 제공하는 혜택이 비슷하다는 한계

은행 고령화 관련 카드상품

카드상품	주요혜택
연금 제휴 신용카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병원, 약국, 한의원 등 할인 •의료, 장례 등 복지서비스 제공
시니어패스 카드	무임용 교통카드 기능 추가

기타 고령화 관련 사업

◆ 국내 은행들은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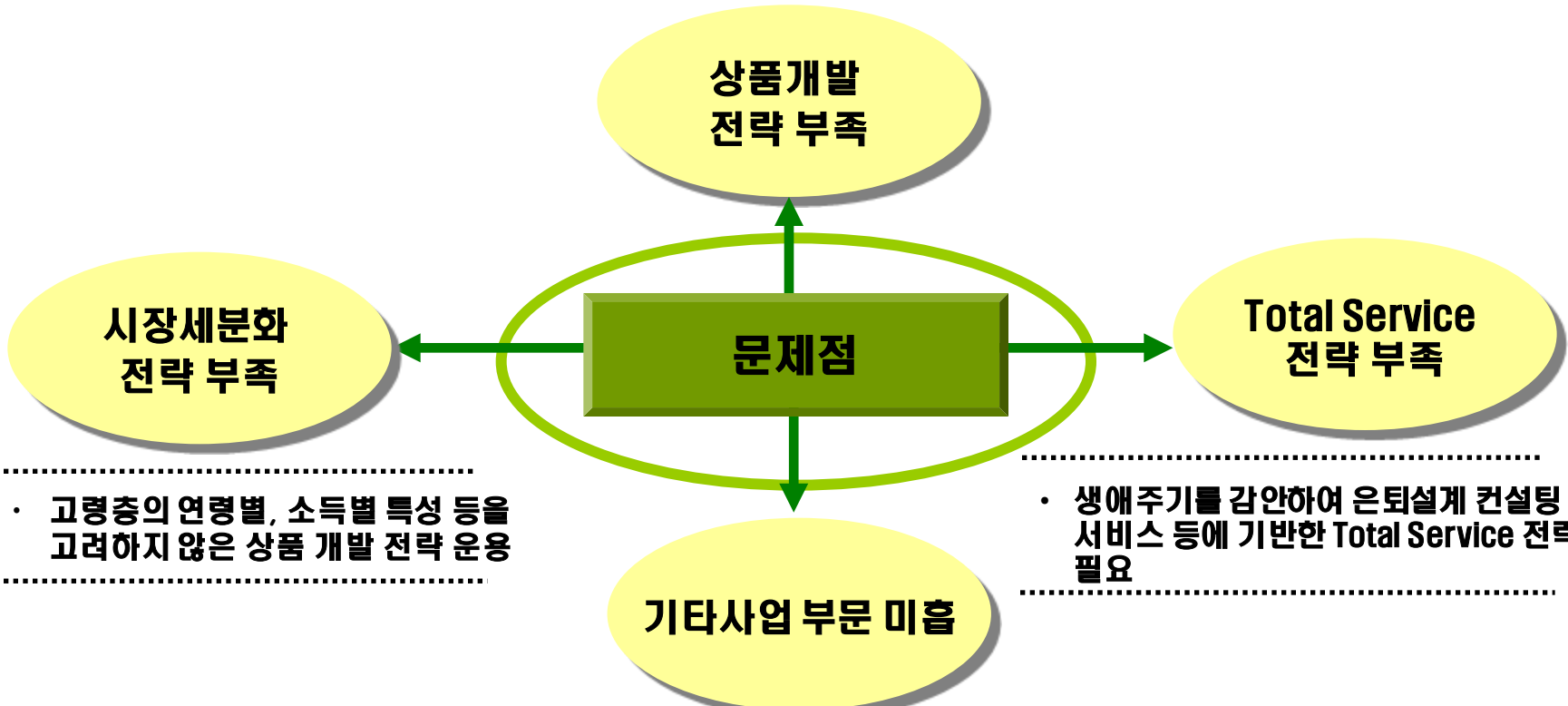
주요은행 고령화 관련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일자리사업	Co-CRM제도	정년퇴직한 영업점장을 활용한 기업 RM제도
	자점감자전담직	은행 부점장급 은퇴자들을 활용한 감사활동
	재취업프로그램	희망퇴직을 신청한 은행원들을 예전보다 적은 급여로 다시 고용
	퇴직자 일자리 프로그램	퇴직자 재고용, 자영업 창업, 금융교육요원 양성 등
은퇴설계	은퇴설계 테마몰 운영	홈페이지에서 은퇴준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
사후대비 서비스	미래안심유언서비스	PB고객들에게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을 위임받아 유언자 사망시 유언내용에 따라 유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분배하는 서비스
	장례지원서비스	PB고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시 운구용 리무진 캐딜락 제공
	유언신탁서비스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유언 상담
건강관련 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PB고객들에 제휴병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전문가 초청 건강강좌 개최
요양시설 운영	하나케어센터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기타	말레이시아 해외투자자 은퇴플랜 세미나 개최	은퇴 후 해외투자 컨설팅 및 강연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역노인들에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고령화 관련 은행영업 문제점



- 기존상품에 단순히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부가서비스 제공 등이 추가된 형태에 한정



- 고령층의 연령별, 소득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품 개발 전략 운용

-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은퇴설계 컨설팅 서비스 등에 기반한 Total Service 전략 필요

- 은행영업과 관련된 부문 외에 기타사업 부문에서도 고령층에 대한 관심 필요



III.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은행의 영업 현황 및 대응방향

1. 고령화 관련 국내은행 영업

2. 고령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향

3. 퇴직연금

4. 주택연금



2. 고령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향

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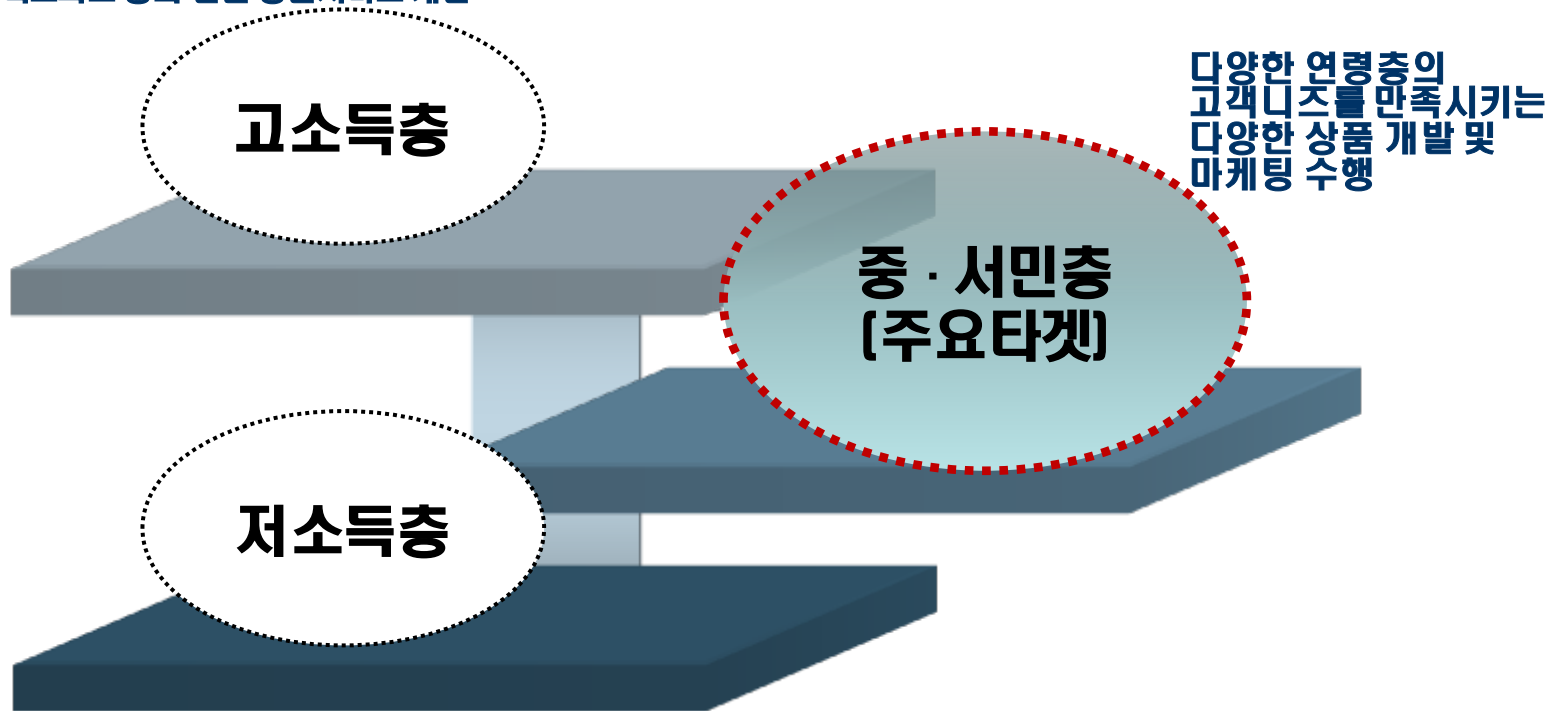
나. 세부전략

다. 기타과제



◆ 주요 타겟 설정

- 고소득층 고령 고객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시스템적으로 이들의 needs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여전한 과제
-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needs에 부합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다양한 PB, 패밀리오피스 등과 같은 상품서비스 개발



- 저소득층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영 금융회사의 직접적 상품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의한 공적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의 역할 담당
- 은행의 비영업부문에서의 기여도는 제고할 필요



◆ 상품전략 및 기타사업 부문 전략

상품전략

장기금융상품

시장세분화를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개별 장기금융상품 개발 필요

Total Service

컨설팅서비스, 다양한 형태의 부가서비스를 접목한 Total Service전략도 필요

**자산운용
CRM
리스크관리**

장기적 신뢰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CRM,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기타사업 부문 강화 필요



2. 고령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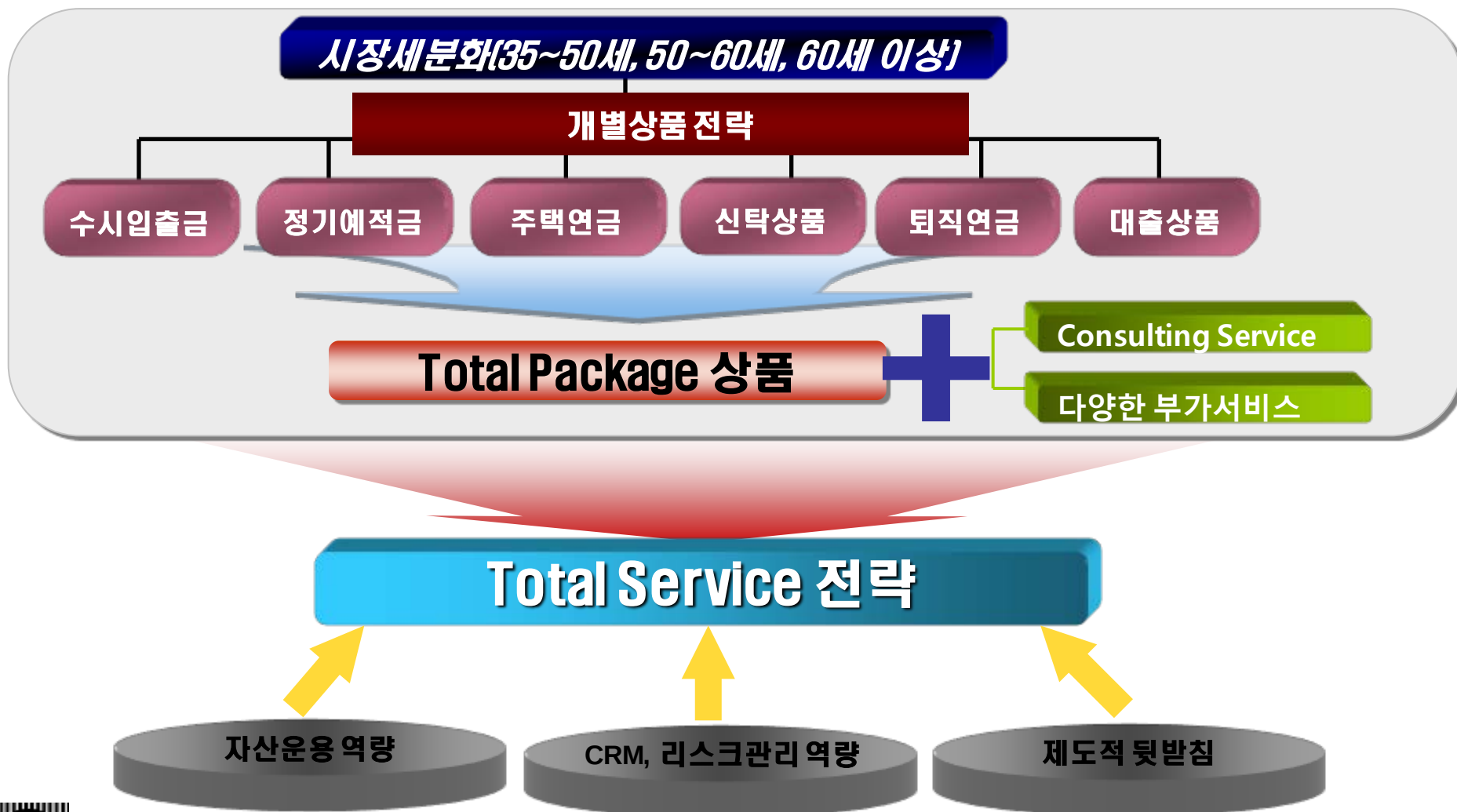
가. 기본방향

나. 세부전략

다. 기타과제

세부전략(개관)

- ◆ 시장세분화 전략 등에 기반한 다양한 개별상품 및 Total package 상품 개발 필요
- ◆ 컨설팅서비스, 자산운용, CRM 및 리스크관리 측면의 역량 제고도 필요





◆ 시장세분화 전략: 연령대, 소득별 특성 및 수요 등에 따른 세분화 접근 필요

	생애주기 특성	관심사	접근전략
은퇴준비자 (35~50세)	• 사회적 완성기 - 자녀 중고생 이상 - 금융거래 왕성 - 노후자금 준비 - 주요주택용자상환	• 노후대책 - 재테크 • 자녀교육	• 준실버 세대(잠재 실버고객) • 노후대비 금융자산 준비 관심 • 장기적 컨설팅 서비스 요구
은퇴자 (50~60세)	• 인생의 회춘기 - 퇴직직후이나 아직 정력적 활동 - 자녀의 독립 및 결혼 - 노후생활설계	• 자기개발 • 제2의 인생계획 - 여행 - 취미활동 • 건강	• 퇴직 직후 실버세대 출발기 • 추가적 자산형성 관심 • 창업지원 상품 및 컨설팅
시니어 (60세 이상)	• 안정기의 자유인 - 가족의 해체와 사회적 연계의 감소 - 연금수령을 시작으로 경제적 존속 시작	• 진정성 • 지적호기심 • 사회적 교류 • 건강	• 원숙한 실버세대 • 현재 및 미래 소득보장 관심 • 자녀상속 등에 따른 컨설팅 서비스



◆ 개별상품 : 장기만기에적금상품, 신탁상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개별상품 방향

❖ 은퇴준비자 및 은퇴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기만기에적금상품 등 개발

➡ 시장에서의 충분한 장기물 공급이 전제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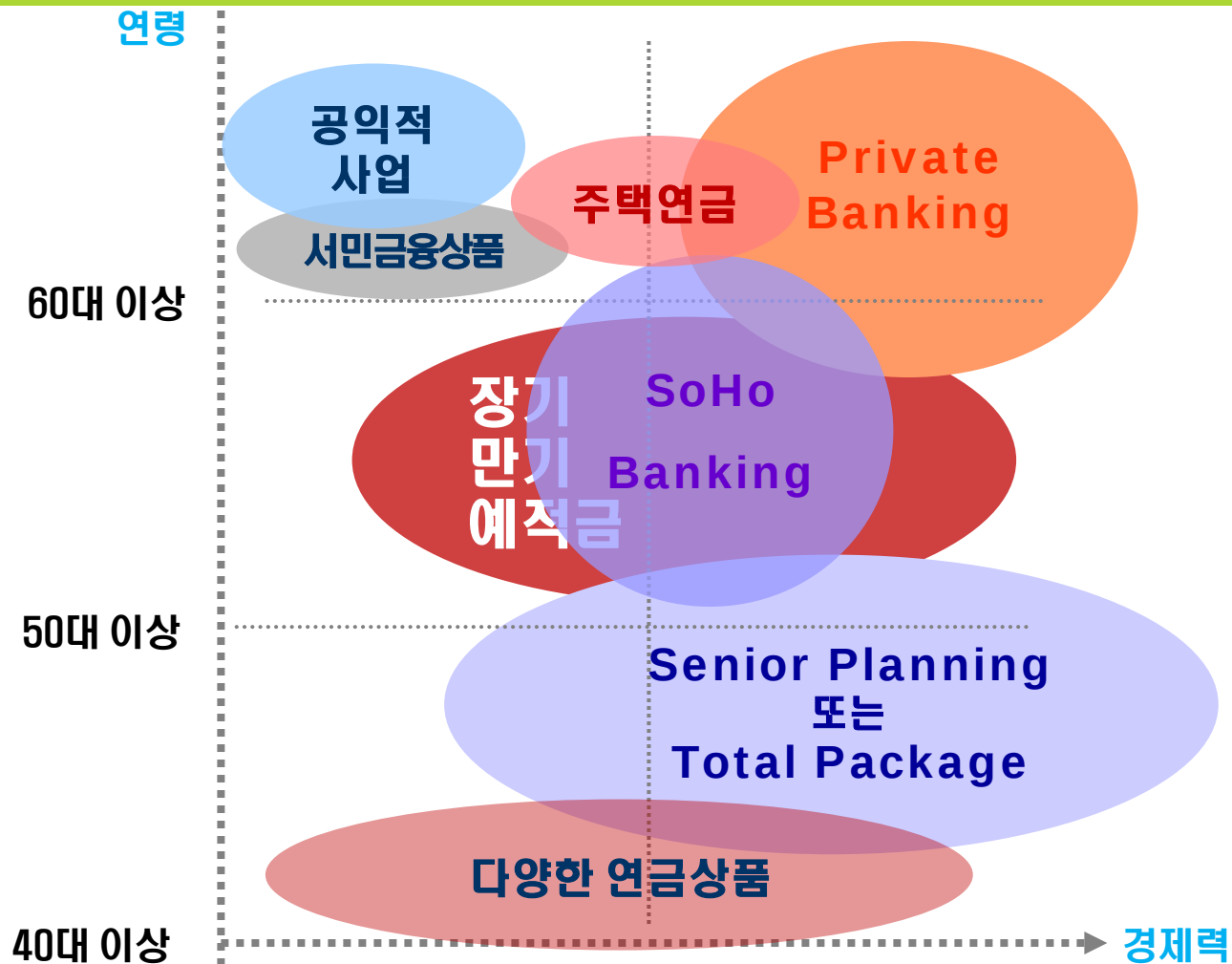
❖ 은행의 타 업권에 비해 전통적인 이점인 안전성, 신뢰성 등을 무기로 다양한 신탁상품(종합재산신탁, 유연신탁 등)을 취급하는 것을 고려

❖ 안전성을 근간으로 하는 은행으로서는 퇴직연금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 ➡ 지속적으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 주택연금시장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고령자의 노후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아울러 주택연금 고객을 신규고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세부전략(개별상품)

◆ 세분시장별 접근방법



세부전략(Senior Planning사례1)

- ◆ 은퇴설계 컨설팅서비스에 기반한 Total Service 전략 필요
- ◆ *Senior planning 사례1: 하나은행 실버뱅킹*



세부전략(Senior Planning 사례2)

◆ Senior planning 사례2: HSBC 노후플래닝 서비스

- 노후준비 전문가가 현재 재무상태와 노후계획목적에 맞춘 최적의 포트폴리오 제안
- 필요 노후자금 및 목표 노후 생활수준에 맞춰 설정된 시나리오에 기반한 노후설계 진단서 제안

노후자산 포트폴리오

- 노후예상시기와 노후준비기간, 투자성향에 따라 위험도를 분산한 포트폴리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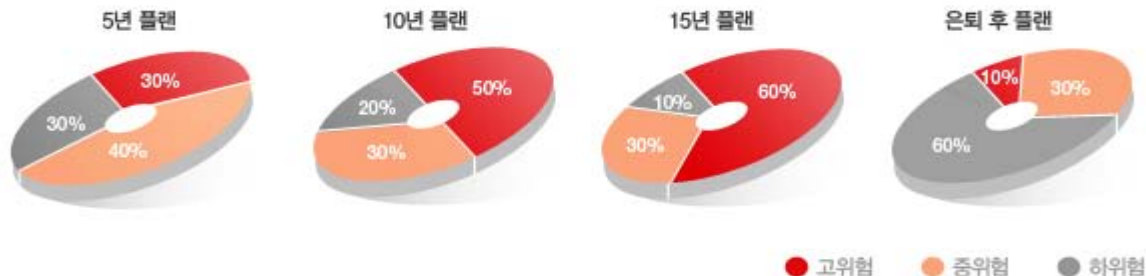
노후 자산관리 상담

One Stop
노후준비 서비스

노후준비 부가서비스

- 유산상속 상담서비스
- 세무상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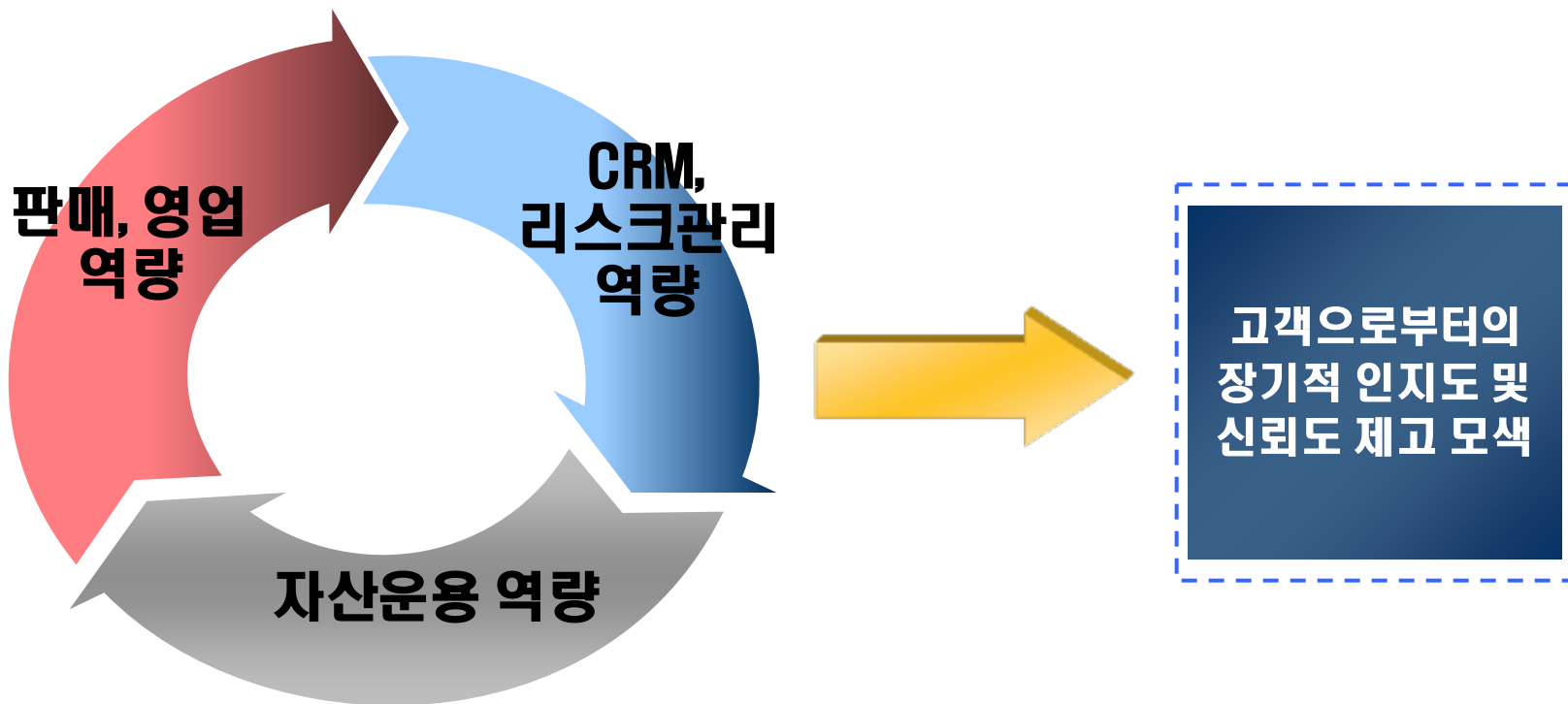
HSBC의 노후 준비 기간별 포트폴리오 설계





◆ 판매, 영업역량과 더불어 자산운용, CRM,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필요

- 판매, 영업 측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 계열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자산운용 역량 제고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
-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CRM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한 고객으로부터의 장기적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를 모색할 필요



기타사업 부문

취약 고령층

☞ 취약고령층 지원사업 확대

-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취약 고령층에 대한 관심 증대 필요
- 각종 공익사업,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 등

실버 고객

☞ 고령층 눈높이에 맞춘 은행서비스 제공

- 고령층 눈높이에 맞춘 상담서비스 제공, 고령층 전담창구 운영 등 고령자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편의 증대

☞ 교육,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 고령층을 대상으로 은행 영업 및 비영업 측면을 망라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교육,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 older-user의 accessibility 제고

- 최근 은행 영업추세인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 뱅킹과 관련하여 고령층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older-user의 accessibility 제고에 보다 적극적 관심 필요



2. 고령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향

가. 기본방향

나. 세부전략

다. 기타과제



◆ 제도적 측면의 과제: 세제혜택, 장기물 공급

세제혜택 확대 고려

- ◆ 노후생활 준비와 관련된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고려할 필요
- ◆ 개인연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추가적 확대 검토
- ◆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연령대별 세제혜택 차별화 방안 검토

장기물 공급 확대

고령화의 급진전

- ➡ 장기만기 예금, 개인연금, 신탁상품 등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
- ➡ 이들 상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시장에 장기국채, 장기 MBS 등 장기물의 원활한 공급 필요



III.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은행의 영업 현황 및 대응방향

1. 고령화 관련 국내은행 영업

2. 고령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향

3.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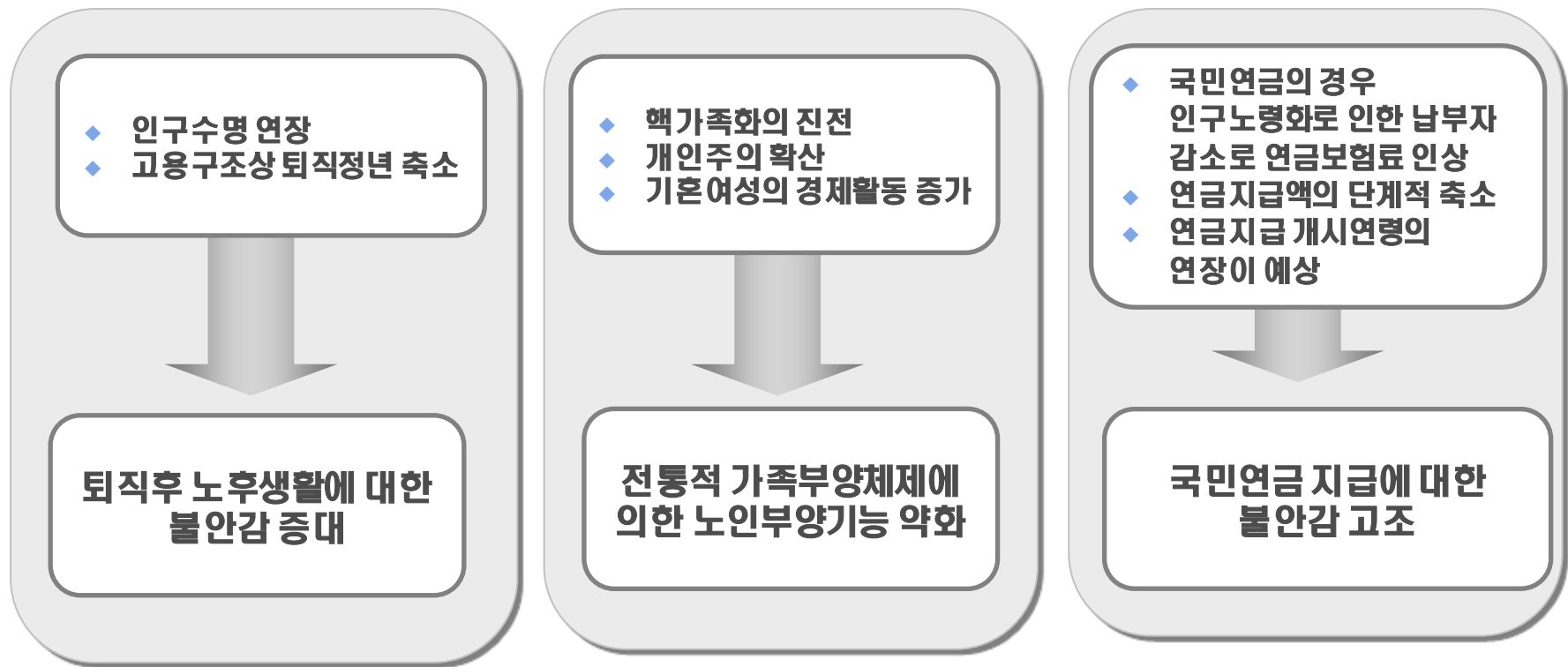
가.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강화 필요성

나. 퇴직연금

다. 주택연금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강화 필요성[1]

- ◆ 사회구조의 변화, 공·사적 연금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강화 필요성[2]



◆ 주요국에 비해 노후 주요 수입원으로 공적·사적연금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

- 우리나라 노후 주요 수입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근로·사업소득으로 39.8%이며, 자녀·친척도움도 34.1%를 차지
- 반면 공적·사적연금의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

노후 주요 수입원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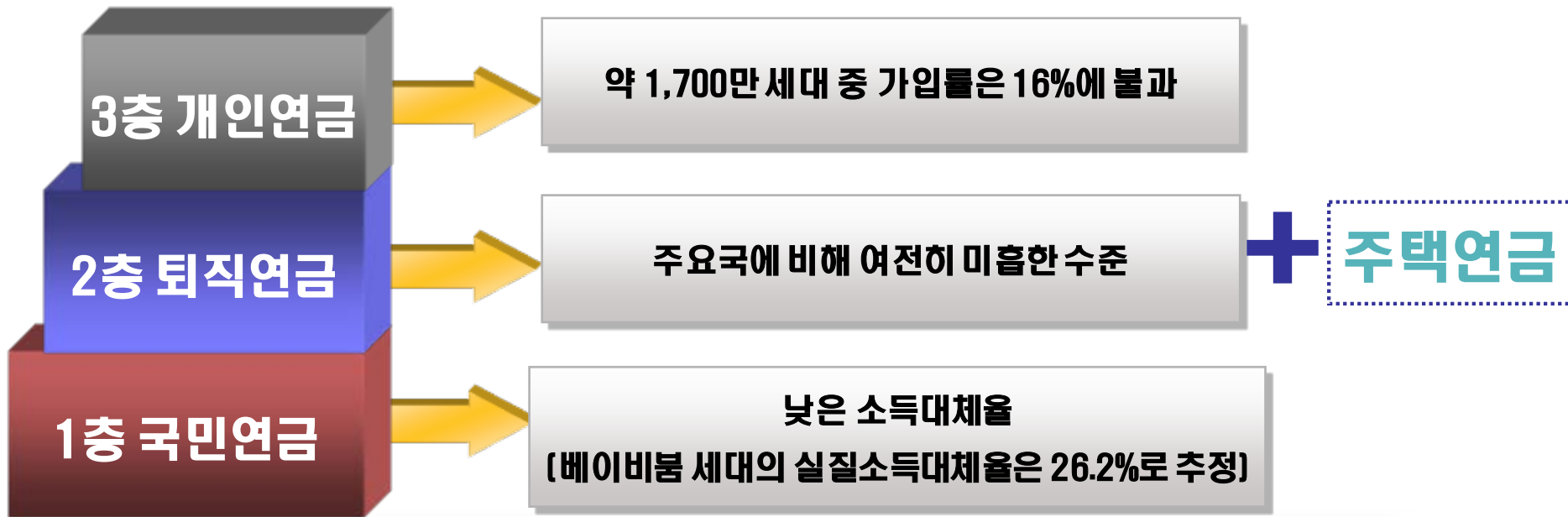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한국(2007)	미국(2005)	일본(2005)
근로·사업소득	39.8	19.8	17.7
공적·사적연금	14.3	64.8	74.9
자녀·친척도움	34.1	0.5	2.5
기타	11.6	14.9	4.9

자료: 강창희(2010),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와 금융발전,” 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강화 필요성(3)

◆ 우리나라 3대 공적·사적연금 부문의 현주소는 여전히 미흡



퇴직연금, 주택연금 부문의 강화를 통해 개인연금 및 공적연금의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



III.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은행의 영업 현황 및 대응방향

1. 고령화 관련 국내은행 영업

2. 고령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향

3.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가.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강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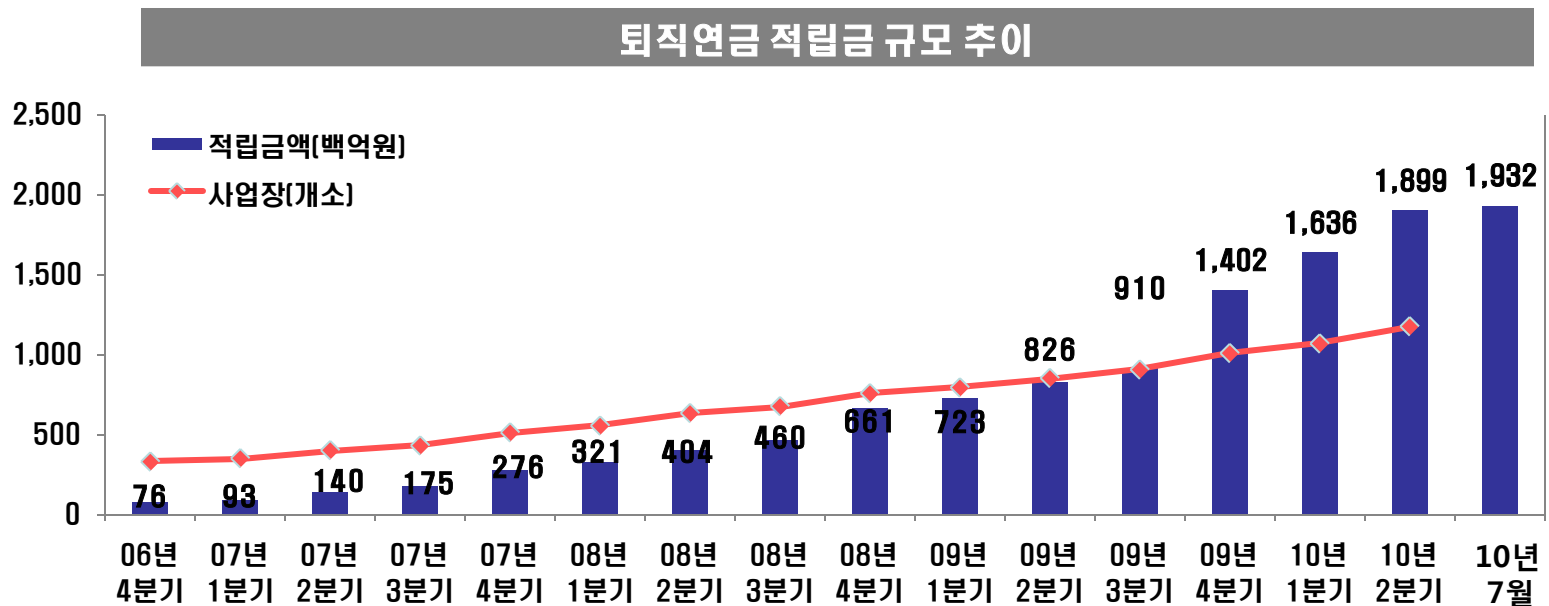
나. 퇴직연금

다. 주택연금

전체 퇴직연금 시장 현황[1]

◆ 국내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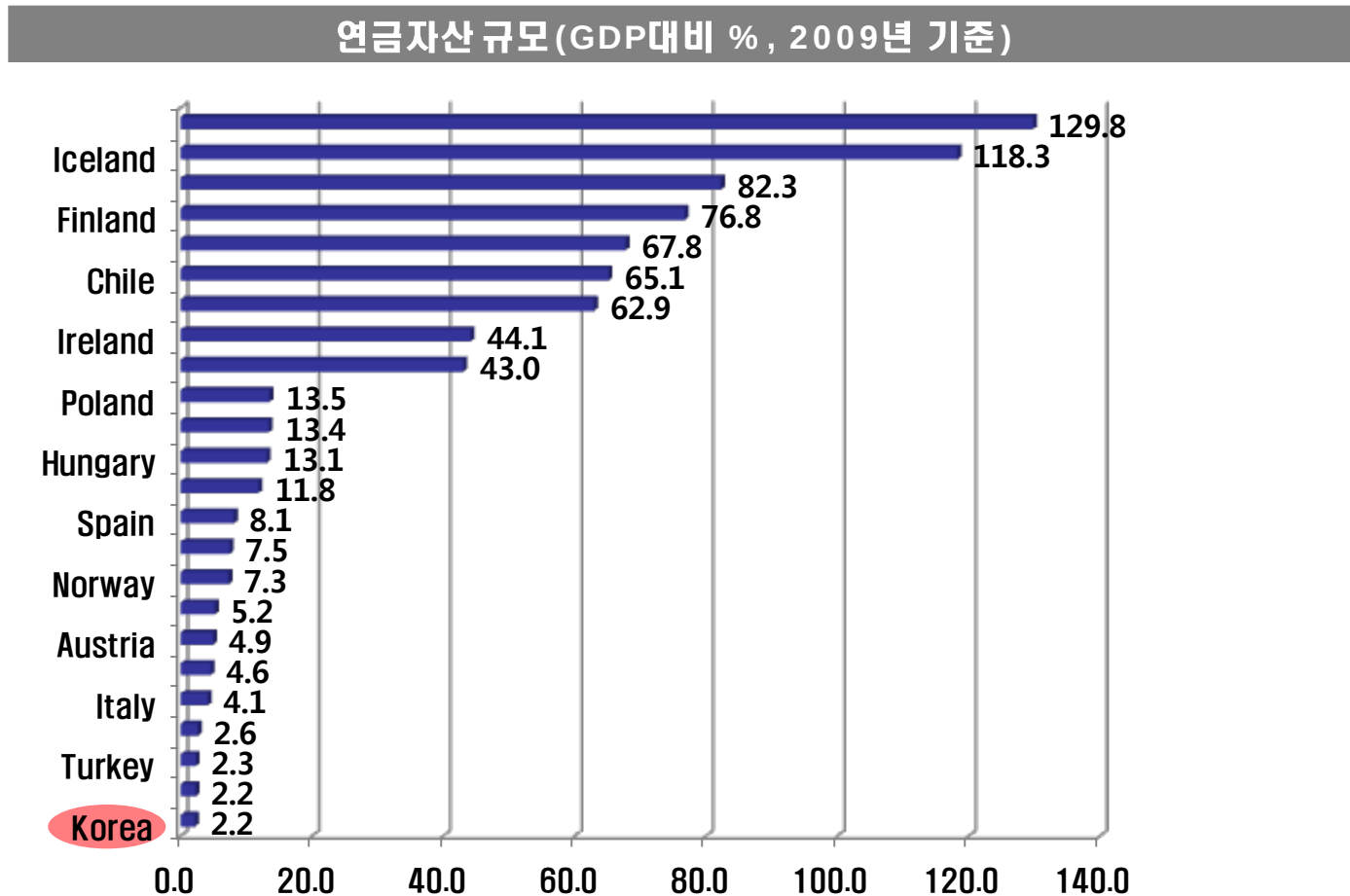
- 2010년 7월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시장 전체 적립금 규모는 약 19조 3,1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9% 증가
- 2010년 들어서만 5조 2,937억원이 유입되며 큰 성장세를 시현



자료 : 금융감독원

전체 퇴직연금 시장 현황[2]

◆ 국내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미약한 수준



주: 1) occupational pension(기업연금)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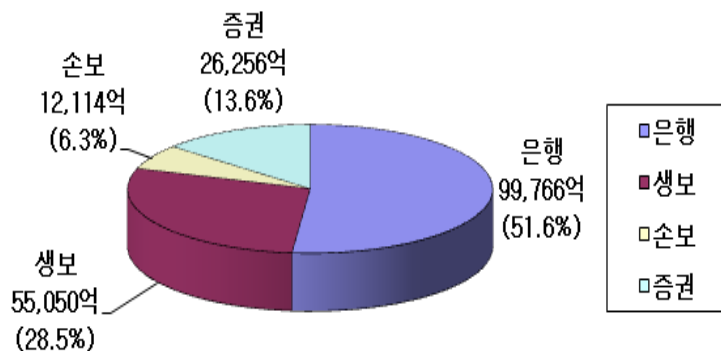
자료 : OECD

은행권 관련 퇴직연금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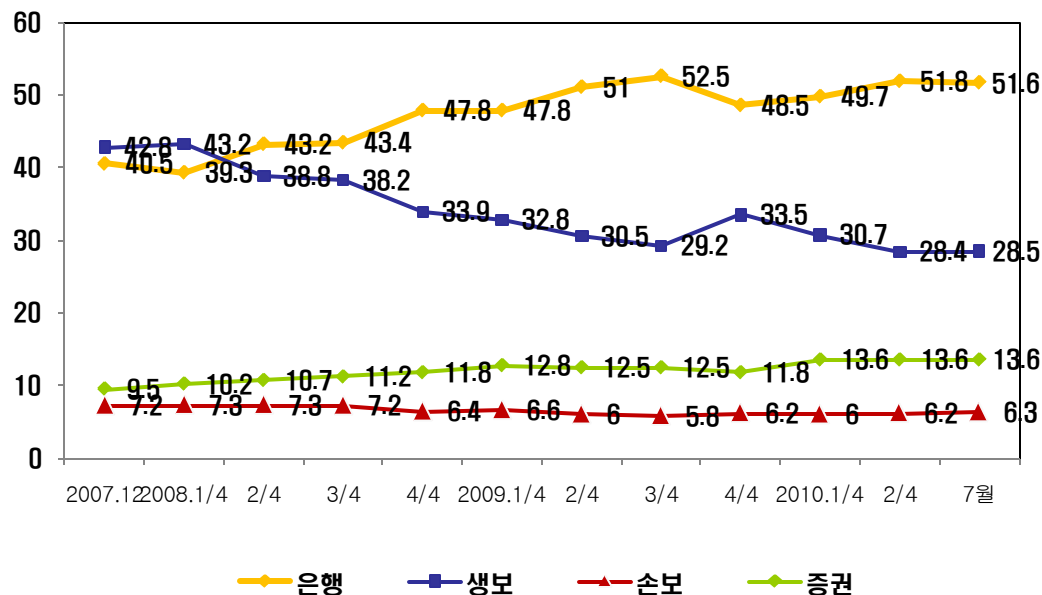
◆ 7월말 현재 은행권의 퇴직연금은 9조 9,766억원으로 시장점유율 1위(51.6%)

- 은행권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51.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여간 꾸준한 양적 성장세 시현
- 초기에는 보험권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었으나, '08.10월 은행권이 선두에 나선 이후 점유율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금융권역별 시장점유율 현황 (2010년 7월)



금융권역별 시장점유율 (%)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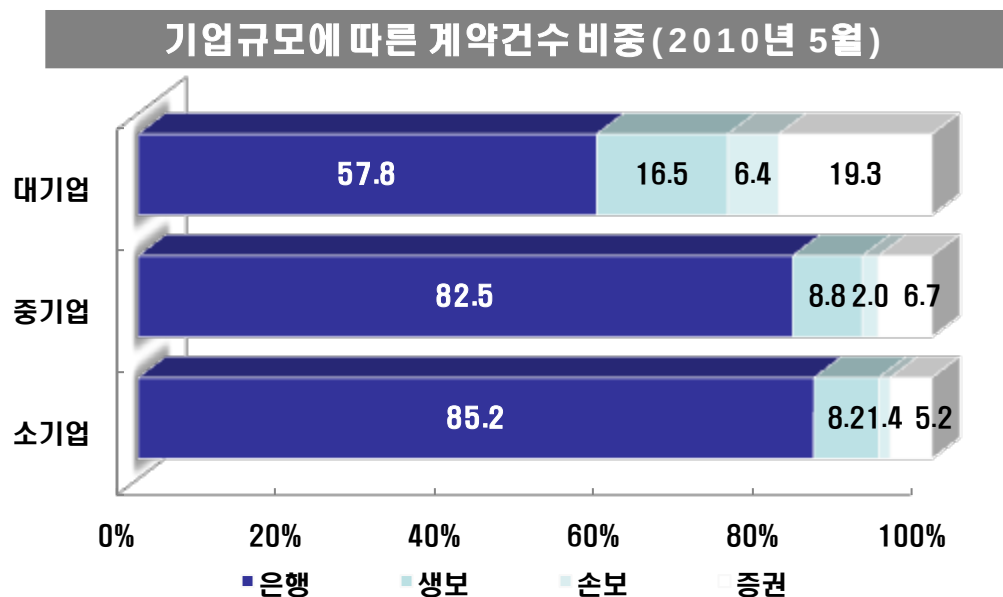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권 관련 퇴직연금 현황[2]

◆ 은행권은 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계약비중이 높음

- 중소기업 전체 계약건수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84.5%로 타권역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이는 은행권이 지점을 활용한 영업역량을 강화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위주의 영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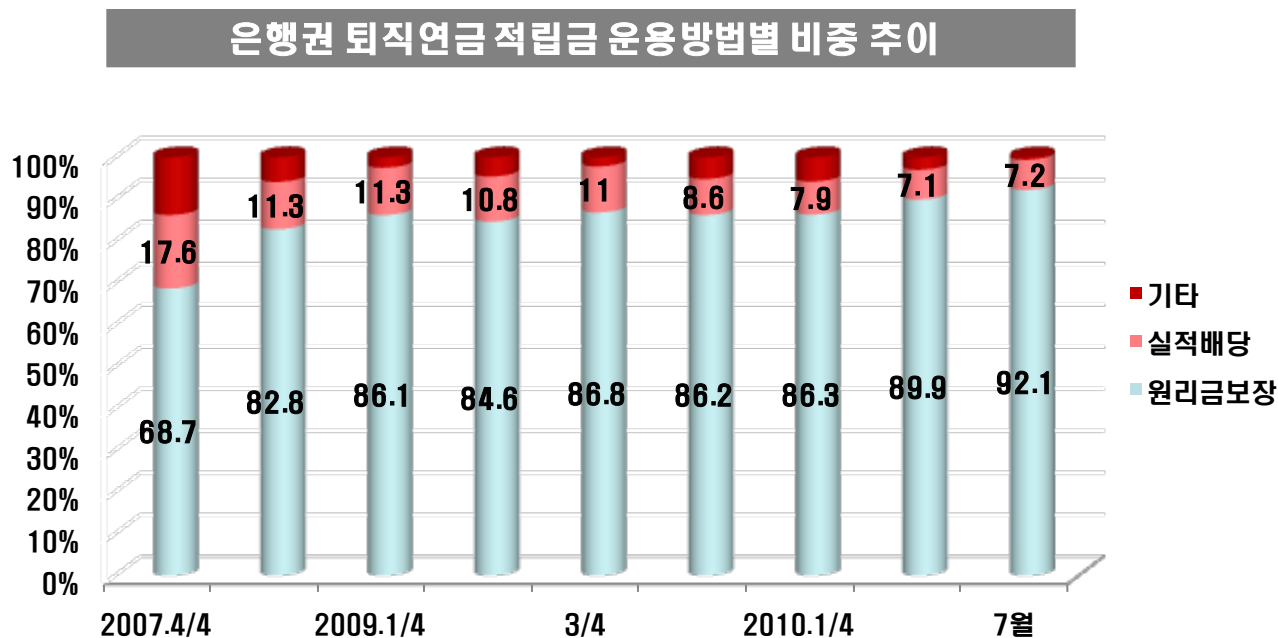


주: 대기업 300인 이상, 중기업 200인 초과~300인 미만, 소기업 20인 이하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권 관련 퇴직연금 현황(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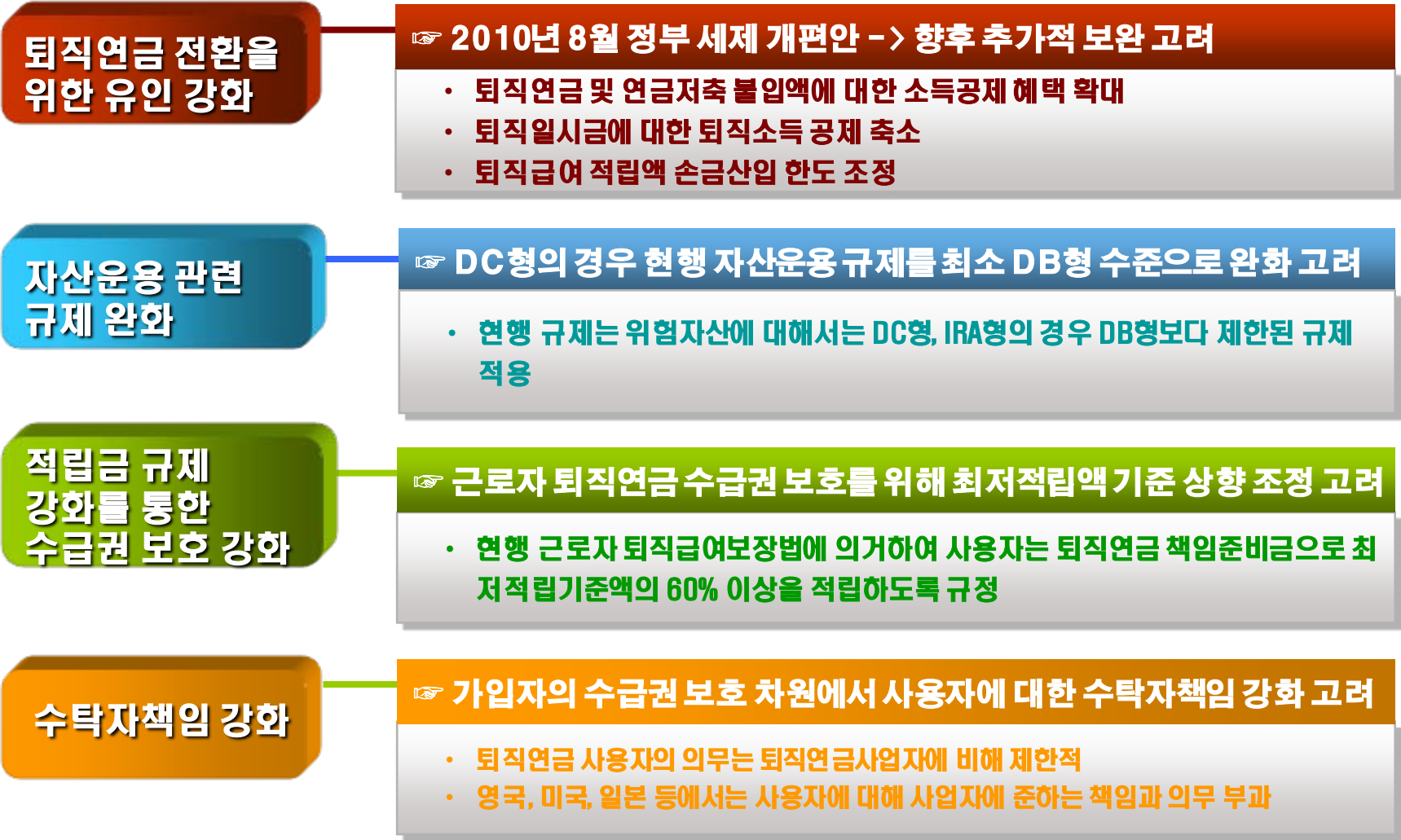
◆ 은행권은 원리금 보장형에 대부분의 적립금을 운용

-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 7월 말 기준 전체 은행권 적립금의 91.8%를 차지



주: 기타는 운용 등을 위한 대기자금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상의 과제



은행의 퇴직연금 사업과 관련된 과제



근퇴법 개정법률안의 문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안: 퇴직연금업무와 대출업무를 분리
- ▶ 퇴직연금 활성화가 저해될 우려(특히 중소기업 대상)

은행의
퇴직연금 사업
과제

퇴직연금사업자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 주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제공 및 공시 기능 강화
- 적극적 자문서비스 제공 필요
- 가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Community의 장 제공



해당사업자의 평판 제고 및 판매실적 제고에 기여

적립금 운용방법 다양화

공동운용기금 운용 검토

- ◆ 미국의 CIF와 같은 계좌별 신탁자금을 pooling 하여 공동 운용 후 투자성과를 신탁계좌별로 배분하는 공동운용기금의 운용 검토

은행에 투자일임 허용 고려

- ◆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 또는 퇴직연금에 한해 투자일임업 허용을 고려



III. 고령화에 따른 국내 은행의 영업 현황 및 대응방향

1. 고령화 관련 국내은행 영업

2. 고령화에 따른 은행의 대응방향

3.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가.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및 주택연금 강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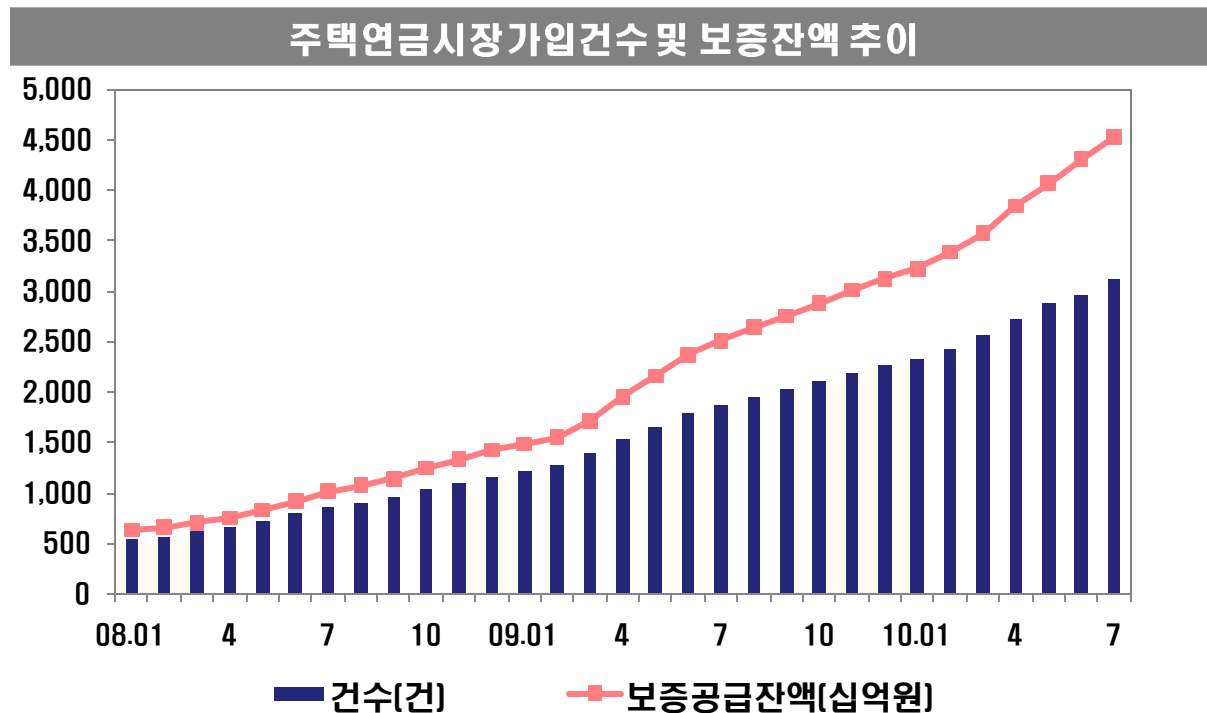
나. 퇴직연금

다. 주택연금

전체 주택연금 시장 현황

◆ 2007.7월 도입 이후 2010년 8월말 현재 3,340건, 약 4조 8,943억원 공급

- 8월 중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220건, 보증공급액은 3,661억원으로 출시 이래 최고치 기록
- 올해 8월까지 총 1,226건이 신규로 가입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
- 하루 평균 가입도 지난해 4.8건에서 올해 7.3건으로 증가



자료 : 주택금융공사

은행권 주택연금 시장 현황



◆ 주택연금 취급기관은 시중은행 4곳, 특수은행 2곳, 지방은행 3곳

-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9곳
- 흥국생명, 삼성화재도 취급하였으나, 거의 실적 없이 2009년 2월 판매 중지

금융기관별 주택연금잔액 현황 (단위: 억원)

연월중	합계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기타 ¹⁾
2007	5,972	2,587	337	476	925	996	650	0	0	0	1
2008	14,247	7,017	806	1,076	1,957	2,136	1,256	0	0	0	0
2009	31,275	14,413	1,923	2,642	4,777	4,499	2,726	47	173	76	0
2010.7	45,282	19,838	2,614	3,841	7,277	6,618	4,339	103	392	230	0

주: 기타는 흥국생명, 삼성화재
자료: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제도 관련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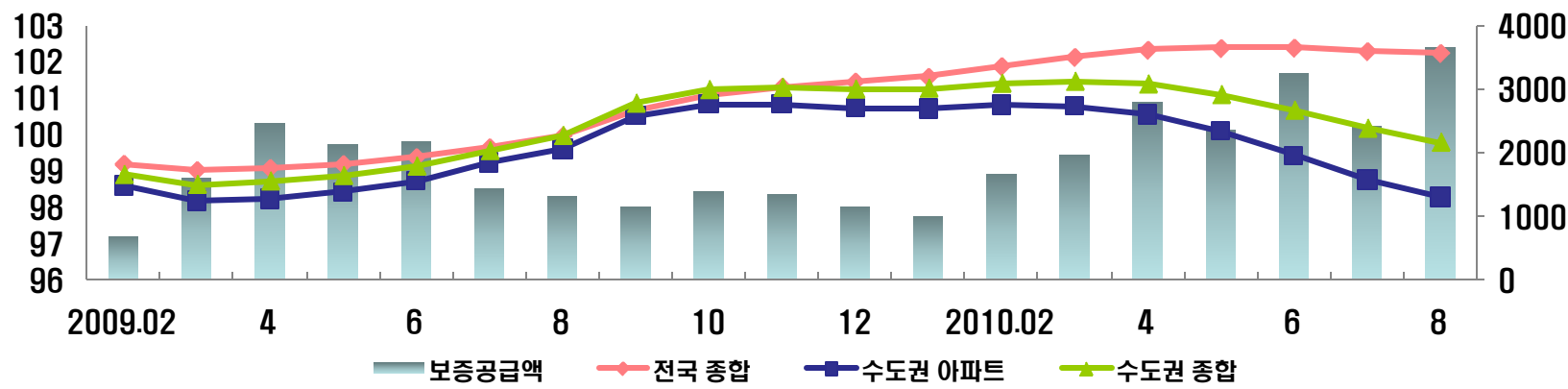
단기

- ▶ 가입대상자의 현실을 감안한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고려
- ▶ 주택연금 홍보활동의 효율화 및 강화

장기

- ▶ 주택가격 하락 및 수요 급증, 평균수명 연장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증재원 확충 필요

주택가격지수추이 및 주택연금 보증공급액 추이



주: 보증잔액 단위는 억원, 주택가격지수는 2008년 12월=100기준
자료: 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은행권 관련 주택연금의 과제

은행의 주택연금 조달업무와 관련 적정수준 마진 확보

은행의 내부조달금리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3개월 CD금리+1.1%)

장기적으로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은행의 주택연금 상품 개발 고려

- 향후 중산층 이상의 주택연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와 같이 고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상품 개발을 고려
- 특히 최근처럼 부동산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가의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소위 '하우스푸어(house poor)' 고려층의 주택연금 수요를 고려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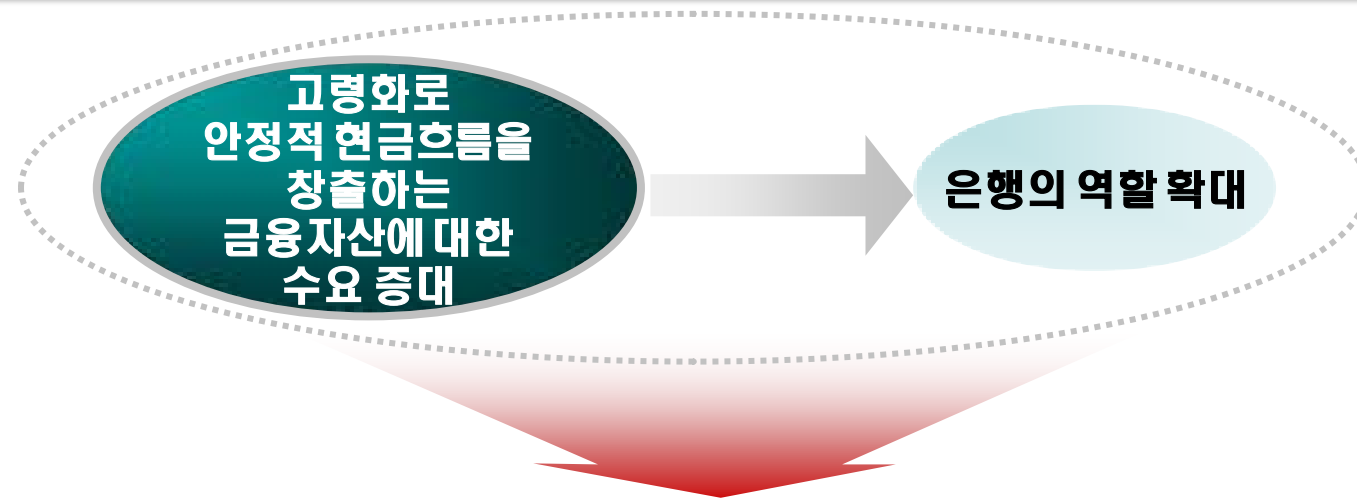


I. 검토의 배경

II. 주요국 사례

III. 고령화 에 따른 국내 은행의 영업 현황 및 대응방향

IV. 맺음말



시장세분화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장기금융상품, 신탁상품 등의 개발과 Total Service 전략 필요

퇴직연금, 주택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아울러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

기타사업 부문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

은행 측면의 고령화와 관련된 영업 활성화는 고령층의 needs에도 부응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위험 완화 및 자금중개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저출산 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2010. 10. 5.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권세훈

sehoon@kcmi.re.kr



I. 개요

❖ 저출산 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의 기본 방향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전인구적인 장기적 추세이므로
 - ✓ 시장을 통한 위험분담이 어렵고,
 - ✓ 궁극적으로 공적 부담으로 귀착됨
- 그러나 정부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 ✓ 경제적 비효율성과
 - ✓ 세대간 불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소지 있음
- 기본제도 및 핵심적 금융수단(building block)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후에
 - ✓ 시장에서 다양한 맞춤형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출산 완화,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위한 어린이 펀드

❖ 고령화 대비, 장수위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수채권/스왑

II. 어린이 펀드

- 영국 : Child Trust Fund
- 미국 : 529 Plan
- 싱가포르 : Child Development Co-Savings Scheme
- 한국 : 꿈나래통장, 디딤씨앗통장
- 사례의 정리 및 시사점

II. 어린이 펀드 : 영국 Child Trust Fund

❖ 영국 정부는 2005년부터 Child Trust Fund 지원

- 2005년부터 시행
 - ✓ 2002년 9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 소급 적용
- 2010년 말 폐지 예정
 - ✓ 2010년 8월부터 단계적 축소

❖ Child Trust Fund 구조

- 장기 저축/투자 계좌: 18세 이전 인출 금지
- 아동양육수당(Child Benefit) 신청 시 자동으로 바우처 발송
 - ✓ 발송된 바우처의 약 70% 정도 계좌가 개설됨
- 정부가 일정 수준의 보조금(바우처) 지급 및 비과세 혜택
 - ✓ 출생 시 £250 지급(저소득층 £250추가), 7세 때 £250 지급
- 2010년 4월부터 장애아동보조금 추가: 연간 £100 ~ £200

II. 어린이 펀드 : 영국 Child Trust Fund

- ❖ CTF 계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 : 저축형, 투자형, 관리형
 - [Savings accounts](#)
 - [Accounts that invest in shares](#)
 - [Stakeholder account](#) : 주식투자 가능, 단 정부 지침에 따라 운용
- ❖ 특수한 투자 수요 반영 가능
 - Ethical accounts: 윤리투자 가능
 - Sharia accounts: 이슬람 방식 운용 선택 가능
- ❖ 계좌의 유형 및 회사의 선택과 이동이 언제나 자유로움
 - 등록자(registered contact)와 16세 이상 아동
 - 투자자교육 제공 및 투자자문인(financial advisor) 활용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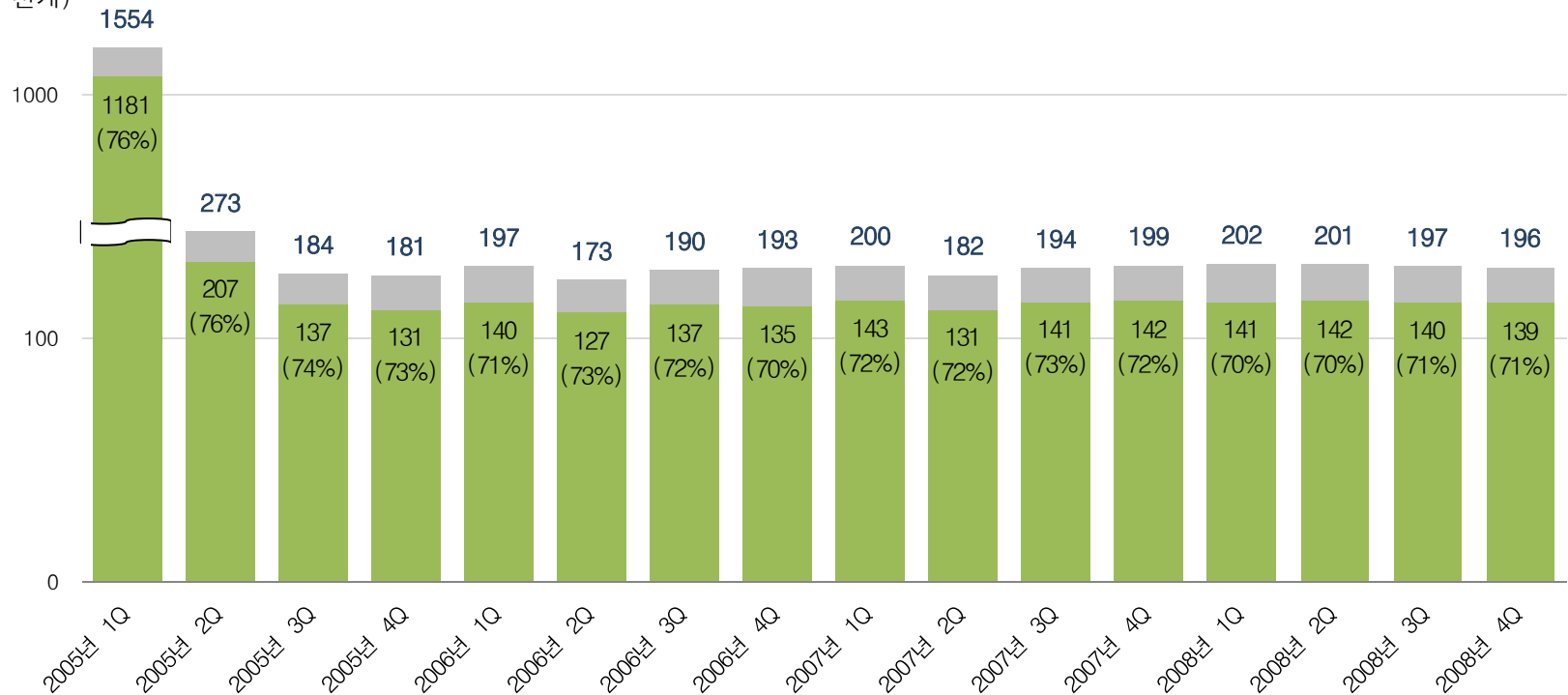
II. 어린이 펀드 : 영국 Child Trust Fund

❖ 영국 Child Trust Fund 현황

바우처 수
(단위: 천개)

■ 지급한 바우처 수

■ 개설된 계좌 수



발행 일자

주 : 바우처는 발행 후 12개월간 유효하고, 이 기간 안에 부모가 계좌를 개설해야 보조금 지급받음

자료: HM Revenue and Customs, 2010, Child Trust Fund (June)

II. 어린이 펀드 : 영국 Child Trust Fund

❖ 영국 Child Trust Fund 현황

< 효력 있는 바우처 >

발행 일자	지급한 바우처 수	개설된 계좌	
		숫자	발행 %
2009년 1분기	217	148	68
2009년 2분기	200	120	60
2009년 3분기	204	102	50
2009년 4분기	206	76	37
총계	827	447	

주 : 바우처는 발행 후 12개월간 효력이 있고 이 기간 안에 부모가 계좌를 개설하여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자료: HM Revenue and Customs, 2010, Child Trust Fund (June)

II. 어린이 펀드 : 미국 529 Plan

❖ 미국 연방세법 5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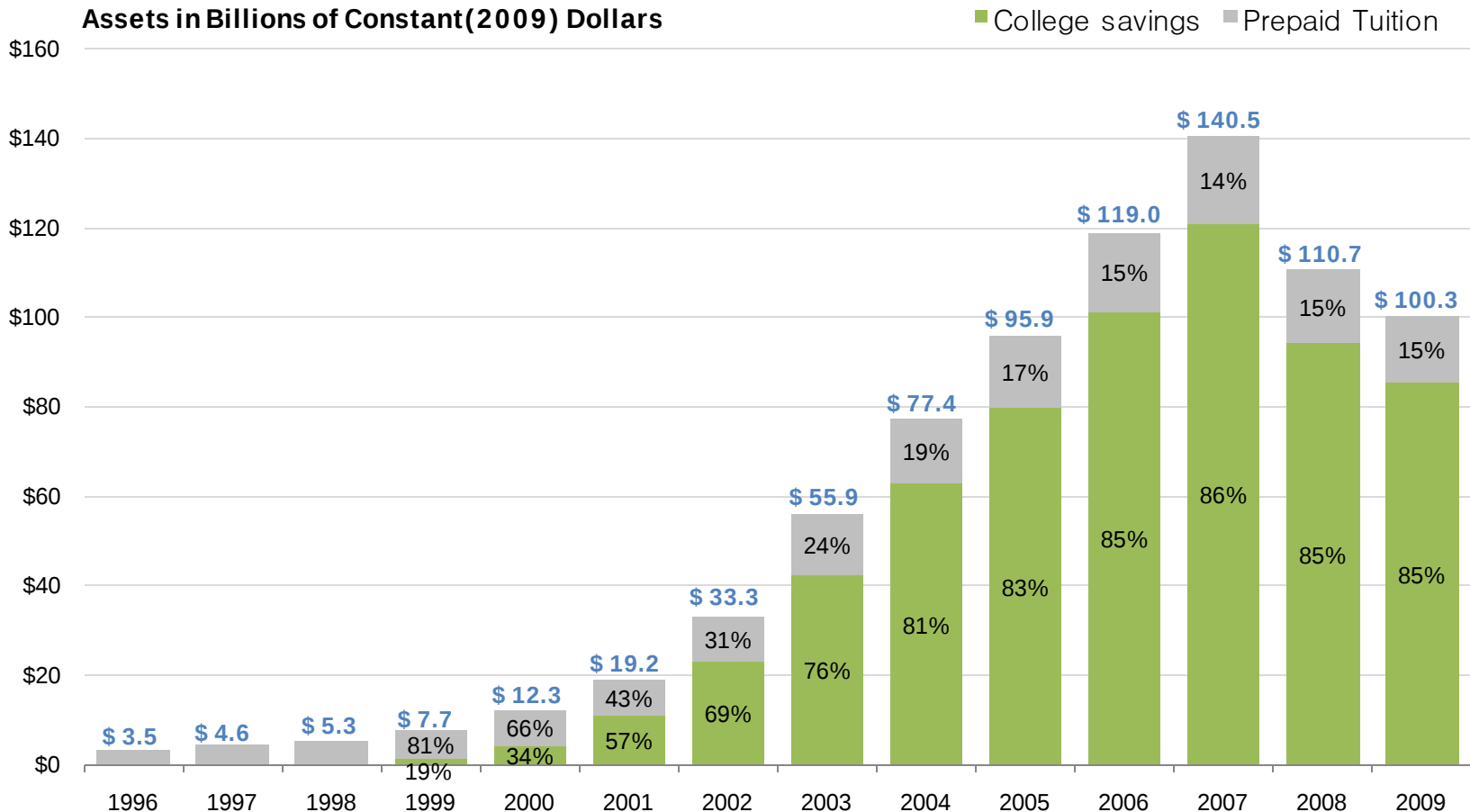
- 1996년부터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해 해당 저축 과세특례 부여
- 적용: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 비과세 혜택: 자녀교육비로 사용할 경우 그 동안의 수익 비과세
- 투자수익이 비교육용 목적으로 사용되면 10% 범칙금 부과
- 투자자금의 운용: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뮤추얼 펀드 등을 통해서만
- 투자금액: 자녀 1인당 연간 1만1,000달러까지 가능

❖ 펀드의 유형

- Prepaid plan: 장래 지불할 교육비를 현재 학비수준으로 고정시켜 미리 학비를 불입, 미래에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교육비 상승분은 주정부에서 부담
- Saving plan: 세금혜택 부여,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일종의 투자,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 가능

II. 어린이 펀드 : 미국 529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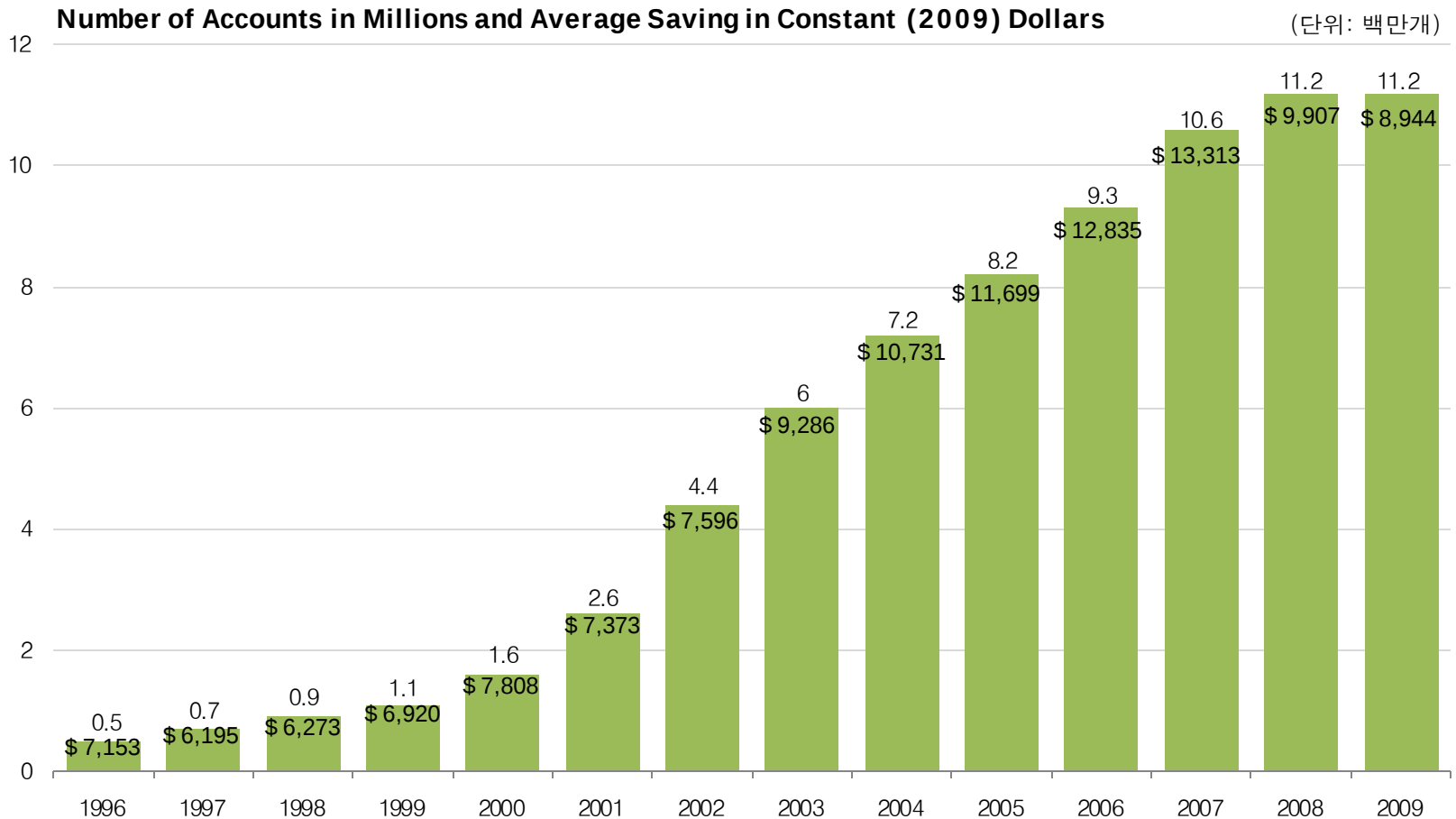
❖ 미국 529플랜으로 적립된 총자산



자료: College Savings Plan Network,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Treasures

II. 어린이 펀드 : 미국 529 Plan

❖ 미국 529플랜을 위해 개설된 계좌 수



자료: College Savings Plan Network,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Treasures

II. 어린이 펀드 : 싱가포르 CDA

❖ 싱가포르 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일명 Baby Bonus)

- 2004년 8월~2008년 8월17일 출생 아동: 2번째 자녀부터 CDA 가능
- 2008년 8월17일 이후 출생 아동: 첫째 자녀부터 모두 적용
- 부모가 CDA 적립하면 정부에서 일정액 한도로 매칭 보조금 지원
- 현금지급: 신청 후 3주 내, 6개월, 12개월, 18개월로 나눠 지급

< 2008년 8월 17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위한 혜택 >

(단위: 싱가포르 달러)

아이의 서열	현금지원	1:1 매칭 금액	총액
첫째와 둘째	\$4,000	\$6,000	\$10,000 까지
셋째와 넷째	\$6,000	\$12,000	\$18,000 까지
다섯째 이상	없음	\$18,000	\$18,000 까지

자료: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Singapore), 2010

II. 어린이 펀드 : 국내 현황 1

- ❖ 국내 경우 정부 정책 아닌 자산운용회사 마케팅 차원에서 출시
 - 자녀 이름으로 펀드 가입 후 세무서 신고하면 증여세 면제
 - ✓ 만 19세까지 1,500만원,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 그러나 이런 세제혜택은 특별한 혜택 아님
 - ✓ 증여세 공제신청만 하면 자녀 명의 가입 모든 펀드에 적용
- ❖ 새 로마지플랜 일환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도입
 - 2007년 4월부터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사회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규모 >

	2007년 10월	2008년 5월	2008년 12월	2009년 8월
개설 아동 수	31,346명	32,839명	34,263명	35,474명
적립 금액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400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II. 어린이 펀드 : 국내 현황 2

❖ 서울시 꿈나래 통장: 저소득 가구 자녀 성장기 교육자금 적립 지원

- 대상: 만 12세(1998.1.1 이후 출생)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거주자
- 저소득 가구 신청자격: 소득/재산/건강보험료 기준
- 저축기간 및 금액: 5년/7년 선택: 대상에 따라 월 3~10만원 가능
- 일대일 매칭: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지원

❖ 신청자격(소득/재산/건강보험료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소득(₩)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1인증가378,258
재산(₩)	71,656,295	84,063,417	92,891,583	101,719,748	110,547,878	119,376,043	6인 기준 적용
보험료(₩)	20,161	34,328	44,409	54,490	64,570	74,651	2.655% 요율

II. 어린이 펀드 : 사례의 정리 및 시사점

- ❖ 취지: (1회적 형식적) vs (장기적 실질적) 출산 및 양육 지원
- ❖ 출생 장려금을 시발 자금으로 ➔ 펀드 및 저축계좌 형성
- ❖ 일정 연령까지 적립을 지원 ➔ 인출 제한
 - 지원 혜택: 일정액 지원 / 매칭 지원 / 세제지원
 - 차등 지원: 연령 및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 인출 제한: 만기 전 인출 불가 또는 교육 의료 등으로 용처를 제한
- ❖ 투자 상품의 선택
 - 부모의 투자적합성에 따라 제공회사나 상품을 선택 가능
 - ✓ 상품유형: 저축형(은행), 투자형(증권), 보장형(보험), 결합형
- ❖ 제도적 안정성 확보 필요, 특히 재정적 안정성이 중요함
 - 벨기에 Ageing fund 참고: 비반복적 정부 수입을 기금 적립
 - ✓ 예) 통신사업자 선정 납부금, 중앙은행 수입 일부, 공기업 배당금 등

III. 장수채권과 장수스왑

- 장수채권과 사망률채권 : 사례 및 비교 설명
- 장수스왑과 보험을 통한 연금매각방식 : 현황 및 비교 설명
- 장수위험 거래 방식의 비교 정리 및 시사점

III. 장수채권과 장수스왑 : 장수위험 개관

❖ 세계적으로 장수위험이 증가하는 추세, 한국도 매우 심각

❖ 장수위험의 특성

- 역사적으로 무시되고 과소평가된 위험 → 최근 시장거래 시작
- 사망위험과 자연 헷징 관계: 그러나 불완전 → Basis risk
- 기존의 신용/시장위험 등과 상관관계 낮음 → 분산투자 효과 제공
- 가입자 집단이 사전적으로 정해짐 → 기존 보험에 비해 역선택 문제 완화
- 위험 기간이 매우 장기적임 → 물가위험 및 제도변경위험 등 고려 필요

❖ 장수위험의 거래(longevity transfer)

- 연금보험자 이용: Original owner of longevity is not the best owner
 - ✓ Buy-out (B/S 제거) vs. Buy-in (연금부채에 대응하는 자산을 추가)
- 당사자가 직접 관리: 다양한 위험들 혼재 → 분리 → 효율성 증대
 - ✓ DIY buy-in (이자율위험, 물가위험, 장수위험 등을 각각 직접 관리)
 - ✓ Longevity hedging (장수채권, 장수스왑)

III. 장수채권 : 기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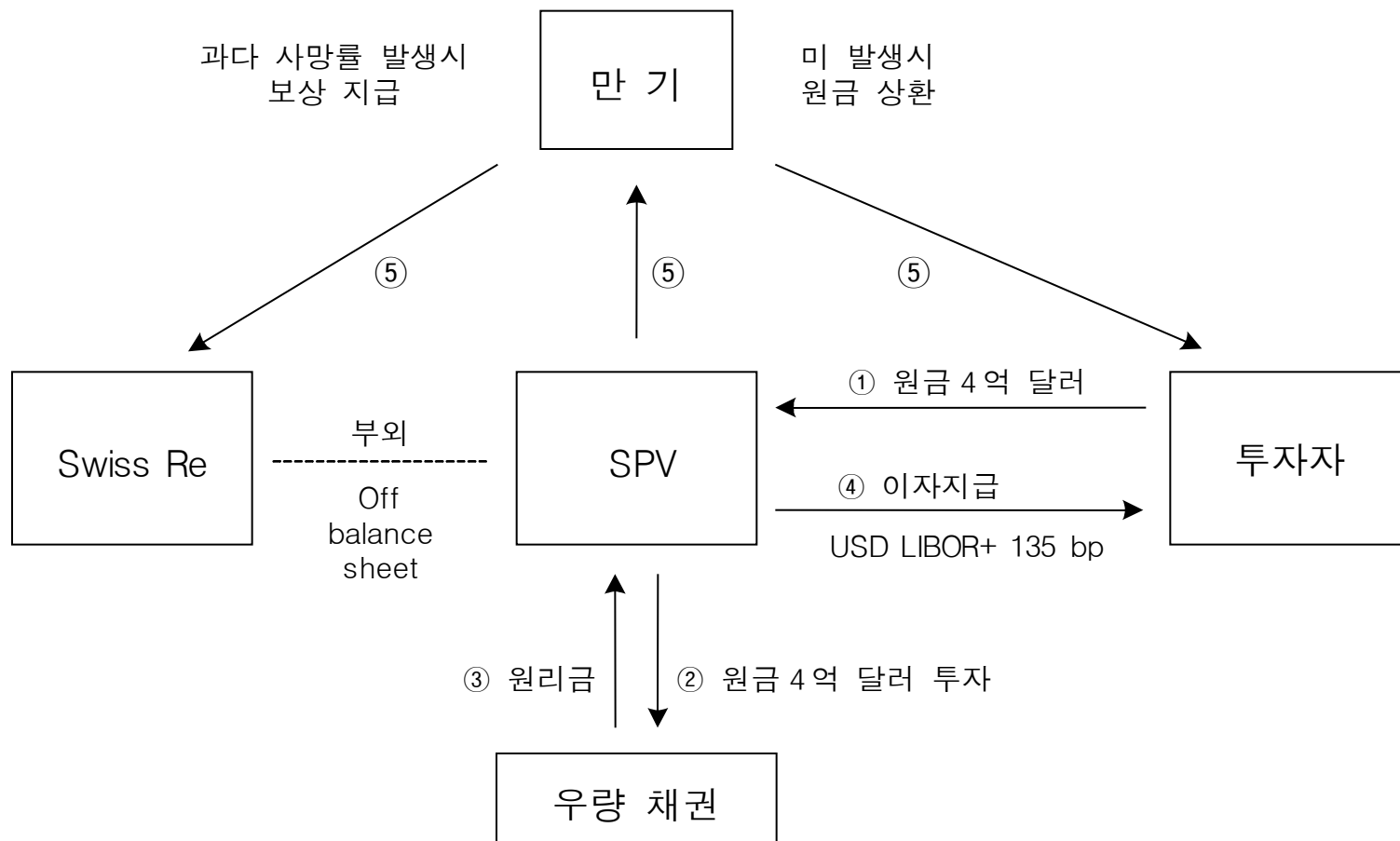
- ❖ 장수채권(Longevity bond) /생존채권(Survival bond)/사망률채권(Mortality bond)
- ❖ 헷지 의도 등에 따라 다른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
 - 사망률채권: 생명보험기관 과다사망사건 위험 초점, 상대적 단기
 - 장수채권 또는 생존채권: 연금지급기관의 장수위험에 초점
- ❖ 본질적으로 생존율(사망률) 지수를 설정하여, 사전에 약정한 기준과 사후 실현치의 차이에 따라 원리금을 변동 지급하는 증권
 - 원금 변동형: 단기 계약에 적합
 - 이자 변동형: 장기 계약에 적합, 본질적으로 스왑거래와 결부됨

III. 장수채권 : Swiss Re 사례(사망을 채권)

- ❖ 2003년 12월 최초로 생명재해채권(life catastrophe bond) 발행
 - 생명보험회사: 사망률 증가에 따른 보험금 과다지급 위험을 헷지
 - 발행구조: 만기3년, 발행액4억\$, 분기이자3개월물 \$LIBOR+135bp
 - 원금상환구조: 3년 동안 사망률지수가 2002년 수준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만기 시 100% 원금상환, 1.3배 초과시 매 0.01 증가마다 5%씩 감소, 1.5배 초과시 원금상환 면제
 - 5개국 사망률 지수: 미국 70%, 영국 15%, 프랑스 7.5%, 이태리 5%, 스위스 2.5%이며, 남성 65%, 여성 35%임
- ❖ 2005년 4월 생명재해채권을 다시 발행
 - 발행구조: 만기 2010년, 발행규모: 3억6천2백만달러
 - 원금상환구조: 사망률지수 변동 + 3개 트렌치 설정

III. 장수채권 : Swiss Re 사망률채권 발행구조

< Swiss Re 사망률채권의 발행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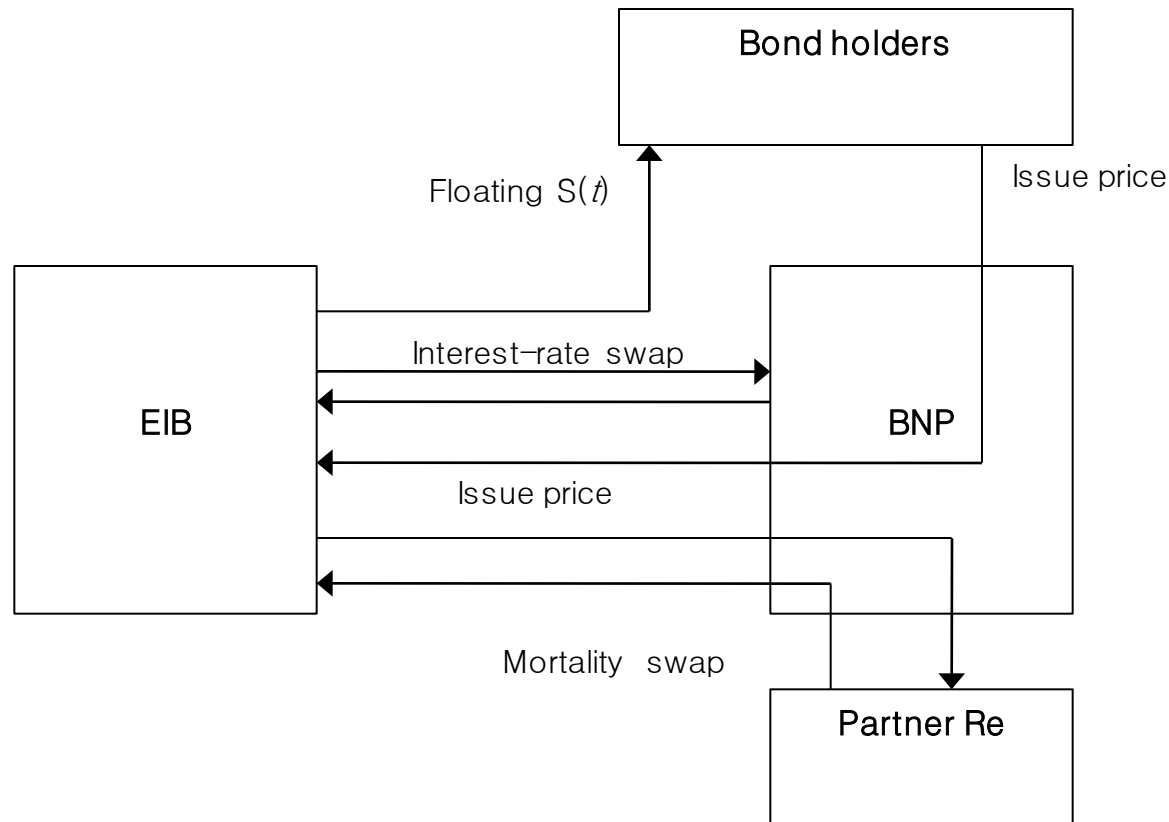
III. 장수채권 : EIB 사례

❖ BNP Paribas + EIB + Partners Re 장수채권

- 2004년 11월, 25년 만기 장수채권 발행 발표
- 사망률 높을수록 이자 감소: 투자자(연금공급자)의 장수위험 헷징
- 집단생존지수(cohort survivor index)는 2002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65세 남성인구의 사망률에 근거함
- 발행액: 5억 4천만 파운드, 최초 이자 지급액: 5천만 파운드 = $S(0)$
- $S(t)$: t 시점 이자지급액, $m(y,a)$: y 년도 a 연령 인구 사망률
 - ✓ $S(1) = S(0) \times (1 - m(2003, 65))$
 - ✓ $S(t) = S(0) \times (1 - m(2003, 65)) \times (1 - m(2004, 66)) \times \dots \times (1 - m(2002+t, 64+t))$
- EIB 당시 금리는 LIBOR+15bp, 장수채권 할인 시 +35bp 적용
 - ➔ 장수위험 헷지 비용은 +20bp로 추정
- 그러나 충분한 수요자(투자자) 발굴 못해 2005년 말 철회됨

III. 장수채권 : EIB 장수채권 구조

< EIB의 장수채권 현금흐름 구조 >



III. 장수채권 : 사례의 요약 비교

❖ 사망률채권: Swiss Re 2003년 12월 발행

- 발생성공: 최초의 생명재해채권(life catastrophe bond)
- 원금상환 변동: 사망률 증가(생존율 감소)시 원금 감소
- 발행자(생명보험회사) 헷지: 사망 보험금 과다 지급 위험 헷지
- 만기3년, 발행액4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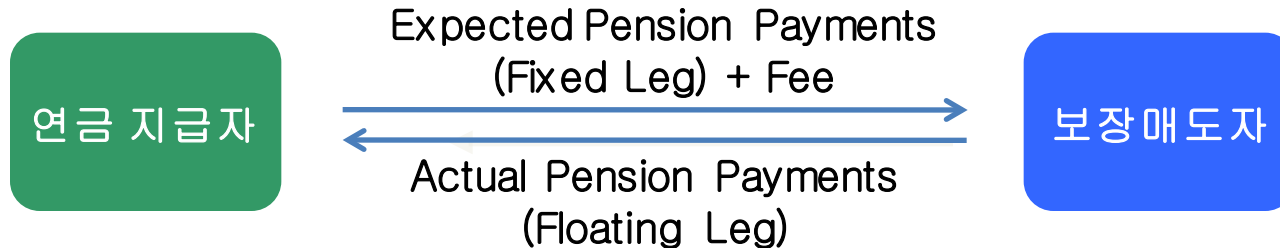
❖ 장수채권: EIB – BNP Paribas : 2004년 11월 발표

- 발행실패: 충분한 수요자(투자자) 발굴 못해 2005년 말 철회됨
- 이자지급 변동: 생존율증가(사망률감소)시 이자 증가
- 투자자(연금공급자) 헷지: 장수 연금 과다 지급 위험 헷지
- 만기25년, 발행액: 5억4천만파운드

III. 장수채권 : 국가 발행 논쟁

- ❖ 장수채권을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 존재
 - 정부는 징세권 가지므로 장수위험 세대간 배분 가능한 유일한 주체
 - 그러나 정부는 현세대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을 만들 유인 존재하므로
 - 오히려 세대간 최적 위험배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
- ❖ 국가가 관련 금융수단의 발행 및 거래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 증권발행과 관련한 규정 및 감독 완화 고려 가능
 - 장수위험 관리 수단 관련 증권을 장기보유하는 경우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게 장수채권 보유나 장수위험 관련 금융수단의 거래를 강제화하는 방안 고려 가능

III. 장수스왑 : 기본 개념



❖ Key Features of Longevity Swaps

- High return(8~10%) & Low volatility (대수의 법칙)
- Initial collateral payment by investor
- Payment on death of covered lives
 - ✓ Fee
 - ✓ Remainder of expected pension payments
 - ✓ Return of collateral to investor

III. 장수스왑 : 개념 및 활성화 요인

❖ 당사자들간 거래 통해 장수위험을 이전시킴

- 장수채권은 시장에서 증권발행 및 거래를 통해 장수위험을 이전
- 장수스왑은 장외에서 당사자들간 직접 거래 통해 장수위험을 이전
- 장수위험만을 거래한다는 면에서 Buy-out/Buy-in 거래와 구분

❖ 영국(특히 DB형 연금 기업들)의 장수위험 이전거래 활성화 요인 (Fitzpatrick, 2009)

- 연금부채 및 가치평가에 관한 회계제도 변경(FRS-17, IAS-19 등)
 - ✓ 자산측면: 시장가치 계산 → 자산가치 변동성 증가
 - ✓ 부채측면: 장기부채 가치 계산시 → 할인율 보수적 적용 : 부채 증가
- 연금 및 연금보호펀드(Pension Protection Fund) 관련 규제의 강화
 - ✓ 영국은 2005년부터 DB형 연금 기업들 PPF 의무적 가입
-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로 인한 자산관리의 불확실성 증대

III. 장수스왑 : 현황 및 추세 (2007~2008년)

- ❖ 2007~2008년부터 영국에서 buy-out / buy-in 거래 활발해짐
 - longevity risk 관련 현금흐름만을 거래하는 장수스왑은 영국에서 2009년 이후 거래가 활발해짐(아래 표 출처: Coates, 2009)

Company	Transaction date	Liabilities bought out or bought in
Emap	2007.11.13	£ 170 million
Weir Group	2007.12.17	£ 240 million
Rank	2008.02.29	£ 700 million
Morgan Crucible	2008.03.17	£ 160 million
BBA Aviation	2008.03.22	£ 270 million
Smiths Group(own TI Group)	2008.04.21	£ 250 million
Friends Provident	2008.05.15	£ 350 million
Raven Mount(own Swan Hill)	2008.05.28	£ 72 million
Delta	2008.06.05	£ 451 million
Cable & Wireless	2008.09.03	£ 1 billion

III. 장수스왑 : 현황 및 추세 (2009년)

Buy-out/ buy-in deals	Number of deals completed					Value of deals completed				
	Q1	Q2	Q3	Q4	2009	Q1	Q2	Q3	Q4	2009
Aegon	4	4	3	1	12	£ 52m	£ 44m	£ 38m	£ 21m	£ 155m
Alico(formerly AIG)	1	2	3	1	7	£ 11m	£ 12m	£ 8m	£ 9m	£ 40m
Aviva	12	13	9	13	47	£ 67m	£ 23m	£ 57m	£ 29m	£ 176m
Legal& General	25	16	26	15	82	£ 485m	£ 219m	£ 43m	£ 81m	£ 828m
Lucida	–	–	1	–	1	–	–	£ 500m	–	£ 500m
MetLife	1	2	3	2	8	£ 44m	£ 234m	£ 120m	£ 91m	£ 489m
Pension Insurance Corporation	1	2	3	4	10	£ 230m	£ 72	£ 191m	£ 620m	£ 1,113m
Rothsay Life	–	–	–	1	1	–	–	–	£ 370m	£ 370m
Total	44	39	48	37	168	£ 890m	£ 604m	£ 958m	£ 1,221m	£ 3,671m

Longevity swaps	Number of deals completed			Value of deals completed		
	Q3	Q4	2009	Q3	Q4	2009
Credit Suisse	2	1	3	£ 1.0billion	£ 0.2billion	£ 1.2billion
Rothsay Life	2	–	2	£ 1.9billion	–	£ 1.9billion
Swiss Re	–	1	1	–	£ 1.0billion	£ 1.0billion
Total	4	2	6	£ 2.9billion	£ 1.2billion	£ 4.1billion

자료출처: Hymans Robertson's *Managing Pension Scheme Risk* report 재인용

III. 장수스왑 : 지수 개발(LLMA 2010.8. 제안)

❖ 장수채권과 장수스왑 거래를 위한 지수(index) 개발

- 대상: 국가인구, 연금수급자 풀, 맞춤형 풀(customized pools) 등
- 지수 설계의 기본방향: default + customizing
- 즉 구체적이되 대다수 거래 포함하도록 지나치게 상세하지 않도록

❖ Longevity index principles 제안(10개)

- Tradability, Transparency, Robustness, Objectivity, Simplicity, Clear governance, Timeliness, Continuity, Consistency, Universality

❖ Default index methodology 주요 고려 사항

- Input data : metrics, characteristics, frequency
- Index rules : crude rates 산정법, graduated rates 산정법, testing & validation, higher age methodology
- 기타 Discretion, Restatement 문제 등

III. 장수채권과 장수스왑 : 정리 및 시사점

❖ 생명 관련 위험 헷징 방안의 특성 비교

- Buy-out: 연금부채 매각하여 B/S 제거: 연금부채(의무) 제거
- Buy-in: 보험자산을 매입하여 B/S 균형 맞춤: 연금부채(의무) 보유
 - ✓ DIY buy-in: 스스로 위험(이자율, 물가, 장수 위험 등) 관리 수단 매입
- Longevity hedging: 장수위험 부분만을 구분하여 거래
 - ✓ 장수스왑: OTC 당사자간 현금흐름 교환 거래
 - ✓ 장수채권: 시장에서 증권 발행/매매, 연금지급자 헷지, 초장기, 이자변동형
 - ✓ 사망률 채권: 생명보험자 헷지, 비교적 단기, 원금변동형

❖ 향후 장수위험 거래시장 활성화 관련 이슈

- 근본적으로 연금화(annuitization) 필요
- 장수위험 관련 지수(longevity index)의 개발 및 활용 방안
- 장수위험 및 가격산정을 위한 적절한 모형설계 및 데이터축적
-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수위험에 대한 자기자본규제